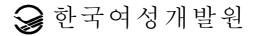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윤 덕 경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변화 순 (선임연구위원)

박 선 영 (연구위원)



발 간 사

2004.3.2 제정되고, 9.23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두 법을 함께 '성매매방지법'이라함)의 가장 큰 특징은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위계·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심신이 약한 사람·중대장애자 중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가 해당되며, 이들은 업주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해 성매매행위를 강요당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처벌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불처벌과 함께 조사시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이나 신변보호, 심리의 비공개 등을 보장하고, 경찰,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 이 가족, 변호인 등에게 통지하고,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인계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피해자의 비범죄화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당시 사회적으로 표출되었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감금·협박·성판매자의 채무이용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 등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연적으로 내린 입법적 결단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사기관이나 상담소, 지원시설 관계자 등 사법체계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매매피해여성 17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성매매피해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의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신고, 조사, 판단 및 처리에 관련된 문

제점을 개선하고,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서비스로의 연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 재유입방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연구과정에서 연구방향과 연구내용에 관해 성심껏 자문해 주신 여러 전문 가분들, 면접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수사기관 관계자, NGO관계자 및 성 매매피해여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 연구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05년 12월한 국 여 성 개 발 원

원장 서 명 선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두 법을 함께 '성매매방지법'이라 칭하기로 함)이 2004.3.2 제정되고, 9.23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들이 이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비교해서 두 드러진 특징은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에서는 성매매피해자를 크게 다음의 네가지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위계·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둘째,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셋째, 청소년·심신이 약한 사람·중대장애자 중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넷째,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불처벌과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이나 신변보호, 심리의 비공개 등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시점에서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의 집행현황과 성매매피해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의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신고, 조사, 판단 및 처리에 관련 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서비스로의 연계대책을 마련하 도록 하여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 재유입방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연구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관련 시각과 입장,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과 문제점, 성매매업소 유형에 따른 유입과 정의 유형화와 피해실태, 스웨덴의 성매매여성 비범죄화가 주는 함의,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제고방안의 순으로 고찰하였으며, 문헌연구, 성매매피해여성 심층면접조사(17명), 수사실무관계자 면접조사(13명), 스웨덴 출장,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2.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관련 시각과 입장

가. 법제정 이전의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입장

성매매방지법 제정 당시 논란이 되었던 성매매의 개념 및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출했던 성매매방지법안의 입장인데, 선택적 비범죄화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즉 성매매방지법을 통 해 성매매 구매자 및 알선업자 등 중간매개자는 처벌하되, 성매매여성은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이다.
- 성매매 비범죄화는 형법학계의 주류적인 입장인데, 단순성매매, 즉 강요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거나 합법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정책을 의미한다. 대신 성매매를 조장하는 알선 업자 등 중간매개업자나 인권침해적인 인신매매는 형법을 통해 처벌한다 는 것이다.
- 성매매에 대한 전면적 금지주의는, 성매매는 사회윤리를 타락시키는 근절 되어야 할 사회악으로서 성매매알선업자 및 성구매자 뿐만 아니라 성판매 자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제정 이후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입장과 시각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었는데, 크게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입장과 성노동자에 대한 논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긍정적 입장에서는, 첫째, 성매매방지법이 범죄로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를 가져왔고, 둘째, 성매매 관련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했다고 평가한 다.
-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는, 첫째, "성매매방지법은 도덕적인 법"으로 형법에 의해 성도덕을 강제하고자 하는 법이며 국가 형벌권의 남 용이라는 주장, 둘째, 강간 등 성범죄를 대처하기 위한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주장, 셋째, 실효성의 문제로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법규범과 법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 그러나 첫 번째 주장은 성매매를 단지 도덕의 문제나 선량한 성풍속의 문제로 판단하여 성매매가 가진 인격과 인간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매매로서의 폭력성에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두 번째 주장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 주장은 현재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문화 개선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다.
-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다양한 담론이 대두되었는데, 특히 주목할만한 것 은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 요구 및 성노동자 담론의 등장이다. 성노동 주 장은 성매매가 현재 여성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경제 노동 의 하나라고 보며, 성매매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성노동의 선택에 대해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성매매 비 범죄화를 주장한다. 이 입장 역시 성매매업자 중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하 는 인신매매범을 처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기된 성노동자 주장의 근저에 있는 가장 현실 적인 쟁점은 성매매여성의 생존권 문제인데, 이를 성노동에 대한 주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의 주장 은 성의 이중기준에 기초한 성매매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판한다는 점 에 의미가 있지만, 그 비판이 성매매 중간매개자나 구매자에 대한 영역까 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노동자가 국가보다는 사 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는 주장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러한 성 노동에 대한 주장은 국가가 아닌 사용자, 즉 성매매 업주를 향하는 주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과 문제점

가.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의 주요 내용

1) 성매매피해자 개념에 관한 규정

-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의 정의와 종류에 관하여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규정,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정의와 관련하여 '지배·관리하에 둔다'는 것의 의미에 관한 규정 등 다소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피해자 규정은 종전의 형사처벌 면제에 해당되는 '강요된 행위'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다.
- 성매매피해자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성매매피해자는 자신이 강요된 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자가 아니라는 것, 즉 피의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일반원칙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의 부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2)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규정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 형사처벌 대상 제외 및 신고자 등의 보호(제6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장 등의 신고의무(제7조),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8조), 심리의 비공개 근거 마련(제9조), 불법원인채권 무효규정(제10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제10조) 규정을 두고 있다.

4. 성매매방지법 집행에 관한 공식통계

가. 성매매신고, 검거관련 통계

경찰청의 법 시행 1년간(2004.9.23-2005.9.15) 성매매단속실적에 의하면, 2004.9.23-2005.9.15에 검거된 성매매사범은 16,260명이고, 이 중 업주 및 성매수남성은 11,474명(70.6%)이고, 성판매여성은 4,786명(29.4%)이다. 이것은

2003.9.23-2004.9.15 대비 남성은 34.2% 증가, 여성(대부분 성매매여성이라고함)은 12.2% 감소한 수치이다. 여기서 성매매피해여성은 987명이 불입건되고따라서 처벌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검찰조치 현황

검찰에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와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기간의 조치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기소율은 46.7%에서 61.5%로 높아지고, 기소유예율은 35.3%에서 20.0%로 줄었으며 구속율도 5.5%에서 6.3%로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이전 기간에 비해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에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의지가 엿보인다.

5.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

가. 조사개요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관계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일시는 2005년 7월 - 10월 사이에 이루어 졌고, 면접대상은 경찰 4명, 검사 4명, NGO관계자 4명, 행정부 담당공무원 1명의 총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 및 문제점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 규정 집행현황과 관련해서는 성매매피해자 신고단계에서부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리단계까지 형사사법실무 관계자 들의 의견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표>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 및 문제점

단계	현황	문제점	
성매매 피해자 신고	○ 신고내용 - 못받은 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선불금 무효가 희망 - 생계문제가 가장 큰 문제 - 업소탈출이 목적	○ 117지원센터에서 신고접수 거부	
성매매 단속	 ○ 단속현황 -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 - 성매매여성의 신고에 의한 특정 업소 단속 - 인터넷상 이루어지는 성매매단속 ○ 단속과정의 어려움 - 일반적 단속을 통한 성매매적발의 어려움 - 입증의 어려움 - 합청에 의한 경우에는 가능 · 보복의 두려움이나 업주와의 인간관계로 여성들이 신고하기 어려움 - 산업형 성매매의 경우 · 단속이나 증거찾기가 어려움 · 유사성교행위 업소에 대한 규제 미비 · 안마시술소의 경우 협박성 시위로 단속어려움 ○ 성매매증명의 어려움 - 현장 적발 어려움 - 설제 업주를 찾기 어려움 - 연속의 효과 - 지속적 단속이 성매매범죄예방에 어느정도 효과 발휘 	○ 성매매여성 위주의 단속 ○ 수사기관과 업주와의 유착 관계	
성매매 피해자 조사	 ○ 성매매피해자들의 진술환경 열악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 경찰은 적극적 수용하나 검찰은 개선 필요 - 지원기관의 진정서 제출 ○ 성매매여성의 본인 의지와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 	○ 조사자와 피조사자간의 의사소통 부재 - 수사기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상황을 잘 들으려 하지 않음 - 성매매피해자들이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 있음 - 의사소통의 문제	

단계	혀황	문제점
근/1	<u> </u>	
성매매 피해자 판단	 ○ 확실히 성매매피해자로 인정 - 집결지 여성의 대부분 - 선불금 구조를 진술하는 경우 ○ 성매매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 중첩된 경우의 판단 - 사기죄의 피의자인 경우 성매매 강요 부분 인정되어 사기죄는 '혐의없음' 처리 - 탈성매매의지 불분명시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될 수 없음 ○ 성매매피해자 판단애매한 경우 - 수사기관의 판단지침 필요 	○ 성매매피해자로 수사기관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다시 검거된 경우 - 이에 대한 기준마련 필요
성매매 피해자 처리	 자활지원서비스로의 연결 성매매피해여성이 선택 수사담당자들은 자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과 설득을 하는 정 도에 불과 	 ○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서비스로의 연계대책 부재 ○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연계대책 부재 ○ 피조사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부재

6. 성매매업소 유형에 따른 유입과정의 유형화와 피해실태

가.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

○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성매매를 한 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경찰과 검찰에서는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입장과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강제적 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를 구별하는 기준은 여성이 업소에 '유입당시'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는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과정'에서 그 여성을 억압하고, 강제하기 위한 폭력과 착취가 존재했는가에 있다고보아야 한다. 여기서 강제적 성매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을 강요하는 강제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나. 피해의 조건과 기준 설정

○ 성매매 과정에서의 강제적인 요소로 인해 성매매여성은 자신의 삶과 신체, 정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다. 이것이 성매매로 인한 피해이 다. 그러므로 성매매피해자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성매매 업소에서 일 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적 요소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성매매여성이 매개자 혹은 구매자를 통해 직접 겪는 피해, 즉 성매매여성 이 성매매 과정에서 겪은 폭력과 착취로 인한 강요 및 강제를,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을 ILO의 기준에서 허위의 노동조건 제공, 빚의 속박, 폭력, 그 리고 신분증 압류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다. 성매매피해여성의 피해실태

 성매매여성들의 직접면접을 통해 살펴본 성매매에서의 강제적 요소는 업 종을 불문하고 전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를 업종별로 정리해보 면 다음과 같다.

<업종에 따른 강제적 요소의 분류>

	1종	2종	3종
근무조건정보제공 여부	2차가 필수적이 어쩔 수 없이 2	지 않다고 들으나, 차를 하게 됨	성매매를 한다 는 것을 알게 됨
근로계약(차용증)	선불금이 있는 대체됨	경우 차용증으로 급	근로계약문서가
지각, 결근에 대한 일방적 벌칙 규정		이외에 지각비와	매월 1-2일 내 지 3개월 마다 1일의 휴가 이 외에 지각비와 결근비 있음

(계속)

		1종	2종	3종
허위의	일방적인 수입의	표면상으로는 5:5이나 실제 비율은 2:8정도 기본적인 숙식비, 성매매를 위한 일체의 물품비는 여성이 부담		
노동조건 제공	발망적인 수입의 년 분배구조	월급제를 시행 하기도 함	선불제 가불 형 식의 월급제 시 행으로 빚을 더 늘리기도 함	월급체불이 빈 번함
	일의 시작과 종료 결정의 어려움		의 분배로 시일이 <u>.</u> 일을 그만두기 어린	
빚의 굴레(경제적 속박)	선불금의 구조	- 움 - 선불금이 없다	기 때문에 본인의 수 더라도 불합리한 수 되어 선불금 있는	-입의 분배로 빚
	경제적 맞보증	거의 없음	선불금이 있는 경 요함	우 맞보증을 강
직무상 신체적/ 심리적 폭력	강압에 의한 성매매강요	성매매를 강요 할 때 자살봉 등 피할 수 있 는 여지가 있 으나, 그러할 경우 빚이 늘 게 됨	심리적 내지 신 체적 폭력 (폭행 및 협박)에 의한 2차 강요 존재	성매매를 강요 하기 위한 신 체적 폭력이 있었으나, 성매 매방지법 이후 감소추세
	신체적 폭력	손님과 업주에 의한 폭력이 상대적으로 덜 함	업주와 손님에 의한 신체적 폭 력이 존재	
	생리중 성매매 강요	거의 없음		있음
	심리적 폭력	매출에 대한 강요 있음(자 살봉)	다이어트 등 외양 출 및 매상 강요, 우 외출 감시 있	선불금 있는 경
신분증 압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맡김	여권 있음(선불금이 있는 경우 특히 그러함)		러함)
기타	공권력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	- 공권력에 대학 - 성매매방지법 두려움이 큼	한 불신이 큼 상 범법자가 된다	는 사실에 대한

7. 스웨덴의 성매매여성 비범죄화가 주는 함의

가. '성구매자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현황

- 1998년에 제정되어 1999년부터 시행된 '성구매자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매하려고 하는 행위는 벌금형이나 6월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성구매자처벌법'에 의해 스웨덴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성관계는 처벌 가능한 범죄가 되었다. 처벌되는 범위는 거리, 집결지, 마사지 숍등에서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모든 형태의 성적 서비스가 포함된다.
- '성구매자처벌법'의 일차적 목적은 처벌보다 방지에 있으며,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는 경찰청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 재원은 이 재원은 성매매에 관한 경찰의 능력과 지식을 강화시키는 교육에 사용되었다.
-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강화와 사회적 규범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 등이 진행되었다.
- '성구매자처벌법'은 1999년 시행 당시에는 형법의 특별법으로 존재했으나,2005년 4월부터 형법 제6장 제11절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나. '스웨덴 모델'의 효과와 문제점

1) 성판매자에게 미친 영향

- 1998년부터 2003년 사이 스웨덴 거리 성매매(Street Prostitution)의 경우 성판매자의 수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고(-41%), 거리 에서의 성 구매자의 수도 법 시행 이후 더 줄었다.
-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후 경찰에 65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경찰들이 성매 매여성들이 있는 거리를 감시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집중단속 결과 거리의 성매매는 감소하였다.
- 이와 달리 실내 성매매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며, 성판매여성들은 '성구매 자처벌법' 시행 이후 그들 스스로 폭력에 좀 더 노출되었다고 느낀다고 했 다.

2) 성구매자에게 미친 영향

- '성구매자처벌법'으로 인해 성구매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지만, 경찰은 포주와 인신매매 조직을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성구매행위가 범죄이기 때문에 성구매자들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 성구매남성들은 법 시행이전에는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 또는 포주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을 목격했을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법 시행 이후 성구매가 불법화됨으로써 남성들은 자신을 신고하는 결과를 가 져오는 신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 스웨덴 모델이 한국에 주는 함의

- 스웨덴의 성매매 규모와 유형은 우리와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스웨덴의 성매매 규모는 2000~2500명 정도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달 리 성산업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성판매자 에 대한 착취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스웨덴 사회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구조로부터 기인하는 성매매의 성격이 우리와는 다르다. 스웨덴은 고용상의 차별 해소 정책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의 45%가 여성이다. 이와 같은 스웨덴 사회의 젠더 구조는 성이 거래되는 행위 그 자체는 양성평등 실현을위해 해결해야 할 '최후의 영역'이 된다.
- 그동안 성매매 정책이 성판매자인 여성에 대한 통제정책이었다는 점을 감 안하면, 스웨덴 모델은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남성성구매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 상담과 교육으로 정책의 초점이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크다.
- 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제고방안
 - 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의 추정규정' 도입

성매매피해자 입증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성매매피해자의 추정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피해사실을 주장하면 되고, 수사기관은

그 사람이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신고, 고소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이며, 단속된 성매매여성 중 성매매피해여성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성매매피해자 신고관련 개선방안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117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가 성매매피해자들의 신고를 위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다더 많은 성매매여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고를 했을 경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고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매매단속관련 개선방안

첫째, 성매매단속은 성판매자, 성구매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성매매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기법의 개발과 성매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수사기관과 업주와의 유착관계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성매매피해자 조사관련 개선방안

첫째, 성매매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조항이 모든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기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상황을 경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성매매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마련 해야 한다.

4) 성매매피해자 판단관련 개선방안

성매매피해자 판단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한번 성매매피해자로 인정 되었던 사람이 또 다시 단속이나 검거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성매매피해자로 계속 인정한다면 계속 단속되어 올 경우 계속적 으로 피해자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자활서비스로의 연계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5) 성매매피해자 처리관련 개선방안

첫째,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자활서비스로의 연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연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피조사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다. 성매매피해자 판단을 위한 지침 마련

성매매피해자 판단과 관련하여 특히 애매하다고 지적되는 경우는 한 개인에게 성매매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 성매매피해자가업주의 성매매강요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선불금 무효 등 자신의 채무에 대한 민사적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경우, 성매매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업주와 합의한 경우로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는지에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이 어려운 사례들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개별적,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통일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라는 성매매방지법 제정목적에 관한 사회일반의 공감대 형성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여성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존엄성, 인권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을 사회일반인들이 인식한다면, 성매매피해자를 포함한 성매매여성은 더이상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선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격과 신체에 대한 존엄성 및 인권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또는 자활지원과정에서도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다.

목 차

)
I. A	러론1
1	l.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9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9
	나. 성매매피해여성 심층면접조사9
	다. 수사실무관계자 면접조사9
	라. 스웨덴 출장9
	마. 전문가 자문회의9
2	I. 용어의 정의 ·······11
	가. 성매매방지법11
	나. 성매매피해자11
4	5. 연구의 제한점
Ⅱ. 성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관련 시각과 입장13
	l. 법제정 이전의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입장 ···································
	가. 성매매여성 비범죄화16
	나. 성매매 비범죄화
	다. 성매매에 대한 전면적 금지주의19
9	2. 법제정 이후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입장과 시각 ···································
-	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긍정적 입장 ···································
	나.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24
	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다양한 담론의 대두 ···································
2	3. 소결·······34 급 제 8 기기 기 8 년 급 년 의 제 기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	<i>).</i> -12

Ш.	수	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과 문제점	37
	1.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의 주요 내용	39
		가. 성매매피해자 개념에 관한 규정	39
		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규정	45
	2.	성매매방지법 집행에 관한 공식통계	52
		가. 성매매신고, 검거관련 통계	52
		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검찰조치 현황	54
	3.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	··· 56
		가. 조사개요	··· 56
		나. 성매매피해자 신고현황 및 신고과정에서의 문제점	··· 57
		다. 성매매 단속현황 및 단속과정에서의 문제점	60
		라. 성매매피해자 조사과정 및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66
		마. 성매매피해자 판단현황 및 문제점	··· 70
		바. 성매매피해자 처리현황 및 문제점	
	4.	소결	··· 76
IV.	성기	매매업소 유형에 따른 유입과정의 유형화와 피해실태	79
IV.		매매업소 유형에 따른 유입과정의 유형화와 피해실태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	
IV.	1.		··· 81
IV.	1.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	··· 81
IV.	1.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 성매매피해자의 기준 설정에 근거가 되는 국제법	··· 81 ··· 84
IV.	1.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성매매피해자의 기준 설정에 근거가 되는 국제법 가.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 81 ··· 84 ··· 84
IV.	1. 2.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성매매피해자의 기준 설정에 근거가 되는 국제법가.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정'	··· 81 ··· 84 ··· 84 ··· 86
IV.	 1. 2. 3.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성매매피해자의 기준 설정에 근거가 되는 국제법가.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정'나. ILO협약에 의한 강요된 노동	81 84 84 86 87
IV.	 1. 2. 3.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성매매피해자의 기준 설정에 근거가 되는 국제법가.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정'	81 84 84 86 87
IV.	 1. 2. 3.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	81 84 84 86 87 89
IV.	1. 2. 3. 4.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	81 84 86 87 89 91
IV.	1. 2. 3. 4.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	81 84 86 87 89 91
IV.	1. 2. 3. 4.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	81 84 84 87 89 89 91 96

	라. 신분증 압류	117
	마. 기타: 공권력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	117
6.	. 소결	119
V A	-웨덴의 성매매여성 비범죄화가 주는 함의	123
1.	. 스웨덴의 성매매 규제의 역사와 현재	
	가. 성매매 관련 법적 규제의 역사 : '성구매자처벌법' 제정 과정	
	나. '성구매자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2.	. '스웨덴 모델'의 효과와 문제점	
	가. 성판매자에게 미친 영향	
	나. 성구매자에게 미친 영향	
	다. 사회적 규범화의 효과	
3.	. 스웨덴 모델이 한국에 주는 함의	140
VI. 성	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제고방안	143
1.	.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의 추정규정' 도입	145
	.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가. 성매매피해자 신고관련 개선방안	
	나. 성매매단속관련 개선방안	
	다. 성매매피해자 조사관련 개선방안	
	라. 성매매피해자 판단관련 개선방안	
	마. 성매매피해자 처리관련 개선방안	
3	. 성매매피해자 판단을 위한 지침 마련 ···································	
	.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라는 성매매방지법 제정목적에 관한	150
4.	사회일반의 공감대 형성	151
	사외들인의 중심대 영상	134
참고둔	문헌	155
н	근	150

표 목 차

<笠 Ⅲ-1>	성매매피해자 요건 및 성매매강요행위의 구성요건45
<班 Ⅲ-2>	117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실적 결과52
<張 Ⅲ-3>	성매매사범 검거실적 53
<張 Ⅲ-4>	100일 집중단속결과 중 피의자 분석54
<張 Ⅲ-5>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조치결과55
<張 Ⅲ-6>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 및 문제점77
<班 IV-1>	피해의 기준과 이에 따른 세부사항88
<班 IV-2>	조사대상자의 특성 89
<亞 IV-3>	업종에 따른 강제적 요소의 분류121
<班 V-1>	1999년에 기소가 취하된 경우에 대한 통계132
<班 V-2>	스톡홀름 말므스킬나드가든 거리 성매매 실태134
<亞 V-3>	거리 성매매 변화 현황135
<班 VI-1>	수사지침 작성을 위한 성매매피해자 인식항목150

① :: ::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9
4.	용어의 정의	11
5.	연구의 제한점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두가지법을 함께 '성매매방지법'이라 칭하기로 함)이 2004.3.2 제정되고, 9.23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들이 이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비교해서 두드러진 차이점은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 개념의 도입에 관해서는 일찍이 "성매매시장에 유입된 기존의 여성들의 경우 입법정책적인 결단에 의하여 그 유입경로나 연령 등을 감안한 일정 범주의 사람들을 비자발적 성매매자로 봐서 이들의 행위는 '비범죄화'하며…"라고 하여 입법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다.1) 다만, 초기 법률초안에서는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성매매된 자'2)라는 개념을 상정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로 바뀌게 되었다.3)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입법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금지주의에 의하면, 성매매는 처벌되는 것으로, 성을 파는 경우나 사는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다. 그러면서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면, 왜 성매매피해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¹⁾ 이찬진(2003),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측면에서 본 사법절차의 문제점", 「사법제도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토론회 자료, 2003.12.17, 국가인권위원회, p.43.

²⁾ 당초 성매매방지법 초안에서는 '성매매된 자'를 "성적인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위계 또는 선불금 등 계약의 이용, 마약 등에 중독된 상태 등에 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 장애인 중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의 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성매매된 자는 현행법의 성매매피해자와 개념정의는 유사하나, 성매매된 자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 현행법과 다름.

³⁾ 성매매방지법이 당초에 설정한 입법방향은 "'성매매된 자'의 입증과 관련하여,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매매된 자'라는 점에 대한 주장책임만 부과하고 '성매매된 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이들의 자발적인 신고 등을 통하여 성매매업주들의 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형사처분이 부과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된 것임: 앞 글, p.43.

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성매매과정에서 일정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매매피해자의 비범죄화는 성매매방지법 제정당시 사회적으로 표출되었던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감금·협박·성판매자의 채무이용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 등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연적으로 내린 입법적 결단이다.

이와 같이 감금·협박 등 강요에 의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경우는 행위자의 적법한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가 없고,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법이 정한 성매매피해자는 업주, 직업소개인 등 중간매개자에 의한 성매매 강요나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성매매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성구매자, 성판매자, 성판매와 성매매알선자의 3자 구도에서 성매매알선자 예를 들어 업주에 의한 감금 · 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성구매남성에 의한 구타 등 성구매자에 의한 피해나 업소 종사자 등 성판매자에 의한 피해는 성매매방지법 적용의 대상은 아니며, 형법 등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중간매개자에 의한 강요구조를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중간매개자가 없거나 그러한 강요구조가 없는 경우는 피해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에서는 성매매피해자를 크게 다음의 네가지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위계·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둘째,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셋째, 청소년·심신이 약한 사람·중대장애자 중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넷째,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즉,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조사시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이나 신변보호, 심리의 비공개 등이 보장된다. 또한 경찰,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가족, 변호인 등에게 통지하고,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에 인계해야 한다. 성매매범죄 신고자, 성매매피해자의 조사나 증인신문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며, 증인신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고, 경찰서장의 신변안전조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피해자의 비범죄화를 통해 성매매피해자들에게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수사과정에서 특별한 보호를 하며, 의료·법률지원, 직업재활 등 복지서비스를 공고히 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인권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 법의 시행으로 강요, 감금에 의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성매매상황에서 빠져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었던, 탈성매매의 의지가 있 는 성매매피해자의 경우는 이 법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성매매피해자와 관련된 중요한 두가지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성매매방지법이 정한 성매매피해자의 정의에는 실제 성매매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매매강요 등의 행위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에 관한부분이다.

또 하나는 수사기관에서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매매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성매매강요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면, 수사실무에서는 성매 매피해자가 성매매강요를 입증하여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용이할까 하는 문제이다.

한편, 성매매방지법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범죄자와 피해자의 두가지로 나누어 설정함으로써, 성매매여성의 경우 자신의 상황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또 피해자로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실제 경찰의 법 추진실적을 보면, 2004.9.23 - 2005.9.15까지 성매매사범 검 거인원 16,260명 중 여성이 4,786명(29.4%)이고, 그 중 성매매피해여성은 987 명이며 불입건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⁴⁾ 여기서의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불 입건과 이로 인한 처벌면제가 성매매피해자 규정의 도입에 따른 경찰단계에

⁴⁾ 경찰청(2005),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1년간 단속실적 분석 및 대책".

서의 새로운 처분결과이며, 이전의 법 통계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인지 아닌지가 정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리고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신변안전조치 등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범죄자의 신분을 갖게 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의 속성상 성매매여성이 재차검거된다면 전과가 올라가게 되고, 재범자를 기준으로 한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성매매방지법이 오히려 성매매전과자를 양산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된다면, 업주에 의한 선불금사기사건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혐의가 없거나 무죄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성매매여성들이 경험한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 례를 접하고, 법이 규정한 성매매피해자 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성매매여성을 모두 성매매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수사기관은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매 매피해자 판단을 위한 요건적용은 엄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의 집행현황과 성매매피해실태를 살펴 보는 것이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를 연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연구과제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이나 상담소, 지원시설 관계자 등 사법체계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 현 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매매피해여성 17명에 대한 심충면접을 통해 성매매피해실태를 살펴 봄으로써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추상적인 법 규정의 해석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매매여성들의 피해사례를 검토하고 법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자 정의에 포섭시킬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성매매피해자 판단시 명확한 기 준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주관적인 판 단에 따라 상이한 해석을 하게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 라서는 법이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성매매피해자의 요건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자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성매매처벌법에 명시된 규정에 제한하지 않고, 노동조건에 관련된 ILO협약이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등 국제기준이 제시하는 피해자의 범주까지 확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연구방향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피해자와 관련 하여 다음의 네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다.

첫째, 성매매 및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살펴 보고, 금 지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성매매피해자 관점을 도입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였다.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법익으로 할 때만이 성매매금지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덕적 보수주의 입장을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의 내용과 비판부분을 충실히 소개하고, 결론적으로성매매피해자 개념도입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보장이라는 성매매방지법의 입법방향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매매방지법이 정한 성매매피해자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 규정들이 실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법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 경찰, 검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및 상담소 관계자 등 관련 실무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신고, 성매매단속, 성매매피해자 조사, 성매매피해자 판단, 성매매피해자 처리에 관한 면접을 통해 수사기관이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을 집행하면서 실제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셋째, 성매매피해여성의 피해실태를 중심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요건에 해 당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다양한 성매매업소 유형을 망 라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위계, 폭력 등 성매매강요행위의 실제 사례들 을 제시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추상적인 법 규정들을 실제 해석하고, 적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건에 관한 허위의 정보제공, 경제적 속박, 직무상 신체적·심리적 폭력, 신분증 압류, 공권력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 등에 관한 사례들이 위계, 폭력에 의한 성매매강요행위의 사례로 제시되었다.

넷째, 성판매를 인권침해의 차원에서 보아 성판매자를 모두 성매매피해자로 보는, 그리고 우리의 성매매방지법의 성매매피해자 개념설정에 모델이 되었던 스웨덴의 성매매피해자정책을 살펴 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웨덴의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 보고, 이 법이 스웨덴 사회에 미친영향과 효과 및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통해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시점에서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 기를 제공하고, 성매매피해자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성매매피해 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피해자로 인정 받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재유입방지를 통한 진정한 탈성매 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과 적절한 연계방안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내용

- ○성매매 관련 쟁점과 동향
-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과 문제점
- ○성매매업소 유형에 따른 유입과정의 유형화와 피해실태
- ○스웨덴의 성매매 규제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제고방안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성매매 및 성매매피해자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입수, 연구하였다.

나. 성매매피해여성 심층면접조사

쉼터,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성매매피해여성(20명 내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성매매피해자의 피해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수사실무관계자 면접조사

경찰, 검찰, NGO관계자, 행정부 공무원(13명)을 대상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라. 스웨덴 출장

2005.6.24-7.1까지 스웨덴 출장을 통해 스웨덴의 성매매피해자정책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지 기관방문조사를 통해 스웨덴의 정책이 성매매방지 및 감소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또 성매매피해자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마.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3차례 전문가 자문회의가 이루어 졌다. 2005.4.28에 이루어진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성매매관련 연구자, NGO관계

자 3인이 참석하여 연구방향을 검토하고,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시각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6.17에 이루어진 제2차 자문회의에서는 성매매사건 담당검사, 경찰, 변호사 4인이 참석하여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7.25에 이루어진 제3차 자문회의는 본 연구과제의 중간보고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여성학자, 여성가족부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중간보고서 초안의 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4. 용어의 정의

가. 성매매방지법

본 연구에서의 '성매매방지법'이라는 용어는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며, 언론이나 NGO담당자들이 사용함으로써 일반화된 개념이다. 이 용어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것으로, 두법이 성매매방지에 관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서 생겨 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처벌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상 성매매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지만, 일반인에게 보다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보고서 제목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나. 성매매피해자

본 연구에서의 성매매피해자 개념은 다음 두가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협의의 성매매피해자로서 성매매처벌법이 정한 성매매피해자의 개 념을 말하는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이 정한 위계·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심신이 약한 사람·중대장애자 중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가 그것이다.

둘째, 광의의 성매매피해자는 노동조건에 관련된 ILO협약이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등 국제기준이 제시하는 피해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일반적으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의미의 피해자를 그 범위로 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이라는 기간으로 인해 법 집행관련 공식통계가 많지 않아 통계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문제를 다루는 조직과 인력의 형성이나 사건을 취급한 경험들의 정도가 기관 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보다 균질적인 내용의 비교분석이 어려웠다.

셋째, 성매매피해여성 심층면접에 관해서는 성매매현장에 있는 여성들, 그리고 성노동권을 주장하는 성매매여성의 사례와 증언이 필요하지만, 접근성의 한계때문에 부득이 쉼터, 지원시설 등 탈성매매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음을 한계점으로 밝혀 둔다.

넷째,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피해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법상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례접근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섯째, 스웨덴 현지방문을 통해 성판매자에 대한 비범죄화정책을 채택한 스웨덴의 입법모델을 고찰하고, 정책의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입법모델은 금지주의하에서 성매매행위자 중 일부를 비범죄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모델과는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자와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은 별로 부각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관련 시각과 입장

1. 법제정 이전의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입장 15

2. 법제정 이후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입장과 시각 21

3. 소결 34

1. 법제정 이전의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입장

2000년, 2001년 군산에서 화재로 인해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아왔 던 성매매여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이 처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당시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화되어 있었으나,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성매매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다.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알선업자나 포주 등 중간매개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이 성매매여성에 집중되고 성매매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향유자인 성매매업주나 중간매개자들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매매 규제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 주도하여 2001년 4월 성 매매방지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구성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여연은 "성매매알선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01년 입법청원하였다. 이후 이 법안은 성매매처벌법안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안으로 분리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호중, 2003:74). 2002년 9월 11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2003년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성매매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001년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특별법을 제출했던 이후 성매매 관련 논의의 쟁점은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입장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매매 방지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성매매는 처벌하되 성매매여성은 비범죄화할 것을 주장했으며, 형법학자들은 타인을 유인·매개·알선한 중간매개자는 처벌하되 중간매개자가 개입하지 않는 단순성매매의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는 비범죄화할 것을 주장했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기대고 있는 도덕주의관점에서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전

면적인 처벌을 주장하였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이러한 입장들의 합의된 결과로써 타인을 유인·매개·알선한 중간매개자와 성구매자, 성판매자인 성매매여성은 처벌하되,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성매매피해자로비범죄화하고 있다.

가.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출했던 성매매방지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적 비범죄화(selective decriminalization)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성 매매방지법을 통해 성매매 구매자 및 알선업자 등 중간매개자는 처벌하되, 성매매여성은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여성단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성매매 개념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성매매란 모든 성적 착취의 토대이자 그 자체라는 것이다. 즉 성매매는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확고히하고 여성의 억압을 고무시키는 데에 기여할뿐이라고 지적한다. 배리(Kathleen Barry)는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화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에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성차별적인 자본주의의 구조화된 강제 속에서 이러한 비인간화 과정을여성이 선택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강제이고 강요라는 것이다(Barry, 1995).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는 근거는, 성매매 자체가 가부장제적 억압에 기초한 성적 착취이기 때문에 성매매여성이 성을 파는 행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라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여성은 범죄자가 아닌 사회복지적 관심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중은 형법 제303조제2항의 피구금부녀간음죄의 논리를 비유하여,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권력적으로 지배-종속 관계에 놓여 있는 성매매가 남성지배적 권력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므로 성매매 행위를 권력관계에 놓인 성을

이러한 입장은 스웨덴에서 1999년 1월에 제정된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에 관한 법(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에서 반영되어 있다. 이 법은 성매매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법으로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 돈을 지불하는 어떠한 형태의 성매매이든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벌은 성구매자와 성매매를 조장・알선하는 자에게만 해당하고 성매매여성은 범죄자가 아닌 사회 복지적 관심의 대상이자 피해자로 인식된다(허경미, 2003:232).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정의에서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성매매 구매자를 처벌하되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를 유인·조장한 알선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는 성매매가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왔으나 실제 현실사회에서는 합법화되어 있는 법 인식과 국민의 인식상 괴리가 매우 극심한 상황이다. 둘째, 성매매업주와 국가기관과의 유착이 심하여 성매매업주 처벌에 효율적이지 않다. 셋째, 성매매업주에 의해 발생하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착취와인권유린이 극심하다. 넷째, 사회적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도덕적, 법적 낙인이 심하다. 이러한 현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형법학자들이 포주 내지 중간매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매매여성과 성구매자 사이에 성거래를 상상하지만, 실제 한국 사회의 성매매 유입과정을 살펴볼 때 결과적으로 중간매개자가 존재하지 않는 성매매를 하는 성매매여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처벌주의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성매매를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격적 자율성의 침해라는 하나의 본질로 환원 시킴으로써 성매매여성들의 복잡한 경험을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한 성매매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매매여성을 소외시키는 윤리적 낙인과 편견 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성매매의 범죄화와 성 매매여성의 비범죄화 전략이 이러한 윤리적 낙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다(하주영, 2002:326-7).

나. 성매매 비범죄화

형법학자들은 성매매를 비범죄화한다고 주장해왔다.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단순성매매, 즉 강요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성매매 는 처벌하지 않거나 합법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정책을 의미한다. 대신 성매매 를 조장하는 알선업자 등 중간매개업자나 인권침해적인 인신매매는 형법을 통해 처벌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01년 개정된 독일의 성매매법이 이러한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 법은 성매매를 직업적 활동으로 보장하지만, 여성매매나 강제 성매매, 성매매여성에 대한 착취나 실질적 지배력 행사, 미성년자 공급 등은 여전히 형사법적 처벌대상으로 하여 성매매여성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김은 경, 2002:54).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입장은 대체로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근거를 두고서, 형법의 탈도덕화 원칙에 비추어 단순 성매매는 형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성매매는 피해자 없는 범죄 내지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이호중, 2003:92).

성매매의 비범죄화 주장에는 성매매 개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에 근거를 둔다. 한 개인이 돈과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의 몸을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그 선택을 도덕적 다수자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경멸하거나 형사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며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⁵⁾. 즉 성인의 합의된 성행위를 국가 권력이 제한하는 것은 국가체제의 유지를 위해 개인과 개인의 몸을 통제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유와 자결권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자발적인 단순성매매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의 비범죄화 입장에서도 성매매에 대해 어떠한 규제

⁵⁾ Belinda Cooper, "Prostitution: A Feminist Analysis", 11 Women's Rrs. L. Rep. 99, 101(1989); 조국(2004:16)에서 재인용.

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자와 성매매 사이에 합의된 성매매 이외에 성매매 조장자의 경우 타인을 유인·매개·알선하여 성매매에 이르게 한 것은 피매개자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최병각, 200:66). 임웅도 단순성매매 자체는 비범죄화하도록 하고, 다만 ①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성매매행위, ②성매매여성을 경제적으로 수탈하거나 종속관계를 설정하는 등 매음매개, 조장행위 및 포주행위, ③성병을 감염시키는 성매매 행위, ④공중에게 심한 혐오감을 일으키는 윤락유인, 권유행위 등에 국한하여 형사제재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임웅, 1999:106).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성매매의 문제는 사회적 인식이나 낙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고 성매매는 '피해자 없는 범죄'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성매매자가 여성을 비인간화하는 과정임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성매매의 비범죄화 입장 역시 강제적 성매매에 대해 반대한다. 즉자발적 선택이 아닌 강요에 의한 성매매나 인신매매는 부인한다. 그러나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이미 성차별에 의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제한되어 있는 사회에서 성매매를 선택하는 여성의 자발성을 강제와 대비된 '자발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다. 성매매에 대한 전면적 금지주의

앞의 두 입장과 달리 성매매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성매매는 사회윤리를 타락시키는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으로서 성매매알선업자 및 성구매자 뿐만 아니라 성판매자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경재, 1999:166-7).

이러한 전면적 금지주의에서는 성매매를 성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도덕을 해치는 사회악이며, 이를 기초로 성병 파급이나 각종의 다른 범죄가 확산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된다(조국, 2003:15). 이들에 따르면 성매매가 생식이 아닌 쾌락을 위한 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

에 배치되고 부도덕한 것이다⁶⁾. 성매매가 성적으로 '부도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일처제를 기저로 한 가계 또는 가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성매매의 부도덕성을 찾는 도덕적 보수주의는, 한편으로 성적 이중기준을 수용하기 때문에 성매매여성을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락한 범죄자로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보수주의는 전면적 금지주의 입법정책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전면적 금지주의는 성매매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주의이 다. 금지주의 하에서는 성매매자와 성구매자 모두 범죄자가 되며 포주행위 역시 범법행위가 된다.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모든 성매매를 불 법화하고 처벌을 통해 제재한다.

1961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전면적 금지주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법률상 윤락이라는 개념은 ①사전적으로 도덕적 타락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성매매를 문란한 성관계로 규정하는 태도가 엿보이고, ②성기접촉에 의한 성행위에 한정되어 있으며, ③문제의 초점을 성매매여성에게 두어 도덕적 낙인의 효과가 있었다(양현아, 2004:32).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도덕적 보수주의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전면적 금지주의의 대표적입법이었다.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보수주의의 시각에 바탕을 둔 전면적 금지주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성매매여성을 오히려 성상품으로 낙인시키며, 여성을 범죄자로 다툼으로써 그들을 법체계 외부로 몰아내 버린다. 둘째, 성매매여성을 각종 사회 서비스로부터 완전히 배제하여 다른 여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태영, 2002:463-4).

⁶⁾ Las O. Erickson, "Charges against Prostitution: An Attempt at a Philosophical Assessment", in Sex, Morality and the Law(Routledge, 1997), p. 89; 이경제(1999:167) 에서 재인용.

2. 법제정 이후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입장과 시각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언론에서 성매매 관련 기사를 주요한 이슈로 다루었으며, 성매매여성들과 업주들의 집단행동이 있었다.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성노동자에 관한 쟁점이 크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나온 입장을 크게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입장은 범죄로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는 점, 성매매 관련한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입장은 성매매방지법이 도덕적인 법이라는 입장,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입장,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보는 입장 등으로나눌 수 있다.

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긍정적 입장

1) 범죄로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변화 및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은 2000년도 군산에서 발생한 성매매여 성들의 집단 화재 참사가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여성단체의 제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성매매방지법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채택하고 있었던 금지주의에 입각한 입법방향을 일정부분 고수하고 있으나, 실제 성매매에 대한 입장과 내용은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내법은 금지주의에 입각한 입법방향을 고수할 것이다……우리나라 성매매 문제의 특성, 규모, 사회문화적 속성을 고려할 때, 금지주의를 견지해야할 것이다. 만약 어느 한 부분에서 법적 인정의 여지를 준다면 중간착취자들이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줄 수도 있다. 또한 성

을 파는 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는 남성과 중간업주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는 추세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즉 여성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화하고 처벌은 하되, 경범죄 혹은 벌금수준으로 처벌하며, 처벌대상자라 해도 그 과정에서 인권은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사는 남성과 업주에 대해선처벌조항을 강화하여 성매매종사여성에 대한 간접적인 인권보호 및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도록 해야 한다."(법무부, 2001:172-173)

성매매방지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성매매여성의 인권이며, 이러한 법의 태도는 법의 내용을 통해서도 보여 진다. 첫째, 도덕적 관념이 내재되어 있는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주요한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대체는 성매매행위의 개념 정의와 윤락행위의 개념 정의의 차이로 연결된다. 오로지 "성을 파는 자"의 행위로만 기술되어 있는 윤락행위의 개념과 달리, 성매매행위는 성을 거래하는 쌍방의 행위로 기술된다. 즉 성을 파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 자체의행위로 문제의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이호중, 2003; 양현아, 2004). 둘째,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성매매피해자로 분류하여 비범죄화하였다는 점이다(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 이것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제 혹은 강요하는체계가 존재할 때,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제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양현아, 2004:33).

또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국가로 하여금 성매매알선등 범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국가가 나서서 책임있게 집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의의는 크다(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5:60).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과 성매매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통해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의식을 바꿔내면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여 국가로 하여금 확실한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등범죄에 대응하는 국가 대응력을 높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앞의 책, 72).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를 분리하면서 성구매

자나 알선자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까지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렇게 금지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나 동시에 보호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차이가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성매매처벌법 제12조 1항)하고 있다(조국, 2003:35).

2) 성매매 관련한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 증가

경찰은 그간의 국민적 불신과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성매매알선등범죄에 강력대응하면서 피해여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성매매여성조사 및 인권보호지침을 제작, 배포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성매매방지법을 집행하는 최 일선에 선 경찰은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117 개통, 성매매여성 조사시 여경 참여제도 활성화, 성매매전담반 여성청소년계 활용,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인정, 진술 녹화실 이용, 출장조사 실시 등 피해자 보호와 조사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수사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과 유형별, 테마별 단속 등을 통해 성매매알선등 범죄에 강력대응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 또한 일선 검찰에서 성매매사범 관련한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와 피해자보호, 업주들에 대한 엄중처벌방침을 가지고 대응하였으며 속칭 '대딸방'업주에 대한 기소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다(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5:65-66).

이러한 법적서비스와 법집행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성매매여성들의 자신감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측면이 있다. 법 시행 이후 성매매여성들은 ①당당해 졌으며, ②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③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받음

으로 성매매로 인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④대안이 주어진다면 성매매를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⑤진학, 취업, 창업 등 전업 성공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⑥성매매 업소로의 재유입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앞의책, 69).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경찰단속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부재이다. 이는 여러 사안에 밀려 성매매알선등범죄에 경찰력이대응하는 역량이 약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만 단속을 한다거나 하는 양태로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처벌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 성매매알선등범죄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는 미약하고, 여성들은 성매매행위자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원정 성매매(베트남, 중국, 키바라시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철저한 국내법적용으로 법 집행력을 확고히 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해외로 여성을 송출하는 인신매매조직에 대한 추적조사 및국제공조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앞의책, 67).

나.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1) "성매매방지법은 도덕적인 법"

가) 내용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쏟아져 나온 언론과 학계의 반응 중 한 축은 성매매방지법은 형법에 의해 성도덕을 강제하고자 하는 법으로 국가 형벌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형법학계에서 합의된 성매매의 범죄화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근거는 '성형 법과 성도덕의 분리'이다. 근대형법의 기본적인 태도는 형법에 의해서 도덕 이 강제로 시행될 수는 없으며, 국가형벌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유 해한 행위이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형벌권은 국 가적 제재 중 최후수단으로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덕 또는 풍속의 보 호라고 하는 목적만으로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정당화되지 않고 일정한 법 익의 침해 내지 침해위험성이 존재해야 한다(임웅, 1999:73).

이러한 관점에서 임웅은 일정한 행위를 당벌적인 성범죄라고 하기 위해서 는 그 행위가 건전한 성도덕 또는 선량한 성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필요 조건으로서의 행위불법-, 사회의 기본적 공존·공영질서를 침해하거나 위 태롭게 한다는 법익침해성—충분조건으로서의 결과불법—까지를 갖추어야 만 한다고 지적한다. 즉, 부도덕, 저속,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 국민 대다 수의 윤리의식이나 국민의 기본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 등을 행위의 당벌 성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임웅, 1999:73-4). 최병각 역시 금전 등을 매개로 성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이 되지 않고 특정한 공연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없 다고 주장한다(최병각, 2003:65). 성도덕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에게 맡겨 두 고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형벌권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경재, 1999:185)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단순 성매매가 사회적인 유해성이 없는 행위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서는 신체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 는 요소를 지니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란 것이다.

성도덕과 성형법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단순성매매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사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 가 들어있다. 이러한 논리는 자발적으로 합의한 성매매자와 성구매자의 개인 적인 거래에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이 형벌권의 남용이라는 점을 전제 로 하고 있다. 특히 조국은 성매매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성구매 남성 일반을 바로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형벌권의 과잉을 가져온다 고 지적한다(조국, 2003:39).

나) 비판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성매매는 과연 성도덕의 문제인가? 성매매를 처벌하는 근거가 단지 부도덕, 저속,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 국민 대다수의 윤리의식이나 국민의 기본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 문인가?

성매매는 단지 도덕의 문제나 선량한 성풍속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인간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매매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성이 인격과 몸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볼 때 성매매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금지되고 있는 노예매매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변화순, 2004). 혹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신체장기 매매와도 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인의 자발성이 전제되더라도 이러한 매매행위는 사회적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인격과몸에 연관된 섹슈얼리티를 매매하는 행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성을 매매하는 것을 인권의 문제가 아닌 도덕의 문제로 바라보는 도덕적 보수주의 관점이 팽배해 있다는 것에 있다. 성매매를 성도덕의 문제로 동일시하며 성매매 처벌이 법과 윤리를 일원화하는 맥락에 놓여있다고 평가하는 맥락에는, 성매매를 도덕적 타락으로만 바라봤던 도덕적 보수주의 관점이 녹아있는 것이다.

강요에 의하지 않은 단순성매매는 인간의 몸과 인격에 연관된 섹슈얼리티를 매매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유해하다. 형법학자들이 포주 내지 중간매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매매여성과 성구매자 사이에 성거래를 상상하지만, 성매매 유입과정을 살펴볼 때 결과적으로 중간매개자가 존재하지 않는 성매매를 하는 성매매여성은 거의 없다. 설사 그러한 거래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매매 계약이 자신의 몸과 인격에 대한 통제권을 이양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성매매 자체가 가진 사회적 유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국이 지적한 대로, 단순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은 형사정책상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문화적으 로 양산되어 온 성매매의 실질적인 근절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한 자를 우선 적으로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04호] 제12조에서는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성매매를 비범죄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단순성매매 구매자뿐만 아니라 단순성매매여성까지 비범죄화하고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태도로 평가할 수 있다.

2)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

가) 내용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주장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부터 성매매를 옹호하는 중요한 입장 중 하나였다.

2001년 8월 윤락행위 알선혐의(윤방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대전지법의 황00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각 이유를 제시했다. "공창제도를 포함해 성의 제도화 문제는 매우 미묘하고 그에 대한시각도 천차만별로 다양하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윤락가나 룸살롱 등을 통해 성의 매매가 제도적으로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 ···(중략)··· 범죄 폭력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의 접근 등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성의 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으로서 일면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없다."7)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남성협의회는 "남성의 신체의 자유, 생존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며, 장애남성의 성적 쾌락을 누릴 권리를 위해 성매매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언론에서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강간 등의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하기 어려

⁷⁾ 동아일보 2001년 8월 13일자 27면.

운 장애남성이나 남성 노인들 등의 성욕 해소를 위해서 성매매가 긍정적인 사회 역할을 하며 필요악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대해 평가했던 주장들 역시 이러한 입장에 속 하는데,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언론에 등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매매 금 지정책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타격에 대한 주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신문에 등장했던 제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들, 나도 떼일라"(경향 2004년 10월 12일자), "성매매단속, 여행업계불똥"(헤럴드 경제 2004년 10월 7일자), "모텔, 대부업 도미노 부도공포"(한국경제 2004년 10월 8일자), "관광업계 울상"(세계 2004년 10월 13일자).

나) 비판

그러나 성매매가 강간 등 성폭력을 줄여준다는 주장과 달리, 성매매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도 성폭력 건수는 여전히 높다(성폭력 발생률 세계2위). 실제 성매매가 허용된 사회일수록 성폭력발생빈도가 높다. 게다가 남성의 성적 욕구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성적 욕구를 배출할 배설기관으로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성혐오와 남성중심적인 성인식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고있는 것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떤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변화순, 2004:140).

3) 실효성의 문제

가) 법규범과 법 현실의 괴리

실제 성매매를 한 자와 처벌받는 자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해왔다.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1997년을 기준으로 성매매를 경험한 성인남자는 약 60.9%에 이른다고 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8:198). 반면 대검찰청의 통계를 보면 1996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된 자는 총 1,785명에 그치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1997). 한편 사법연감에 의하면 1997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제1심 법원에 접수된 접수건수 858건 가운데

사법 처리된 건수는 814건이다(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9).8) 임웅은, 비단 최근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역시 성매매를 엄중한 형벌과 가혹한 조치로써 근절해보고자 한 국가적 시도들은 거의 다 실패하였고, 과거의대체적인 입법조치와 법집행의 실태를 봤을 때 가급적 매춘이 눈에 띄지 않게 행해지도록 하거나 그 확산을 막아 보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성매매가 필요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사실상'의 비범죄화가 폭넓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임웅, 1999:105). 결국 필벌성의 관점에서 형벌이 단순성매매 근절에 적합하고도 유효한 수단이 아닐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역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단순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현재의 수사기관의 인력과 업무량, 성매매 관련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없는 성매매 정책, 선택적 법집행 및 그에 수반하는 단속자와 피단속자 간의 유착과 비리 등의 문제점을 재생산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조국, 2003:29).

나) 풍선효과

법과 현실상의 괴리를 주장하며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풍선효과의 등장을 근거로 삼기 시작했다. 즉,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어 일시적으로 집결지 지역의 성매매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해 일반지역, 해외지역으로 성매매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언론들은 다음과 같이 성매매의 풍선효과에 대해 주로 언급했다. "성매매, 주택가로 파고든다"(한국경제 2004년 10월 2일자), "가게 마련 때까지 숨어서 영업할 것"(서울 2004년 10월 4일자), "원정성접대 기승"(동아 2004년 10월 16일자).

⁸⁾ 이경재(1999), p. 163에서 재인용.

다) 비판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개선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성매매를 범죄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 이웃 주민의 감시로 인한 신고제도 활성화, 성구매자의 신상 노출로 인한 파급효과, 시민운동의 확산 등이 활성화될 때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변화순, 2004: 141).

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다양한 담론의 대두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2004년 10월 1일 미아리텍사스, 영등포, 평택 등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업주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들은 한 국여성종사자연맹, 민주성노동자연맹 등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행동하였으며, 2004년 10월 21일 성매매여성의 자살기도와 25일에는 생활고를 비관한 미아 리 성매매여성 자살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11월에는 성매매여성들의 단식농 성이 시작되고, 성매매 주변상인들의 집회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성매매특별 법을 둘러싼 물리적 갈등이 가시화되었다. 또한 이들은 여성가족부에 탄원서 를 제출함과 동시에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주도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항 의 방문함으로써 여성계와 정부에 공식적인 저항을 표출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1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비상설)을 설치 · 운영하면서 지속 적인 관련법의 정비와 입법 보완을 시도하였으며, 2005년 5월에는 성매매방 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던 중 2005년 3월 27일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의 화재가 또 다시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을 기점으로 일부 성매매여성이 주도해 온 시위와 업주들의 항의집회는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들의 초기 주장은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에 대한 요구였으나, 점차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라는 구제적인 입장으로 쟁점이 옮겨졌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주장하는 여성주의 연구자 및 노동운동진영과행동을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성노동자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1) 내용9)

성매매를 일종의 노동, 즉 성노동이라는 주장은 주로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자들에 의해 전개되어 왔는데, 이들은 오히려 성매매여성이 도덕주의자나 가부장제에 타격을 주고 한 남성에게 그녀의 성을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일부일 처제의 관념에 도전하는 존재로 이해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정당화하는데, 성매매가 현재 여성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경제 노동의 하나라는 것이다(원미혜, 1997:14). 이는 성매매에 대한 보수적・도덕주의적 시각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낙인을제거하고 성매매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시도이다. 대표적인 조직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성매매여성들의 조직인 COYOTE(Call Off Your Old Tired Ethics)와 네덜란드에서 조직된 전·현직 성매매여성들의 조직인 홍실 (The Red Thread) 등이 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여성의 몸,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통제와 지배의 권리 체제로 정의한다(Berry, 1995). 이들은 성매매가 남성의 돈과 여성의 몸이라는 '평등한', '자유로운' 교환이 아니라 성 착취라고 보며, 사랑, 성폭력, 성매매를 연속선으로 파악한다. 가부장제하의 이성애와 성폭력, 성매매의 억압성은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현실적으로도 성구매자와 판매자는 압도적으로 성별화되어있다. 그 이유는 가부장제 사회의 기본 구조가 남성은 공식 영역(결혼 제도)과 비공식(성매매, 성폭력...) 영역 모두에서 성의 자유를 누리지만, 여성에게는 가족 제도 안에서 출산을 위한 성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남성은 두 영역을 마음대로 넘나들지만, 여성이 비공식 영역의 성적 제도와 연관되는 것은 낙인과 추방을 의미한다. 특히,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극심한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인간의 성 활동(섹슈얼리티)이, 성별에 따라 이토록 의미가 다른 것이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성판매여성에 대한 이러한 남성 사회의 이중적 시각이, 성을 통한 여성 억압의 기본 구조라고 분석

⁹⁾ 노동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자로 칭하고, 불가피하게 인용할 경우에만 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한다. 가부장제는 섹슈얼리티를 통해 작동한다는 것이다(정희진, 2003).

그러나 성매매가 성노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여성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보다 성판매여성에 대한 낙인이 더 여성 억압적이라고 본다(Nagle, 1997). 하지만, 성매매를 성폭력이 아니라 성노동이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스 트들의 견해는, 여성의 성노동을 옹호하는 남성의 시각과는 구별되고는 있다. 성노동자 페미니즘은 성매매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판매여성에 대한 가부장제 사회의 낙인을 비판하는데 초점이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기존 페미니즘이 자칫 성 보수주의와 이성애 중심주의를 강화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성판매여성 혐오와기존 페미니즘의 피해자화 모두, 성판매여성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고 주장한다. 섹슈얼리티의 위계라는 성 모순은, 성별 모순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인 사회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정치적 목표는 성매매 근절이라기보다는, 성판매여성의 힘의 증진(empowerment)이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은 성매매의 젠더, 즉, 왜 언제나 파는 사람은 여성이고 사는 사람은 남성인지를 설명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젠더 억압을 은페시킨다고 비판받고 있다(정희진, 2003).

성노동자운동은 성매매에 대한 도덕주의적인 관점을 거부하고 성매매를 일종의 노동으로 인정함으로써 성매매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성노동의 선택에 대해 존중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성매매 비 범죄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폐지를 주장하는 관점이 여성의 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비판한다. 아내와 매춘부로 여 성을 차등화하는 섹슈얼리티의 위계화에 따라 성매매여성을 윤리적으로 타 락한 존재로 위치지우고 있다는 것이다(고정갑희, 2005:21).

물론 이러한 성노동자에 대한 주장 역시 성매매업자 중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하는 인신매매하는 자를 처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수면 위로 등장한 성노동자에 대한 주장은 성매매 여성, 당사자에 의한 권리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¹⁰⁾ 성매매피해자가

¹⁰⁾ 이러한 성노동자 주장을 전개하는 주체들에는 성매매여성뿐 아니라 업주 등 성매매

아닌 성노동을 계약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성매매여성을 등장시킨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서는 성매매여성을 피해자화하는 관점이 성매매여성의 당사자성, 주체성을 부인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비판한다(고정갑희, 2005:17). 또한 성노동을 주장하는 것은 성매매 노동의 현장에서 성매매여성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와 성매매업자(업주)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할 때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고정갑희, 2005: 27-9).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기된 성노동자 주장의 밑에 깔린 가장 현실적인 쟁점은 성매매 이후 여성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즉 생존권의 문제이다. 실제 성매매여성에 대한 원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노동시장으로 여성들이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탈성매매 지원은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탈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2) 평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성노동자 주장은 성의 이중기준에 기초한 성매매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판하지만, 그 비판이 성매매 중간매개자나 구매자에 대한 영역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현재 성노동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업주와 함께 국가와 여성단체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성판매자들의 주장은 국가에 대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성매매업주를 향하는 주장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권리를 찾는

알선업자와 학자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매매여성, 당사자에 의한 권리 운동으로서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태껏 등장했 던 다른 주장들에 비해 성매매여성의 당사자성이 가시적으로 보여졌다는 점에 있다. 물론 성매매의 피해나 인권침해를 강조하는 주장 역시 성매매여성들의 직접적인 경 험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고 탈성매매한 여성들이 그 운동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지 만, 이러한 운동과의 차이는 현재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시적으로 논쟁의 장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것이 아니라 사용자(업주)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 획득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등 서구의 예를 볼 때,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에서 성노동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성노동의 라이센스를 가진 자영업자일 수밖에 없다. 만약 성노동자와 성매매업자와의 관계를 고용노동계약관계로 본다면, 고용자인 성매매업자에게 계약에 의해 성노동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핵심이 '성 (sexuality)과 관련해서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성적 행위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있는 업주에게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양도할 수 없는 성노동자는 자영업자일 수밖에 없다. 즉, 성노동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주장은 성매매업자에 의한 성매매노동에 대한 개입에 대항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려와 성의 이중기준이 성별화되어 있는 현실을 함께 논하지 않는다면, 성노동에 대한 주장이 남성의 성행동, 성매매 업자의 착취에 대한 관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성폭력이냐 성노동이냐의 논쟁보다는, 성매매를 가부장제적인 성과 사랑의 연속선에서 파악하고 남성의 성문화를 비판적으 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소결

형사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동법 제1조).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갖는 성매매피해 자보호법의 목적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러한 성매매방지법의 목적은,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를 성풍속과 성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성

이라는 인격을 매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과 착취의 문제인 동시에 성매 매여성의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성매매방 지법의 보호법익은 일차적으로 성매매여성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존엄성이 자 인권이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성매매여성들의 경험 연구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성 매매피해여성들이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첫째, 성매매피해 여성들은 성매매의 공간에서 콘돔사용 여부 등 모든 선택권을 갖는 남성 손 님으로부터 통제되는데, '화대지불'은 이 모든 폭력을 용인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 이들은 중간매개자 등에 의해 화대에 대한 직접적인 착취뿐 아니 라 과도한 벌칙부과, 빚과 이자 등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이 때 빚과 이자는 이 여성들에 대한 인신구속과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 다. 셋째,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성매매 공간의 익명성은 이들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단, 고립시킴으로써 여성들을 성매매 공간에 머 무르게 하는 기제가 된다. 성매매가 제도적으로 옹호될 수 없는 현실적인 근 거는, 성매매 자체가 양도할 수 없는 신체의 권리를 돈을 매개로 타인이 임의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는 궁극적으로 여성을 비인간화하 는 제도인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에 있다.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피해를 인식하고 이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침해에 대한 중단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를 적극 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매매여성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도덕적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덕적 보수주의 관점에서 볼 때 불일치하는 입법방향들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성매매방지법을, 이러한 성 매매여성의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구성할 때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 매매방지법이 가진 전면적 금지주의 태도를 윤리나 성도덕에 뿌리를 둔 것으 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볼 때, 성 매매방지법 안에 있는 다양한 전략들—성매매피해자 개념, 성매매한 자에 대 한 보호처분─이 성매매여성의 인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과 문제점

1.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의	주요 내용	39
----	---------	--------	-------	-------	----

- 2. 성매매방지법 집행에 관한 공식통계
- 3.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 56

52

4. 소결 76

1.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의 주요 내용

가. 성매매피해자 개념에 관한 규정

1) 성매매피해자 개념정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의 정의와 종류에 관하여 복잡한 규정을 두 고 있는 바,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규정(처벌법 제2조 제1항 4호), '성매매목 적의 인신매매'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처벌법 제2조 제1항 3호), 성매매목 적의 인신매매정의와 관련하여 '지배·관리하에 둔다'는 것의 의미에 관한 규정(처벌법 제2조 제2항)이 그것이다.

이러한 성매매피해자 규정은 종전의 형사처벌 면제에 해당되는 '강요된 행 위'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다.

가)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첫째,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둘째,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셋째, 청소년, 심신 미약, 중대한 장애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넷째, 성매매 목 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 호). 여기서의 장애자와 관련해서는 2004.9.23에 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11)

여기서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려면, 위계,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경우, 청

¹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에서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기준'으로 7가지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 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여기에 해당된 다.

소년, 장애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경우, 성매매목적의 인신 매매를 하는 경우 등 업주, 취업알선자 등 중간매개자에 의한 폭행, 협박, 억압, 강요에 의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매매피해자로 될 수 없다.

동 법에서는 성구매자에 의한 구타 등 성구매자에 의한 피해나 성판매자끼리의 피해는 본 법 규율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간매개자에 의한 강요구조를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중간매개자가 없거나 그 강요구조가 없는 성매매의 경우는 피해자로 될 수 없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의 무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기망 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성매매사안의 경우 업주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성매매여성이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나, 업주가 당해 여성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 당초 근로조건과는 달리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성매매여성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12)

또한 '위력'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 힘을 말하며,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위력이란 힘의 사용을 의미하는 바, 여기에는 물리적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힘의 개념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폭행,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위계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실무상업주나 사채업자, 직업소개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처벌법 제18조 제1항).

나)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첫째,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¹²⁾ 이하의 성매매피해자 개념해석과 관련해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막달레 나의 집(2004), 「성매매관련 법률안내서」, pp.55-61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제245조13)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 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둘째,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14)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 · 감독하는 자에게 선불 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 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셋째, 위와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 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넷째,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 이 동 ·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 지배·관리하에 둔다는 것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에서 '지배·관리하에 둔다'는 것의 의미에 관해서 는, 첫째,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 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둘째,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 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 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처벌법 법 제2조 제2항).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대상자가 되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는 바. 현실적으로 선불금을 매개로 하여 성매매를 강 요당하는 경우가 가장 자주 일어난다. 즉,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 여 선불금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유로 성매매업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시당 하고 여러 직업소개소나 업소로 넘겨져 온 경우 그 여성은 피해자로 인정된 다. 여러 직업소개소나 업소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비록 그 여성이 겉으로는

¹³⁾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¹⁴⁾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 이의를 달지 않고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성이 업소에서 나가려고 시도할 때, 업주가 명시적, 묵시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거나 여권이나주민등록증 등을 업주가 가지고 있었다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 성매매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선불금 이외에도 터무니없이 비싼 경비지불을 의무화하는 경우, 화 대체불 현상 등을 통한 경제적 지배문제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처벌법 제18조 제3항). 실제로 전 업주와 현 업주간에 선불금 정산을 목적으로 실력적 지배하에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우 본죄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목적의 인수인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의 소개소 업주의 행위도 성매매목 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관한 판단

① 성매매피해자 규정의 의의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피해자에 관하여 크게는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있고, 또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4개의 요건과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에 관한 4개의 요건을 정하는 등상당히 복잡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는 종래의 폭행, 협박에 의한 성매매강요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의 형식을 보다 확대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복잡한 규정형식을 벗어나 보다 세분화하고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피해자에는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성매매강요행위, 청소년, 장애인이 알선·유인된 경우,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목적의 인 신매매가 해당되는 바, 성매매현장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성매매강요의 경 우를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조항은 선불금을 이유로 업소간의 이동에 의한 지배, 관리가 이루어지는 성매매현장의 선불금 구조상황을 법에서 새로이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성매매피해자 개념은 성매매여성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 는 성매매강요상황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구체적 사 례들이 현행법에 포섭되는지 판단해야 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② 성매매피해자 입증책임에 관한 문제

또한 성매매피해자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은 성매매피해 자의 입증에 관한 문제이다.

당초 성매매처벌법 초안에서는 '성매매된 자의 추정'이라는 규정을 두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중 성매매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파는 행위 를 한 자가 자신이 성매매된 자임을 주장할 경우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성매매된 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수사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15) 이 추정규정은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성매매피해를 입증이 아닌 주장하면 되 도록 함으로써 많은 경우 수사과정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에 필수적인 규정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실무상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처벌을 면하 기 위하여 성매매된 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성매매된 자가 아니라 는 사실을 입증하여아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16)

현행법에는 이러한 성매매피해자의 추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¹⁵⁾ 성매매처벌법 초안 제9조(성매매된 자의 추정) ① 이 장에서 정한 범죄의 수사 및 재 판에 있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 조사받는 자가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성매매 된 자임을 주장할 경우 동인은 성매매된 자로 법률상 추정하며, 그가 성을 파는 행위 를 한 자임은 수사기관이 입증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라 는 이유로 입건하고자 할 경우 동인이 제2조 제3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¹⁶⁾ 노정연(2003),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방지대책 관련법안 비교에 관한 토론", 「성 매매방지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심포지움자료, 2003.6.3, 부산광역시, pp.54-55.

일반원칙에 따라 성매매피해자는 자신이 강요된 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자가 아니라는 것, 즉 피의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일반원칙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의 부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③ 성매매피해자의 다른 법적 문제와의 관계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주나 소개업자의 성매매강요행위를 고소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성매매피해자의 상대방인 업주는 성매매강요행위의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매매피해자는 업주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등을 고소할 것을 유도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매매피해자의 입증과 업주의 성매매강요행 위에 대한 처벌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성매매피해자가 반 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업주를 단순히 성매매알선죄로 처벌할 경우 실제로는 법률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성매매피해자라 하더라도 반사적으로 성매매로 인해 처벌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대해 단순히 성매매알선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강요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폭행, 협박, 감금 등의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7)

또한 선불금사기사건과 관련해서는 '선불금'이 일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2 차 성매매업을 알선, 강요하는 매개로 선불금이 사용된다는 점, 여성이 일하 는 동안 선불금을 변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불합리한 성산업의 구조가 존재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선불금에 의한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가 인정된다면,

¹⁷⁾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04), p.39.

성매매여성은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로 인정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 주로부터의 선불금사기사건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업주를 대상으로 성매매강요죄로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표 Ⅲ-1> 성매매피해자 요건 및 성매매강요행위의 구성요건

성매매피해자 요건	성매매강요행위의 구성요건
위계, 위력 등의 방법 으로 성매매를 강요당 한 자	 폭행,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10년이하 징역) 위계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10년이하 징역) 친족·고용 등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10년이하 징역)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한 자(1년 이상 유기징역)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3년이상 유기징역)
업무·고용 그 밖의 관 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 매를 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5년이상 유기징역)
청소년, 심신미약, 중 대한 장애자로서 성매 매를 하도록 알선·유 인된 자	• 위계, 위력으로 청소년, 심신미약, 중대한 장애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1년 이상 유기징역)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 매를 당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3년 이상 유기징역)

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규정

1) 성매매피해자 형사처벌 대상 제외 및 신고자 등의 보호(제6조)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제6조). 법에서는 특별히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될 만한 사안의 경우 몇가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성매매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이러한 조치는 그 여성의 인 권을 또 다시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매매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즉, 신고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 신고자나성매매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친족 등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판사, 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에 대하여는 검사에게 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18)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성매매피해자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부록 I참조).

2) 시설장 등의 신고의무(제7조)

이 조항에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장,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누구 든지 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출판물 게재, 방송매체 통한 방송

¹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04), pp.59-60.

은 금지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8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신고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물어 보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함께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성매매피해여성이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상담소나 지원시설의 관계자가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진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사받는 사람이 청소년이거나, 심신미약자, 또는 중대한장애자에 대하여는 본인이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하여야 한다.

신청은 구두로도 할 수 있으나,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이좋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로 이전에 시달된 지침, 수사매뉴얼, 시민단체의 요구사항 중 피해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부록Ⅱ 참조).

4) 심리의 비공개 근거 마련(제9조)

법원은 신고자나 성매매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와 성매매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은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불법원인채권 무효규정(제10조)

① 성매매방지법에 새로이 들어 온 내용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같다고 하여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불법원인채권 무효조항은 이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새 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불법원인채권 관련사건의 조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강요나 성매매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불법원인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불법원인 발생 채권임을 알면서 양수·인수한 경우포함)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시 선불금이 성매매 유인·강요,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사에 참작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② 불법원인채권무효와 선불금채권과의 관계

이 조항과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여성과 관련된 법률문제로는 선불금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선불금은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유흥업소에

서 일정기간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업주가 종업원에게 미리 지급하는 차용금 으로서, 통상적으로 선불금이 급여의 선지급금으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업주 의 여종업원에 대한 인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여종업원에게 불법 적인 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성매매피해여성이 탈성매매하고 자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 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많은 경우 업주가 여성에게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 하거나(형사소송), 선불금을 갚으라는 대여금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도 한다.

성매매피해여성의 입장에서는 선불금채권은 불법원인채권(성매매처벌법 제10조)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정신적, 육체적 피 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전에는 성매매피해여성을 사기죄로 처벌하면서 선불금이 어떤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고려하지 않고,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 지급능력과 지급의사 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19) 사기죄의 처벌률이 높았으나. 최근 선불 금을 갚지 않고 업소를 떠난 경우에도 실제로 수개월간 일을 하였다면 사기 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수사기관의 무혐 의처분이 내려지고 있다.20)

③ 최근의 선불금채권 및 관련 소송제기상황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업주와 성매매여성간의 채권, 채무문제가 양자가 아 닌 카드회사나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대출의 형태로 선불금계약이 교묘하게 변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제정된 법이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가의 문제

¹⁹⁾ 사기죄 처벌논리를 "사실은 ...별 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도 ㅇㅇㅇ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여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ㅇㅇㅇ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20) 2004}년 8월 16일 다시함께센터가 지원하는 피해여성에 대한 선불금사기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 확정됨.

도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무효인 선불금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법이 변화된 상황을 규율하지 못한다면 금융관련 다른 법을 적극 적용하고, 장차 이러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작업도 뒤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새로이 제정된 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성매매피해여성의 업주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판결(2004.12.31), 윤락강요업주 재산 가압류 결정(여성신문, 2004. 3.5)과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으로 숨진 피해여성들의 유족들이 국가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대법원(2004.9.23) 등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수 있다. 최근에는 성매매피해자지원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채무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침해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사와 판결이 계속적으로 내려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제10조)

외국인여성이 성매매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의한 보호의 집행²¹⁾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 때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 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 검사는 이 성매매범죄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²¹⁾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1조는 불법체류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출입국관리소장 등은 당해 외국인을 최대 20일 범위내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의 필요성 그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 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 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외국인여성은 지워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다가 출국하는 경우 그 외국 인에 대하여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만큼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를 납부하지 못 하면 검찰에 고발하여 환형조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불법체류기간 이 늘어나게 되어 사실상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출국시킨다고 한 다.

또한 성매매피해 외국인여성을 수사기관이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때에 는 당해 외국인여성에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고, 이 고지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배상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역시 강제퇴거 되지 않는 다.22)

한편, 2002.12.5 출입국관리법 개정시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법 제22조의 2 제1호).

²²⁾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04), pp.65-66.

2. 성매매방지법 집행에 관한 공식통계

가. 성매매신고, 검거관련 통계

다음은 2004.9.23-2005.9.15까지 경찰청 117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의 운영실적을 보여준다(표 Ⅲ-2). 이것은 성매매여성들이나 시민 등의 직접 신고에 의한 실적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다.

신고내용은 성매매강요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고(42.0%), 기타(17.7%), 선불금(16.5%), 상담(12.8%), 업소단속(9.1%), 납치감금(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수사(42.9%)와 상담(41.9%)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 NGO연계(14.0%), 기타(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년의 센터 운영결과 성매매피해여성 386명을 구조하고, 업주 1,050명을 검거하였다고 한다.

<- Ⅲ-2> 117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실적 결과(2004.9.23-2005.9.15) (단위: 건)

		{	<u> </u>	조치							
계	계 납치 성매매 감금 강요 선불금 업소 단속 상담 기					기타	계	수사	상담	NGO 연계	기타
2,289 (100.0)	45 (2.0)	961 (42.0)	378 (16.5)	208 (9.1)	292 (12.8)	405 (17.7)	2,530 (100.0)	1,086 (42.9)	1,060 (41.9)	353 (14.0)	31 (1.2)

* 자료: 경찰청(2005),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1년간 단속실적 분석 및 대책", 2005.9.22, p.17-2.

경찰청의 법 시행 1년간(2004.9.23-2005.9.15) 성매매단속실적을 보면, 다음 과 같다(표 Ⅲ-3).

2004.9.23-2005.9.15에 검거된 성매매사범은 16,260명이고, 이 중 업주 및 성매수남성은 11,474명(70.6%)이고, 성판매여성은 4,786명(29.4%)이다. 이것 은 2003.9.23-2004.9.15 대비 남성은 34.2% 증가, 여성(대부분 성매매여성이 라고 함)은 12.2% 감소한 수치이다. 그런데 남성의 증가는 성매매업주나 성 매수남성의 검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지만, 성매매여성의 감소는 절대수가 감소했다기 보다는 성판매여성 중 일부가 불입건된 성매매피해자로 나누어 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매매피해여성은 987명이 불입건되고 따라서 처벌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성매매사범 검거실적

(단위: 명, %)

구분		성매매피해여성		
1 E	계 남 여		여	(불입건)
'04.9.23~'05.9.15	16,260	11,474(70.6%)	4,786(29.4%)	987
'03.9.23~'04.9.15	13,998	8,550(61%)	5,448(39%)	•
증감(%)	16.2	34.2	-12.2	

* 자료: 경찰청(2005),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1년간 단속실적 분석 및 대책」, 2005.9.22, p.17-1.

그런데 성매매여성 중 성매매피해여성의 비율을 보면, 5,773명 중 987명인 것으로 그 비율은 17.1%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단속된 성매매여성 중 성매 매피해자로 판명난 경우이므로 그 비율이 크게 높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경 찰청의 '100일 집중단속' 중간결과에서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표 Ⅲ-4). 2005.7.4-9.3사이에 이루어진 '100일 집중단속'의 중간결과에 의하면, 그 때 검거된 피의자 중 성매매여성은 706명이고 그 중 구속은 없고, 불구속 658명 (93.2%), 불입건 48명(6.8%)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매매여성 중 불입건된 48명은 성매매피해자로 입증된 경우인데, 이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여성 중 성매매피해자 로 인정된 것이 6.8%라는 것인데, 위에 지적한 17.1%라는 비율과 함께 성매 매피해자 비율이 너무 낮다. 이 경우는 성매매여성들이 자발을 주장하거나 업주의 인권유린행위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본인이 직접 여관등지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등이라고 한다.²³⁾

물론 적극적으로 자발을 주장하는 경우 현행법상 성매매범죄자로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여성이 업주의 성매매강요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내심과 다르게 자발을 주장하는 경우 등 성매매피해자가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입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표 Ⅲ-4> 100일 집중단속결과 중 피의자 분석

(단위: 명)

	조치		업주 등 관련자			성매수남			성매매여성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불입건
3,422	155	3,267	674	86	588	2,090	69	2,021	706	•	658	48
대상별구속율(%)			100	12.8	87.2	100	3.3	96.7	100	0	93.2	6.8

^{*} 자료: 경찰청,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1년간 단속실적 분석 및 대책」, 2005.9.22, p.17-6.

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검찰조치 현황

다음은 검찰에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치결과이다(표 Ⅲ-5).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와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기간의 조치결과를 비교해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기소율은 46.7%에서 61.5%로 높아지고, 기소유예율은 35.3%에서 20.0%로 줄었으며 구속율도 5.5%에서 6.3%로 높아졌음을보여 준다. 이전 기간에 비해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에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의자가 엿보인다.

²³⁾ 이금형(2004),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실시결과 및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상담결과 분석",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4년 10월 25일, p.37.

<표 Ⅲ-5>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조치결과

(단위: 명)

	죄명	계		기소			불기소	성매매		
구분	H 9.	(구속)	계	구공 판	구약 식	의 엽 젒	기소 유예	기타	보호사 건송치	기타
성매매알선등 처벌에관한	인원	6,143 (389)	3,776	574	3,202	612	1,227	62	173	293
법률위반 (2004.10~ 2005.7)	비율 (%)	100 (6.3)	61.5	9.3	51.2	10.0	20.0	1.0	2.8	4.8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	인원	9,191 (501)	4,291	756	3,535	505	3,243	510	0	642
(2004.1 ~ 2004.9)	비율 (%)	100 (5.5)	46.7	8.2	38.5	5.5	35.3	5.5	0.0	7.0

* 자료: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공동포 럼-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그 성과와 과제」, 2005.9.22 p. 31.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업주, 성매수남성, 성판매여성이 각각 어떤 조치를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성매매보호사건 송치가 미약하게나마 있다는 것은 성구매남성이나 성판매여성에 대한 보호처분이 시행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해 준다.

또한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초범인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인 '존스쿨 프로그램'을 2005.7.부터 실시하고 있다.²⁴⁾ 이에 비하여 초범인 성판매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다. 형평성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탈성매매지원을 고려할 때, 초범인 성판매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²⁴⁾ 초범인 성구매자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으로, 성구매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3.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

가. 조사개요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관계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일시는 2005년 7월 - 10월사이에 이루어 졌고, 면접대상은 경찰 4명, 검사 4명, NGO관계자 4명, 행정부 담당공무원 1명의 총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대상은 모두 성매매방지법 집행이나 성매매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다. 그리고 면접대상이 서울, 경기지역의 경찰청, 검찰청,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 종사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이 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산, 울산지역의 기관종사자들도 면접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면접대상인 경찰, 검사, NGO관계자는 현재 성매매사건을 다루고 있거나 최근에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만났다. 그들은 성매매방지 법과 성매매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면접내용은 1. 성매매피해자 신고현황 및 신고과정에서의 문제점, 2. 성매매 단속현황 및 단속과정에서의 문제점, 3. 성매매피해자 조사과정 및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4. 성매매피해자 판단현황 및 문제점, 5. 성매매피해자 처리현황 및 문제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접과정은 연구자의 비구조화된 질문과대상자의 답변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자 1인당 면접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이하에서는 조사대상 관계자들에 대한 면접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될 것인 바, 이들의 의견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법실무와 관계되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 본인의 관점에서 느끼는 점이 다르므로 보고의 정도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경찰, 검사 등 수사 담당자와 NGO관계자가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수가 지적하는 의견을 중요하다고 보고,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하였지만, 소수나 예외적인 의견의 경우에도 연구자가 보기에 중 요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여기서의 조사 가 양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나온 의견인가도 중요하지만,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소수가 지적했다고 해서 문제 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경험과 관심에 따른 의견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면접대상자들의 시각차를 최대한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였다.

나. 성매매피해자 신고현황 및 신고과정에서의 문제점

1) 신고현황

성매매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은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117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성매매지원 현장상담센터의 지원을 받아 경찰서에 신고,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117긴급지원센터에 신고하는 내용은 성매매신고, 법률문의, 선불금 상담 등이고, 이에 관한 조치로는 수사, 상담, NGO 연계 등이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성매매피해여성 긴급구조 및 인권보호를 위해 2004.6.3부터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경찰청 생활안 전국 여성청소년과 아래에 있으며, 전국의 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연계되어 있다. 또한 이 센터는 피해자와 경찰서, NGO, 경 찰병원과 연계되어 있어, 상담 후 법률, 심리, 의료지원 등 연결망을 구축하 고 있다. 신고내용은 성매매신고, 법률문의, 업소단속, 선불금 상담 등이고, 상담, 업주검거, 수사착수, NGO연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여경기동수사 대 B주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선불금을 독촉당하는 여성들의 신고가 많아졌다고 한다. 성매매여성이 업주의 폭행, 협박 등 성매매강요행위를 신고하고 업주의 처벌을 요청하면, 경찰은 업소단속이나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성매매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주 목적은 업주로부터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선불금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 생계문제 해결, 업소탈출에 관해 문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협박, 선불금 구조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업주의 처벌을 가장 원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돈 문제나 생계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상황인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①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상담전화 중에는 안마시술소나 룸 같은 데서 일하다가 잠시 쉬러 나왔는데 다시 업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문의전화가 많다. 안마시술소의 경우 25일을 일을 하면 이틀을 쉬게 해 주고 이 때 휴가비처럼 15만원~20만원을 주고 다시 업소로 돌아갔을 때 25일 일을 한 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금, 규제가 심하다. 이렇게 이틀 휴가를 나와서 다시 들어가기는 싫은데 25일 동안 고생해서 일한 돈을 업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것은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지만 그 돈을 대신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런데 많은 여성이 일을 하고 못 받은 돈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가 참 많다."(세상당소 소장)

"그것은 각 개인의 케이스에 따라 꼭 그 사람을 형사처벌한다는 것보다 내 것을 받아야 한다는 손해배상 측면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S상담소 소장*)

② 선불금무효가 희망

"신고보상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신고여성의 대부분은 선불금의 무효를 원하는 것이고 업주의 처벌은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여기대에서는 여성단체와 연관하여 형사사건을 무조건 민사사건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이 에 선불금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도 있고, 업주가 요구하는 선불금의 최대 10%만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다. 예전에는 업주에게 맞거나 질병, 생리시에 도 불구하고 일을 시키는 경우, 올밤(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의 강요 등이 신 고의 주된 이유였으나 근래에는 이런 강요는 거의 사라지고 업주에게 착취 되는 경우도 많이 줄었다."(여경기동수사대 B주임)

"첩보는 성매매여성이 신고하는 것인데 특별법 이후에는 선불금을 독촉 당 하는 여성들의 신고가 많다."(여경기동수사대 B주임)

③ 생계문제가 가장 큰 문제

"지금 완월동에 있는 언니들의 경우 선불금이나 업주처벌 보다는 생계의 문 제가 가장 크다. 주로 개인채무나 신용회복의 문제, 생계문제를 의논하는데 보통 생계문제가 가장 크다. 생계문제라 함은 여기가 많이 단속이 됨으로써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고 생계문제라는 것이 여기 있는 분들을 보면 자신 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보통 엄마, 아버지, 오빠, 심지어 오빠의 아 이까지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 거기다 자신의 아이까지 있다 보니까 이 여성 하나에 다들 매달려서 사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꾸 나오 라고 하는데 나와서 쉼터에 있을 경우 이사람의 전일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보통 4~50대라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어 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야 한다."(S상담소 소장)

④ 업소탈출이 목적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주로 신고를 하는데 주로 목적은 그 업소에서 벗어나 고 싶어한다. 업주를 처벌하고 싶다거나 선불금의 문제, 이런 것을 다 떠나 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거다.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분 들이 무슨 계획을 다 세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탈성매매를 하고 싶어 서, 거기가 너무 싫으니까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한다."(U상담소 소장)

2) 신고과정에서의 문제점

성매매피해자들이 업주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은 경찰청 117지원센터에서 신고자체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다. 업주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성매매여성의 입장에서는 업주의 보복의 두 려움이 크게 작용하여 섣불리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단속이나 수사의 단서로 활용해야 할 것 이다. 물론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의 업무가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심리적으로 취약한 성매매여성의 상황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업소를 신고하고 싶다는 경우가 있다. 상담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117에 신고하도록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쪽에서 그 업주를 무엇으로 신고하겠느냐고 신고 자체를 안 받아준다고 한다. 그런 경우가 두 차례 있었다. 그 여성이 콘돔을 보관하는 위치도 알려줄 수 있고, 자신은 그 업소가 버젓이 계속 영업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117에서는 증거를 요구하고 이런 식의 전화 한 통으로는 수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M 상담소 소장)

다. 성매매 단속현황 및 단속과정에서의 문제점

1) 단속현황

① 단속현황

성매매단속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 성매매여성들의 신고에 의한 특정 업소 단속, 인터넷상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한 단속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업소단속으로 업주, 성매매여성이 경찰에 오면, 여성은 별도상담하면서 성매매강요사실 있는지를 조사한다." $(117\ \ \ \ \ \ \ \ \ \ \)$

"여청계에서는 첩보나 신고들어오면 형사계, 수사계 지원받아 나간다. 인터 넷 성매매, 전화방건이 있었다. 전화방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나와서 여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데려와서 조사했다. (애인이라고 하면 어쩌나요?) 전화방에서 만나서 나간 사람들은 어색하고 말이 없다. 분리심문하면 나타난다. 처음에는 돈 안 받았다고 하다가도 분리해서 조사하면 받았다고 얘기한다."(여성청소년계 A형사)

"인터넷 성매매의 경우는 경찰들이 채팅을 통해 성매매여성과 접촉하고 그여성이 연결되면 전화번호, 수첩의 기록 등을 통해 성구매남성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한다."(J검서)

② 단속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그런데 경찰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단속을 통해서는 성매매의 적발이 어렵 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유인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 서는 업소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으로는 어렵고, 내부신고자에 의한 첩보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업주들이 장부나 계약서 등 을 없애기 때문에 더욱 업주들의 범죄행위를 분명하게 알고 나갈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여기에 내부고발자, 즉, 성매매피해여성의 신고나 고소가 필요한데, 위에서 도 보았듯이 성매매여성들이 신고하는 목적이 선불금 무효나 생계문제 등에 있음을 볼 때 성매매여성들의 신고나 고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의문이 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업주들의 범죄행위 증거를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 성 매매피해여성들에게 성매매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업주의 처벌 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매매여성들이 보복의 두려움이나 업주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유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

"진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내부고발자가 있어야 한다."(117*지원* 센터 K주임)

"전화방이 알선하는 경우 장부기록하고, 모텔태워다 주고 하는데, 빠져나갈 방법 다 마련해 놓고 한다."(여경형사기동대 K경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업주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장부나 채권 등을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에 단속을 통해서는 성매매의 입증이 어렵다. 그로 인해 단 속은 강화되었으나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보통은 첩보를 받아서 업주 를 체포하는 인지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주로 시민단체를 통한 첩보가 많다."(여경기동수사대 B주임)

"요즈음은 선불금이나 여종업원 관리가 장부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아 니라 USB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책상 위의 USB를 뻔히 보고서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여경 기동수사대 B주임)

또한 성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전통형성매매가 아닌 산업형 성매매의 경우는 단속이나 증거찾기가 어렵다는 점, 유사성교행위 업소에 대한 규제의 미비로 인하여, 그리고 안마시술소의 경우는 협박성 시위로 인하여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스포츠마사지, 퇴폐이발소, 남성휴게방은 세금도 내지 않고 허가나 등록혹은 신고도 요구되지 않아 국가기관의 관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이러한 유사성교행위는 사실상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제재불가능때문에 단속이 가장 어렵다. 이들 업소는 처벌이 미미함을 알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처분을 더 두려워한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당장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여경기동수사대 B주임)

"얼마전 안마시술소의 업주들이 그쪽을 단속하는 경우에는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경우도 있었다. 안마시술소는 거의 단속이 불가능하다. 등록은 시각장애인을 안마사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는 여종업원을 고용한다. 이런 경우 단속을 나가면 시각장애인이 앉아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S경찰서 K경위*)

"또 얼마 전에는 유흥주점 업자들이 모여 시위를 한 적도 있다. 이들은 유흥 주점만 단속하지 말고 노래방을 단속 하라고 주장한다."(*여경기동수사대 B 주임*)

"유흥업소나 마사지 같은 곳은 경찰이 안서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애인끼리 나가는데 뭐라 하겠냐고...제가 보기에도 산업형쪽은 단속하기에 경찰들이 힘든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S상담소 소장*)

③ 성매매증명의 어려움

수사기관 종사자들은 성매매사건의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성매매는 속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내기가 어렵 고, 그래서 마약범죄의 경우처럼 함정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대리업주를 내세워 영업을 하는 경우 실제 주인인 업주를 찾아 내는 일 이 상당히 어렵고, 첩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본인은 강력범 문제를 주로 다루었었는데... 성매매사건은 수사하기 어렵고,

증거확보나 목격자 확보가 어렵다. 마약범죄에서처럼 함정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 (*J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또 다른 경우 단속시 콘돔을 입속에 넣어 삼켜버리거나 항문에 넣어 숨기 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업주나 여종업 원의 진술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여경기동수사대 B주임)

"성매매수사기록은 진술조서 두꺼운 편이다. 참고인도 많고, 성매수남의 경 우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전화번호만 있는 정도이다. 통화기록조 회하고, 이송요청도 하고 등등(업주, 성매수남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뚜렷한 증거없고 정황증거에 따라야 하는 등 성매매는 힘든 사건이라 할 수 있다."(117지원센터 K주임)

"성매매한 것이 분명한데 증명이 안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상황으로는 첩보없이는 일일이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검사)

"성매매사건에서는 대외적인 업주(일명 바지사장)와 실제이익귀속주체간에 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물론 처벌까지 바지사장이 받기 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법 시행 이후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그 이전부 터 존재해 왔던 것이다. 이런 경우 대체로 마담이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마담이 입건된 경우가 많다." (K검사)

④ 단속의 효과

그러면서도 경찰이나 검사, 성매매지원시설 관계자들 모두 경찰의 지속적 인 단속이 성구매자들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접근을 쉽지 않게 하고, 그에 따 라 업주와 성매매여성들에게도 성매매하는 것이 별 이득이 없다는 생각을 갖 도록 하여 성매매범죄의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 있다.

"경찰이 하는 부분은 예방이 중요한 것 같다. 파출소가 많은데, 관내 파악 하고 있고,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다. 신고에 의한 단속은 어렵다. 예방이 우선이고, 범죄발생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이 최고인데, 그 부분이 아쉽다. 검사는 지휘하고, 경찰관은 범죄예방이 중요하다. 모텔, 단란주점은 경찰이 순찰만 해도 줄어들 거다."(*L검사*)

"단속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완월동의 경우 저희들이 하도 많이 건

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찰이 항시 상주를 한다. 항상 경찰차가 있는데 물론 허수아비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이는 전시효과는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차가 있으니 못들어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완월동의경우 경찰들이 항시 서있고 한두시간 마다 순찰을 돈다. 또 다른 팀들이 나와서 돌고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성구매자들이 오지 않는...그래서 이제는 성매매가 돈이 안된다는 생각을 업주들과 언니들에게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S상담소 소장)

"구체적 행위 하나하나를 잡아내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단속도 사례로 해서 파급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법 시행 2개월에는 정사복경찰이 업소주위를 지켰으나 이제는 어렵다. 이제는 성구매자가 접근 못하도록 하고, 성매매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화해야 한다. 솔직히 경찰이 서 있으면 들어가기 어렵다. 시위성 단속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계속 단속하는구나"하고 인식하게 된다."(여성가족부 과장)

2) 단속과정에서의 문제점

단속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시행되던 때도 지적되었던 성매매여성을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수사기관과 업주와의 유착관계부분이 아직도 지적되고 있다.

윤방법이 시행되던 시기에는 성매매여성의 행위만을 처벌되어야 할 행위로 생각하고, 성구매자는 법적으로 범죄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도 그 때의 관념이 남아 성구매자에 대해 허용적이고 배려를 하려는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업주와의 유착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소 관계자들은 유착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반면에, 경찰입장에서는 업주와의 유착가능성이 없거나 줄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성매매문제를 다루더라도 맡은 역할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한 예라 할 것이다.

① 성매매여성위주의 단속

"성매매방지법이 윤락행위등방지법과의 차이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법에서 이제는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한쪽에 만 낙인이나 처벌을 가하는 구도를 깬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봤었는데... 여전 히 현장에서의 단속은 여성위주로 하고 있었다."(M상담소 소장)

"업소언니들이 하는 말이 단속당했을 때 경찰이 손님(성구매남성)들한테 '놀라지 마시고... 주민등록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곧 끝납니다'라고 하면 서 다 돌려 보냈다. 경찰은 그나마 이렇게 단속기간 한 달 동안만 업소에 있 던 성구매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그 이후에는 그런 형식적인 것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미아리뿐만 아니라 용산에서도 구매자에 대해서 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그렇다는 것이 안타깝다."(U상담소소장)

② 업주와의 유착문제

"지역에서는 성매매업주나 경찰이 지역유지에 속한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예전 이미지는 아닐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사회전체가 성매매를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이 후 윤방법 시절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되는 계기가 되었 고, 이것은 특별법 시행의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117지원센터 K주임)

"'관할 경찰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언제, 어디서 그랬나"를 물으면 거 의 '들은 얘기'라고 답한다. 특별법 시행이후는 경찰과 업주의 유착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S경찰서 K주임*)

"지역 경찰의 유착관계를 우려하여 상담소와 연결되는 경찰서가 있다."(M상담소 소장)

"어떻게 보면 조금 유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저희는 집결지라는 것은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들이 모여있는, 그 형태는 숙박업소든 유흥주점 이든 맛사지든 그것과 관계없이 모여있으면 집결지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집결지들은 집결지로 파악도 잘 안되고 있고 이러니까 스포트라이트도 잘 안받는 거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를 수사하거나 관할하고 있는 경찰들이나 검사들에 대한 시선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아직도 그런 유착비리는 배제 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든다."(*U상담소 소장*)

라. 성매매피해자 조사과정 및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 조사과정

수사기관에서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환경이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진술하는데 적절한지, 특히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심리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우선 경찰서의 조사환경이 성매매피해자들이 마음놓고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이 자세히 들어보면 피해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서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는 그 여성들이 말하고자 해도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너무 시끄럽고, 주변 경찰들도 그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고..."(M 상담소 소장)

성매매방지법이 새로이 도입한 성매매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조항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지, 이와 연관된 NGO에서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은 경찰은 검찰에 비해 동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사안에 따라서 피해자 조사시는 비교적 이용하기가 수월하나 사기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이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이용과 사기죄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불금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된 경우는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로 될 가능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자의 조사시와 같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원하면 언제든지 허용하고있다. 다만, 검찰조사과정에서는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성매매범죄에 관한 경찰의 의식은 많이 변화되었으나

검찰은 아직 더 많이 변해야 할 것 같다."(여경기동수사대 B주임)

"조사받기 전에 신뢰관계자와의 동석여부를 반드시 물어보고 본인이 원하 는 경우 반드시 동석시킨다. 적극적으로 동석을 권하지는 않으나 본인이 원 할 경우 동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석을 위해 조사를 연기해 야 할 경우에는 시간문제상 동석없이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하기도 한다." (J검사)

"서부지검이나 서울에서는 상담원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 앉아있게는 해 준다. ...상담원들도 조심하고 있다. 피해여성이 대답하기 전 에 상담원이 먼저 대답하지 말고 다만 상황이 잘못된 쪽으로 가거나 답변 을 잘 못 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용어를 잘못 이해했을 때만 개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절대로 상담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먼저 대답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말도 못 붙이게 한다. 여전히 그렇다. 의정부나 수원과 같이 서울 인근으로 내려갈수록 더 욱 심하다. 법은 바뀌었지만 일선 경찰들은 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있고, 법률안을 가지고 만든 책자를 가져가서 경찰에게 줘도 안 본다." $(M \, \&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lumn{6}{co$ 소장)

"동석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 그런데 검찰은 조금 바뀌어야 한다. 저희 들이 검찰청에 갈 때 법무부에서 하는 검찰조사태도에 관한 설문지를 가져 가서 보일 듯 말듯하면 검찰에서 그것을 보고 긴장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 용하곤 하는데 검사들은 동석 안시켜 주는 검사가 있다. 주로 보면 검사들 이 안하고 계장이란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아파트 가면 경비원이 큰소리친 다고 계장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동석 못하게 한다. 한달전쯤에 저 희 상담원이 갔는데 튕겼다. 그래서 바깥에서 계속 앉아 있다가 왔다. 문제 제기하면 그냥 나가라고한다. 나가서 휴게실에 있으라고 한다. 아직도 다되 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경찰은 다 된다. 경찰은 한번도 튕긴 경우가 없었 다."(S상담소 소장)

"이제 법의 내용은 거의 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안지켜지는 부분도 몇가지는 있다. 동석부분, 신뢰관계 동석같은 경우 검찰청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 여성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왜 불렀냐고. 누가 불렀냐고, 누가 전화했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 계장님들이 조사를 보통하 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님들은 차라리 동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한다. 하도 싸우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하는데 검찰청에서는 동석 하는 경우에 동석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여성들한테 두세차례 검찰청을 가야 하니까 "너희들만 와야해. 부르지마"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바쁘신데 왜 오세요. 잘 해드릴테니 오지 마세요"한다. 또 하나는 언니들이 신고 했을 때는 좀 나은데 사기혐의로 피고소당했을 때는 경찰들이 동석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U상담소 소장*)

또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뿐만 아니라 상담소 등 지원기관에서의 진정서 제출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성매매피해여성의 업소유입 배경, 강요구조 등 소상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진정서, 고소장 등 제출하는 경우, 특히 NGO를 거치면 많이 써 오는 편이다. 출생이나 가족사, 어떻게 다방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강요있었는지 등등" (117지원센터 B주임)

"그래서 선불금 외에 이 여성이 나올 수 없는 다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그 계장의 말로는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도록 조서를 꾸밀 수 있으나 검찰 선에서는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정서 쓰고이 여성의 복합적인 상황, 성매매의 구조적인 상황에 대해서 진정서를 꼭쓴다." (S상담소 소장)

한편, 아래의 사례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이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래서 진술서 쓰라고 할 때도 도움요청하는 것을 쓸 수도 있는데 언니들이 "이거 뭐라 쓰는 거야?" 하면 그 언니들이 "야, 선불금 없다고 쓰고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는지 솔직하게 써"라고 말한다. "그렇게 쓰면 되지, 뭐"라고 하는데 그게 받아 쓰라는 이야기이다. "2차를 원하는 남자들도 솔직히 있지. 그런데 안하잖아 너희들.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라고 하면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절절한 눈빛을 보내는 언니들도 있다. 울먹울먹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처음보는 저희들을 믿기에는 무서움도 컸을 것이다."(S상당소 소장)

2)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성매매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간의 의사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상황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거나 성매매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물론 이것은 NGO관계자들의 의견이므로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 으나 이러한 문제는 이전부터도 지적되었던 사실들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① 수사기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상황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성매매여성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우리가 미리 알고 조사에 응 하는 경우에는 진술서 작업을 미리 해서 경찰의 조서에 응한다. 성매매여성 이 업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 선불금이 발생한 경위, 즉 최초에 유흥업소에 서 일하게 된 시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경찰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최초 선불금 때문에 유흥업소에 들어왔고 그 돈이 유 흥업소 안에서 계속 증가한 금액이므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야한다고 하 지만,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경찰은 처음부터 돈 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 그 돈을 빌렸을 당시 갚 을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사만 확인하기를 원하고, 어떤 경우에는 빌 린 돈임을 인정하고 언젠가는 갚겠다고 말하면 조서를 편하게 써줄 수 있다 고까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 그 사기사건에서 사기에 대해서는 무 혐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민사로 대여금반환소송이 업주에게 들어 왔을 때는 형사기록이 모두 토대가 되어 그 때는 갚을 돈이라고 말하지 않 았냐는 식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꺼림칙하고 어려 운 측면이 있다."(*M상담소 소장*)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되는 경찰서도 있고 아직도 검찰청에서 돈은 어떻게 할거냐고. 선불금 안갚을 거냐고 물어보는 것이 며칠전의 사례에서도 있었 다. 그것이 무효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의도적이었다, 악의적이었다는 거다. 피해자가 몇 명이, 그것도 동시에 나온 피해자도 아니 고 그 업소에서 여러명이 지금 저희가 고소한 건만 해도, 고발한 건만 해도 지금 몇 명인데, 피해자만 해도 몇명인데 그러면 모든 피해자가 다 악의적 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이렇게 피해자가 많을 때는 그 업소에도 문제

70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가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무조건 다 악의적인 탕치기였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U상담소 ext{ } \Delta S)$

② 성매매피해자들이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사나 재판할 때도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언니들이 많다. 위압감, 억눌림 이런것 때문에 말하는 경찰이 조금만 톤이올라가도 기가 죽어서 생각이 안난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조사기법 같은 것이 조금 더 세밀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진술에 의존해서 가는 것이 있는데 이 여성들은 자기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경우가 많다. 우리가 집단상담 같은 것을 해보면 정말 말하라면 말을 하나도 안하고 앉아 있다.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조금밖에 안한다.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사실 말 못하고 표현 못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참 많다. 그러니까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같은 것이 필요해서 누가 옆에서 얘기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수사관이냐? 무슨 수사까지 다 개입하려고하느냐?"고 하지만 수사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경찰이 말할 때 말투가잘못되었으면 저희들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니가 말을 잘못할 때 저희더러 대변인이냐고 하지만 저희는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S상담소 소장)

③ 의사소통의 문제

"경찰 조사과정애서 서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다. 지체장애 여성에 대해 다른 여성들은 그 여성이 장애가 없다고 했는데, 그 여성들은 '신체장애'를 말하는 거였고, 경찰은 '지체장애'를 말하는 거였다. 그 여성들이 정신지체를 장애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M상담소 소장)

마. 성매매피해자 판단현황 및 문제점

1) 성매매피해자 판단현황

수사기관에서의 성매매피해자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면접결과 성매매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강요에 의한 성매매피해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성매매피해자라는 사실관계가 분명하

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자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단속에 의해 성매매여성들이 경찰에 오는 경우 성매매피해자인지 아닌지가 판단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 때 "강요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하거나 업주 편드는 경우, 인터넷 채팅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많은 경우 기소유예로 처리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면접과정에서 느낀 수사기관의 대체적인 인식은, 가능하면 성매 매피해자로 인정하거나 선처하는 쪽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성매매사범 관련 공식통계가 보여 준 검거된 성매매여성 중 성매매피해여성으로 불입건된 경우의 비율이 낮은 것과는 상반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성매매피해자 판단과 관련하여 집결지여성은 대부분 피해자로 인정된다는 것과 성매매피해자와 피의자의 요소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대 한 판단상황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① 확실히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집결지여성은 대부분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선불금의 구조가 있다고 진술하면 대개의 경우 성매매피해자로 인정해 준다 고 하였다.

"집결지 여성은 대부분 피해자로 보게 된다. 성매매종사 경력이 길고 선불 금이 늘어나 있다. 선불금에 묶여서 업소를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집결지는 티켓다방, 룸싸롱 등으로 이전하다가 거의 맨 마지막단계에 가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그만큼 선불금에 의한 성매매강요구조에 매여 있다."(117*지원센* 터 B주임)

"있던 곳이 성매매업소인가, 선불금 얼마있나 이 두가지를 충족하면 피해자 로 취급한다."(여경기동수사대 B주임)

"여러 업소를 들락날락하는 경우에도 업소를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이야기하면 피해자로 될 수 있다. 피해자 입증하려면 조사관이 많이 들어야 한다. 범죄 구성요건만 간단히 적으면 안되고, 조사 많이 받고 듣다보면 피 해자임이 밝혀 진다."(여경기동수사대 B주임)

② 성매매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성매매피해자가 사기죄 등의 피의자로 되어 있는 경우나 성매매피해자이 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매매알선도 한 경우 등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상황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성매매피해자인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래 S경찰서 K주임의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사기죄의 피의자로 수배되어 있는 경우인데, 성매매강요부분이 인정되어 사기죄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경우이다.

반면, 업소를 여러 번 옮긴 경우는 탈성매매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사기의사를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로 왔는데, 수배되어 있는 경우 있다. 수배사건을 우선조사하며, 이 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인정하고 있다.(사기죄 피의자이지만, 한편으로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 그 때 성매매강요부분을 진술하면 사기죄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게 된다." (S경찰서 K주임)

"탕치기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분명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 티켓다방은 1 개월 단위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A양의 경우 1,2,3,4,5의 다방을 다닌 경우 5번 다방에서 5일 일하고 나온 경우 두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탈성매매의지가 있어 나온 경우이고, 또 하나는 일단 업소를 나와서 다른 소개업자에게 연결되어 또 다른 다방에 소개되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사기의사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117 N 원센터 K 주임)

③ 성매매피해자 판단이 애매한 경우

성매매피해자가 선불금 무효 등 민사적 해결에만 관심이 있고 업주 처벌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라든지, 수사과정에서 업주와 합의하는 경우 등은 성매매피해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애매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 피해자인데도 중간에 업주한테 회유를 당해서 갑자기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선불금문제가 있을 때 업주가 회유를 해서 "내가 돈 없애 주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냥 끝나 버리는 경우

도 있고, 그럴 경우엔 아무리 설득을 해두요. 본인이 그런 경우에 국가가 피 해자를 '내가 어떻게 해 주고,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겠고, 확실히 돈을 주 겠다, 업주를 처벌하게 계속 밀고 나가자', 이렇게 확신을 줄 수 없는 게, 그 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117지원센터 B주임)

2) 성매매피해자 판단과정에서의 문제점

성매매피해자로 수사기관에서 한번 인정받은 사람이 다시 검거된 경우 어 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시 돌아간 여성이 다시 체포된 경우 입건할건지 불입건할건지의 판단이 애매하다. 이 경우 여성단체에서는 3번까지는 불입건으로 보고 있 다."(*여경기동수사대 B주임*)

바. 성매매피해자 처리현황 및 문제점

1) 성매매피해자 처리현황

수사기관에서 성매매피해자 판정이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탈성매매 를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서비스로의 연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대해 문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매매피해자들이 성매매지원상담소 등 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런데 상담소 등으로의 연계는 궁극적으로 성매매피해여성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수사담당자들은 자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과 설득을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처리는 센터에 보내려고 입 아프게 설득한다. 시설 에 갔다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가 보도록 한다. 그러나 설득, 설 득해도 또 업소로 돌아 가는 경우도 있다."(S경찰서 K경위)

"단속때 이렇게 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빈도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낮다. 그 렇지만 케이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쉼터로 오는 경우가 100%라고 할

74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몇 년전 케이스이긴 하지만 퇴폐이발소에서, 휴게방으로 되있었는데, 그 이 발소에서 여성들이, 저희 한명 구조하러 간 거였는데 그 현장에서 다 경찰서로 간 사람이 24명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두분이 같이 나오겠다고했고 저희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 세분에게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S상담소 소장*)

2) 성매매피해자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①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서비스로의 연계대책 부재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시설로의 적극적인 연계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발적인 선택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선택을 오로지 자발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이다. 상담소 선택이 단속대상인원 중20%정도라고 하니 나머지는 업소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지원시설이나프로그램으로의 연계가 보다 의무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연계대책 부재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성매매여성, 즉 자발을 주장하거나 인터넷 성매매의 경우 범죄자인 성매매여성은 입건되어 초범의 경우는 기소유예, 재 범이후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검찰측에서는 자발적 성매매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동종전과의 유무, 업주와의 관계,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조절한다고 한다.

이러한 성매매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분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실제 처분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초범자에 대해 일반적인 기소유예처분 만을 하고 있는데, 성구매자들에 대한 수강명령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즉 존 스쿨 제도의 운영과 유사한 상담, 교육명령 등이 함께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성매매의 근절이다. 자발적 종사자에 대하 여도 처벌을 않는 것이 성매매산업의 근절에 효과적인가, 아니면 처벌과 선 처의 잣대를 자유롭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지침이나 기준은 너무 엄격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된다."(K검사)

"여성단체와 사회적 분위기는 모든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몰아가고 있지 만 불입건할 경우 대부분이 다시 업소로 돌아간다. 그러나 입건을 할 경우 다시 업소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간다 해도 주로 노래방 도우미를 한다. 즉 탈성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업소로 가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누가 입건 됐다는 소문이 돌면 그 파장이 있어 다른 여성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있다." (여경기동수사대 B주임)

"성매매여성은 초범은 기소유예, 그 다음부터는 보호처분 할 예정이다. 자발 이라 하더라도 벌금매기기 어려워 기소유예를 하고 있다. 자발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하고, 비자발의 경우도 벌금형 내리면 범죄조장 하는 의미가 있으 므로 이를 피하려고 한다."(C검사)

"자발적 성매매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스스로 자발적 성매매라 주장하는 경우 동종전과의 유무, 업주와의 관계, 앞으로도 계속 성매매를 할 것인지, 수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나 원칙적으로는 선처하려고 노 력한다."(*K검사*)

"선처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S상담소 소장)

"인터넷 성매매의 경우 당사자는 성매매로 처벌하고 있다."(*여경기동수사대* B주임)

"인터넷 성매매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처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특히나 성매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범죄라는 의식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미성 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기소하나 죄질이 나쁘거나 성매매횟수가 많은 경우는 보호처분을 하기도 한다."(J검사)

③ 피조사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부재

"경찰이 업주도 여성도 성구매자도 다 잡아야 되는 것인데,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업주가 저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든 어쨌든 경찰이 검증을 해서 이것을 기소를 하면 안되는데, 경찰이 "너희들은 피해자니까 처벌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다 기소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여러건이다.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범죄자로 한 것이다." (*U상담소 소장*)

4. 소결

이상에서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성매매방지법 집행에 관한 공식통계,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 규정 집행현황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위 논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 기로 하겠다.

우선, 성매매피해자 입증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성매매피해자의 추정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피해사실을 주장하면 되고, 수사기관은 그 사람이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임을 입증하도록 해야 실제 성매매여성들의 신고, 고소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매매방지법 집행관련 공식통계에서 본 것처럼 단속된 성매매여성 중 성매매피해자로 불입건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1년 추진실적통계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된 것이 17.1%, 100일간 집중단속실적통계에 의하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인터넷 성매매나 자발을 주장한 경우라고 하는데, 성매매피해자의 입증을 본인이 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 피해자임을, 또는 업주의 성매매강요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 규정 집행현황과 관련해서는 성매매 피해자 신고단계에서부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리단계까지 형사사법실무 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표 Ⅲ-6> 수사기관의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 집행현황 및 문제점

단계	현황	문제점
성매매 피해자 신고	• 신고내용 -못받은 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선불금 무효가 희망 -생계문제가 가장 큰 문제 -업소탈출이 목적	• 117지원센터에서 신고접수 거부
성매매 단속	 ●단속현황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 ─성매매여성의 신고에 의한 특정업소 단속 ─인터넷상 이루어지는 성매매단속 ●단속과정의 어려움 ─일반적 단속을 통한 성매매적발의 어려움 • 입증의 어려움 • 첩보에 의한 경우에는 가능 • 보복의 두려움이나 업주와의 인간관계로 여성들이 신고하기 어려움 ─산업형 성매매의 경우 • 단속이나 증거찾기가 어려움 • 유사성교행위 업소에 대한 규제미비 • 안마시술소의 경우 협박성 시위로 단속어려움 • 성매매증명의 어려움 -현장 적발 어려움 ●실제 업주를 찾기 어려움 • 단속의 효과 ─지속적 단속이 성매매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 발휘 	•성매매여성 위주의 단속 •수사기관과 업주와의 유착 관계
성매매 피해자 조사	 성매매피해자들의 진술환경 열악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경찰은 적극적 수용하나 검찰은 개선 필요 -지원기관의 진정서 제출 성매매여성의 본인 의지와 다르게 주 장하는 경우도 있음 	 조사자와 피조사자간의 의사소통 부재 -수사기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상황을 잘 들으려 하지 않음 -성매매피해자들이 의사표현을 잘못하는 경우 있음 -의사소통의 문제

	현황	문제점
성매매 피해자 판단	 확실히 성매매피해자로 인정 -집결지 여성의 대부분 -선불금 구조를 진술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 중첩된 경우의 판단 -사기죄의 피의자인 경우 성매매 강요 부분이 인정되어 사기죄는 '혐의없음' 처리 -탈성매매의지 불분명시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될 수 없음 성매매피해자 판단이 애매한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 지침 필요 	•성매매피해자로 수사기관에서 인정 받은 사람이 다시 검거된 경우 -이에 대한 기준마련 필요
성매매 피해자 처리	 자활지원서비스로의 연결 성매매피해여성이 선택 수사담당자들은 자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과 설득을 하는 정도에 불과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서비스로의 연계대책 부재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연계대책 부재 피조사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부재

이와 관련하여 각 단계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성매매피해자 관련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성매매피해자 신고단계에서의 117지원센터에 대한 신고접수가 어렵다는 점, 성매매단속과정에서의 성매매여성 위주의 단속, 수사기관과 업주와의 유 착 관계, 성매매조사과정에서의 조사자와 피조사자간의 의사소통의 부재, 성 매매피해자 판단과 관련해서는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또 다시 수사 기관에 검거된 경우에 대한 판단의 문제, 성매매피해자 처리와 관련해서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서비스로의 연계대책 부재,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연계대책 부재, 피조사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의 부재 등이 지적 되었다. 이에 관한 대책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성매매업소 유형에 따른 유입과정의 유형화와 피해실태

1.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	81
2.	성매매피해자의 기준 설정에	
	근거가 되는 국제법	84
3.	피해의 조건과 기준 설정	87
4.	조사대상자와 성매매 업소의 특성	89
5.	성매매피해여성의 피해실태	96
6	소격	110

1.'성매매피해자'와'성매매한 자'의 구분 기준 설정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성매매를 한 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성매매피해자란 위계·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자, 그리고 청소년,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4항). 그리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동법 제6조)에 의하여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검사와 법원은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 할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1항, 2항)고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에서는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집결지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을 할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여 성매매피해자로 간주하지만, 유홍주점 혹은 단란주점, 그리고 지방에서는 집결지의 성격을 띠지만, 허가는 유홍주점으로 취득한 예를 들면 '방석집', '마사지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한 자'로 보고, 보호사건의 처리에 해당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자'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으로 볼 때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편은 비처벌, 다른 한편은 처벌의 일종인 '보호처분'으로 나누어진다면, 이에 대한 입장과 구분의 기준은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현행법상에서 처벌과 비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가 강제된 것이라면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집결지이든 아니면 티켓다방, 유흥주점, 그리고 마사지업소 등 소위 '산업형

첫째, 성매매 그 자체를 폭력의 형태로 보는 관점이다. 여기서는 관련된 피해여성의 의지나 동의 여부에 대한 구분은 중요하지 않으며, '강요'의 기준으로서 작업조건 역시 어떠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피해여성의 자발적인 혹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매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즉, 강제적 성매매인가 아니면 자발적 성매매인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성매매 자체를 강제적인 폭력으로 여긴다.

둘째, 강제적 혹은 자발적인 성매매를 판단할 때, 유입당시의 상황보다는 여성이 고용된 조건에서 강요적인 사항을 판단하는 관점이다. 즉 일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에게 폭력과 착취가 있었는가. 혹은 아닌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여성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착취를 중요하게 여긴다.

셋째, 유입 당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유입되었다면 강제된 성매매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어떤 상태에서 성매매로 유입되었는가에 있다. 성매매여성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인가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적으로 고용당한 것인가와 관련된 이

러한 구분은 성매매를 일로서 생각하는 여성들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첫 번째 관점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은 성을 팔게 되므로 성매매 그 자체를 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 여성은 모 두가 피해자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조건과 환 경에서 폭력과 착취가 있었는가, 아닌가를 파단하여, 피해자 여부를 파단하 는 것이고, 세 번째 관점은 유입시 강제인가 아니면 자발적인가에 판단의 기 준을 두는 것이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자발과 비자발에 대한 성매매 관점 을 염두에 둘 때, 모든 성매매 그 자체를 폭력으로 보는 첫 번째 관점은 성매 매여성을 피해자와 범죄자로 나누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와 다르며, 세 번째 과점은 성매매여성(피해자 혹은 한 자)이 경험하는 선불금 등으로 인한 성매 매 착취구조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관점, 즉 성매매여성(피해자 혹은 한 자)들이 유입에서부터 일25)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착취를 중심으로 자발과 강요를 구별하는 관점 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혂행 법체계에서의 피해자 기준 설정에 가장 타당하 설 명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적 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를 구별하는 기준은 여성이 업소 에 '유입당시'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는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매 매 과정'에서 그 여성을 억압하고, 강제하기 위한 폭력과 착취가 존재했는가 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강제적 성매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을 강요하는 강제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강제적 요소를 구분하는 요소는 국제법과 이에 상응하는 국제협약으 로 유엔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 약'과 'ILO 협약'을 참고하고자 한다.

²⁵⁾ 여기서 '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으나, 이는 노동의 개념이 아닌, 작업을 하는 과정이 나 달리 표현할 개념이 없어서 '일'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기준의 준거 틀을 국제협약 과 국내법을 참고하였으나, 이들의 '일'이 근본적으로는 노동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노동의 기준에 맞추어보는 것은 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합법적 혹은 비 합법적인 구분에서는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혹은 폭력의 기준으로는 현행 법 혹은 협약에 따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거하였다.

2. 성매매피해자의 기준 설정에 근거가 되는 국제법

가.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정'

1949년 UN은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정(이하 1949년 인신매매협정이라 한다)'에서 인신매매와 착취에 대해 동시에 다루고 있다. 1949년 인신매매협정이 작성되기 수세기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매매(traffic in women)와 성매매의 착취(exploitation of prostitution)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어 왔지만, 여성의 매매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 번 협정서의 첫 번째 정의는 성매매를 주선하고, 그것을 하도록 유혹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여성을 유입시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UN convention, 1949).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개인간의 매매와 다른 사람들의 성매매로 인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한 부분을 착취와 강제 (coercion)에 연관을 시켜 왔다는 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어떠한 상태를 '강요된 충원' 혹은 '강요된 착취'로 볼 것인가에 관한 점이다.

한편 UN은 2000년에 "사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보충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이하 인신매매 방지의정서]를 채택했으며 한국정부는 2003년에 가입한 바 있는데, 이 2000년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그동안 다양하게 해석되었던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확립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의정서에 의하면,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육체적 폭력, 기타 강압적인 방법 또는 유괴, 사기, 기망, 직권남용이나 궁박 상태를 이용, 감독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보상이나 이익제공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 수송, 이동, 은닉 또는 인계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착취에는 최소한 타인의 성매매 또는 다른 형태의 성착취, 강제 노동, 장기의 적출, 노예 또한 이와 유사한 노예적 착취행위 등이 포

함된다."(제3조 (a)) 위에 열거된 수단을 사용할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가 동의 를 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동조 (b)), 착취를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 을 모집, 수송, 이전, 유치 또는 인신하는 경우 위에 열거된 수단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동조 (c) 및 (d)).

1949년 인신매매협정 및 2000년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의하면 성매매 및 성착취를 인신매매의 형태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인신매매에 포함되는 수단 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여성의 의지나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강요'의 기준으로서 작업조건은 어떠한 관련도 없다. 이 관점에서는 여 성의 자발적인 혹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매매라 할지라도 그것이 착취를 목 적으로 인신매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한 강제적인 성매매로 인정된다. 이 에 의하면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강제적인 성매매인가, 아니면 자발적인 성매매인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성매매 및 성착취는 강제적인 폭 력의 일종이 된다.

성매매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유엔의 협정서와 한국의 성매매처벌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념상으로 드러나는 이 차이점에 대한 논쟁보다는 성매매한 자에 대한 처벌(비록 보호처분이라 할지라도)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처벌법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폭력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여부 를 떠나서 강제 혹은 자발적인 성매매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피해로 볼 것 인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것은 성매매(피해자 혹은 한 자 모두) 여성이 일 을 하는 과정에서 입는 피해는 궁극적으로 성매매여성이 처한 입장이 강제적 이므로 처벌하지 않고, 그러나 중간 매매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을 밝히고자 함이다. 이러한 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성매매여성이 일을 하는 방식이 업소(전통형 혹은 산업형 성매매업소 모두 포함)에서 일을 하는가 아 니면, 개별적으로 일을 하는가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것은 성매매방지법상의 피해자는 업소 유형과 관계없이 일하는 과정에서 업주 혹은 중간매개자에 의 해 발생하는 폭력의 실태는 피해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 다.

피해를 당하는 폭력은 물리적, 경제적, 혹은 사회 심리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ILO에 의한 강요된 노동의 기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자 한다.

나. ILO협약에 의한 강요된 노동

비록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ILO 협약을 참조하는 것이 무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강요된 노동에 대한 ILO협약이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일이나 서비스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ILO협약에서 노동의 의미를 합법적인 노동만으로 한정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볼 때 ILO협약 중 강요된 노동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26)

ILO 협약에서 '강요된 노동(forced labour)'은 처벌의 위협을 통해 타인에 게서 끄집어 낸 모든 종류의 일이나 서비스, 그리고 본인의 자발성 없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일이나 서비스로 정의된다(ILO, article 2).

ILO 협약에서 '강요된 노동'의 개념이 주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사용되었다면(article 1), 제4조는 사적영역에 적용된다. 이것은 개인간의 강요된노동에 관해 국가의 실시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합법적인 권위는 개인,회사 혹은 협회(associations)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강제적인 노동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라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여기서 보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는 강제(forced), 혹은 강압(coercion)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

²⁶⁾ ILO에서 의미하는 '강요된 노동', 여기서 '노동'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데,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노동'이라기 보다는 '판매'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ILO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의 조건'이라는 의미에 가깝게 인용하고자 함이다.

- ○**사기** : 작업 조건 혹은 앞으로 할 일의 성격에 대한 사기를 말한다.
- 허위의 노동조건 제공 : 이것은 합법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 가 취약한 사람에 대한 억압과 더불어 일방적인 근무조건을 수행해야 하 는 경우와 다른 누군가에게 종속당함으로써 개인의 기록, 서류 등을 몰 수당하는 위치에 처한 경우 등과 같이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
- **빗의 속박**: 빚의 안정성으로서 다른 사람 혹은 스스로에 대한 개인적인 서비스 혹은 노동을 담보로 하는 빚에 의해 폭력의 위협에 있거나 권력 의 지배적 위치로 인한 일방적인 근무조건을 감내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 된다. 이 경우 빚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산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부과로서 서비스 혹은 노동의 가치가 정상적이거나 혹은 서비스와 노동 의 기간과 성격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빚의 청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적 정체성 혹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사물화(appropriation)로서 신분 중 압류: 개인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법적 정체성의 사물화란 개인 신분증명서를 빼앗거나 결혼 계약이라는 미명하에 거짓 신분증명서를 공급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

3. 피해의 조건과 기준 설정

그러므로 성매매피해자로서의 조건과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강제(force), 매매와 착취(exploitation)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강제력이란 피해여성이 자신의 삶과 신체, 정신을 통제함에 있어서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통제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억압의 모든 종류를 말한다. 강제는 고용에 있어서 또한 일하는 상황 혹은 조건 등이 조직화된 총체라 할수 있는데 이것이 '강제된(forced)'으로 표현된다. 매매는 일 혹은 서비스를

위해 고용되는 형태로서, 자신이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시점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한다.

성매매 과정에서의 강제적인 요소로 인해 성매매여성은 자신의 삶과 신체, 정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다. 이것이 성매매로 인한 피해이다. 그러므로 성매매피해자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적 요소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성매매여성이 매개자 혹은 구매자를 통해 직접 겪는 피해, 즉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과정에서 겪은 폭력과 착취로 인한 강요 및 강제를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을 ILO의 기준에서 허위의 노동조건 제공, 빚의 속박, 폭력, 그리고 법적 신분의 사물화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기는 노동조건의 위계 남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포함하지 않았다.

<표 Ⅳ-1> 피해의 기준과 이에 따른 세부사항

기준	세부사항
허위의 노동조건 제공	 근무조건에 대한 정보 미제공(2차에 대해 알리지 않음) 차용증 작성 일방적 벌칙규정(지각, 결근) 불합리한 수입의 분배구조(월급의 체불) 일의 시작과 종료 결정의 어려움
빚	- 선불금의 구조 - 강제적 맞보증
폭력	- 업무상 강압적 분위기로 인한 성매매 - 신체적 폭력(손님, 업주로부터) - 심리적 폭력(업주로부터) - 생리 중 성매매 강요 - 도망의 시도와 실패에 따른 폭력
신분증 압류	- 주민등록증, 여권 맡김
기타	-공권력에 도움 요청에 대한 의견

4. 조사대상자와 성매매 업소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Ⅳ-2>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 대상자	나이	학력	가족관계	다른직업 경험	성매매 유입 연령	종사한 업소유형(기간)	전체 종사 기간	면접 당시 상태	기타
Э	29	전문대 졸	어머니, 언니 2	간호사	26	룸살롱(3년)	3년	쉼터 거주	업주 고소
Q	21	중학교 중퇴	부모(이혼), 새엄마, 오빠, 할머니, 할아 버지, 이복동 생 둘.	-	15	티켓다방, 보도, 룸살롱, 안마시술소 (장안동 남성 휴게텔), 평택집결지	6년	쉼터 거주	업주 고소 준비중
Œ	24	중졸	부모(이혼), 여동생 2	_	18	티켓다방 룸살롱, 집결지	7년	쉼터 거주	
2	23	고졸	어머니, 여동생	_	19	노래방주점 룸살롱	4년	쉼터 거주	
ⅎ	19	고등 학교 중퇴	부모(이혼), 새아빠, 동생 (이모집 거주)	파출부	-	개인	-	쉼터 거주	강간 고소중, 무고죄 혐의
H	19	초등 학교 중퇴	부모(이혼), 새아빠, 동생 2	_	13	룸살롱, 단란주점, 티켓다방	7년	쉼터 거주	어머니 고소중
(18	고등 학교 중퇴	할머니, 고모		18	보도	2개월	쉼터 거주	
0	16	중학교 중퇴	부모(이혼), 새아빠, 오빠, 동생2	_	15	조건만남(인터넷 개인), 룸살롱,	1년	쉼터 거주	
3	17	고등 학교 중퇴	부모(이혼), 오빠	_	17	조건만남(인터넷 개인), 티켓다방	6,7 개월	쉼터 거주	

(계속)

조사 대상자	나이	학력	가족관계	다른직업 경험	성매매 유입 연령	종사한 업소유형(기간)	전체 종사 기간	면접 당시 상태	기타
②	27	고졸	부모(이혼), 남동생	옷가게 점원	23, 4	티켓다방, 집결지(부산완월)동	약 4,5년	쉼터 거주	
9	29	고졸	부모	_	16	티켓다방, 보도, 집결지(부산완월동)	14년	쉼터 거주	
Œ	20	고등 학교 검정 고시	부모, 여동생	_	14	티켓다방	7년	쉼터 거주	
<u> </u>	26					보도		쉼터 거주	
8	27	중졸	부모, 언니, 남 동생		18	룸살롱, 요정, 방석집		쉼터 거주	
(a)	32	고등 학교 중퇴		_		집결지 (서울미아리, 인천 등)		쉼터 거주	
(b)	39	중졸		_		집결지 (부산완월동, 평택, 대구, 마산, 인천 등)		쉼터 거주	_
c	30	고등 학교 검정 고시	어머니, 언니	카페운영		여관바리, 집결지 (부산완월동, 대구, 서울, 인천)		쉼터 거주	

본 조사대상자는 모두 17명으로서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면에서 현재 10대 5명, 20대 9명, 30대 3명으로 주로 10대에서 3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성매매 유입 당시 연령은 주로 10대였다. 둘째, 학력은 대개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중퇴 내지 졸업으로, 특히 10대에 유입된 경우 학업을 중단하고 성매매로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10대에 유입된 경우에는 다른 직업의 경험이 없었으며, 20대에 유입된 2명의 연구 참여자들만이 다른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었다. 넷째, 성매매에 오랫동안 종사한 조사대상자들은 다양한 업종과 업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성매매에 종사한 기간이 길수록 업종의 이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현재 성매매 관련 단체나 쉼터에서 탈성매매를 위해 교육

을 받고 있으며, 탈성매매 한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들이 었다. 조사대상자를 17명으로 한정한 이유는 쉮터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서 파악할 수 있는 성매매 관련업소유형은 거의 다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는 쉼터를 운영하는 여성단체나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소개받았 으며, 연구의 의의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이들을 중심 으로 연구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현재 성매매집결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성매 매여성을 인터뷰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접근이 거절되었 다. 따라서 자신이 '성매매피해자'의 범주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개념상 성매매피해여성 뿐 아니라 '성노동권' 을 주장하는 여성들을 면접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원 천적인 접근이 거절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주로 자신이 '성매매피해여 성'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정체화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 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자신을 피해여성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실태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진행하였다.

나. 업소의 특성

현행 성매매방지법상 강제적 요소들이 인정되어 성매매피해자임이 인정될 수 있는 여성들은 주로 성매매 집결지의 여성들이다. 그리고 실제 성매매에 대한 규제가 집중되는 것 역시 성매매 집결지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성매 매는 훨씬 다양하며 성매매 집결지가 갖고 있는 특성만으로는 다양화되고 있 는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포괄할 수는 없다. 또한 산업형성매매가 집결지 같은 전통형 성매매보다 훨씬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있으며, 특히 성매매방지 법 시행 이후 법망을 피하는 방식으로 대딸방 등 각종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있는 성매매업소들을 특 성별로 3가지로 분류하고 그 아래 업소들을 종류별로 나열하여, 각각의 업소 의 특성별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강제적 요소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여기 서 나누는 1, 2, 3종의 분류는 성매매여성들의 면접을 통해 나온 분류방식인데,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인 전통형 성매매는 '3종'으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은 '2종'으로, 티켓다방 등은 '1종'으로 분류된다. 1종에는 주로 티켓다방과 보도방 등 구매자가 여성들의 시간을 구매하여 영업장소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성매매 등 성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업소들이 포함된다. 2종은 흔히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단란주점, 노래방주점, 룸살롱 등을 의미하는데, 술등을 판매하는 업소 본래의 목적에 더해 유흥접객원이 유흥서비스 및 성적 서비스, 성매매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2종에서 성매매는 소위 '2차'로써 구매자가 원할 경우 영업장소가 아닌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3종은 1차 목적이 성매매인 전통형 성매매로서 한 지역에 성매매업소와 관련 업소들이 밀집되어 공동상권을 이루고 있으며, 한 건물 안에서 술판매와 성매매가 함께이루어진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이동경로 업소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출발이 1종인 티켓다방에서 2종인 주점 혹은 마사지 업소로, 그리고 3종인 집결지 등의 순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업소로는, 1종으로는 티켓다방, 보도방, 여관바리가 있으며, 2종은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방주점, 3종은 대규모집결지, 방석집, 마사지업소(장안동 남성휴게텔)가 있다.

개인 성매매 중 인터넷 성매매를 조사했으나, 업주나 알선업자 등 중간매 개자가 없는 개인 성매매의 특성상 중간매개자로 인한 강제적 요소를 찾을 수는 없었다. 또한 구매자에 의한 강제적 요소로 구매자에 의한 성폭력이나 폭행 사례들을 찾으려 하였으나 3명에 대한 사례조사만으로는 이러한 실례를 찾지 못했고, 이 중 한 명은 특히 구매자들의 폭력에 대비하기 위해 2인 1조 내지 3인 1조로 함께 움직이는 등 적극적 방안을 강구하여 실제 폭력피해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었다. 개인 성매매는 성매매에 대한 강제적 요소를 찾기에 적합한 성매매 유형이 아니며, 성매매 자체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으므로 다른 연구 작업을 통해 좀 더 고민이 진척되어야 할 분야이다.

외국인 성매매에 대한 조사는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성매매는 국내의 성매매와는 다른 영역, 즉 외국인의 노동권 문제와 국제적 연대 문제 등국제 인권법 상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서, 본 연구와는 다른 영역

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분야이다.

아래의 표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업소들을 특성별로 분류한 것이다.

1) 1종의 특성

업종 분류	업소	업소의 특성
1종	티켓 다방	 커피 배달과 티켓 병행(특정 영업장소가 있는 곳도 있지만, 배달만을 받는 곳도 있음). 구매자가 시간에 따라 티켓을 구매(지역이나 시기별로 시간비에 차이가 있으나 대개 한시간당 2-3만원, 하루 30만원). 시간을 나가는 경우,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노래방이나 룸살롱에 나갈 수도 있고, 인근 여관이나 모텔로 2차(성매매)를 나갈 수도 있음. 티켓비는 업주와 성매매여성이 5: 5로 나누며, 드물지만 월급제인 경우도 있음. 주로 중간관리자없이 업주가 여성들을 관리. 최근 중간관리자로 마담을 두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오전 8시 출근, 밤 12시 퇴근.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공동생활).
	보도방	 특정한 영업장소 없이 여성들을 찾는 전화가 오면 여성들을 보냄. 주로 노래방이나 룸살롱, 단란주점으로 나감. 업주는 여성들을 보내주는 명목으로 거래하는 노래방이나 룸살롱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음. 노래방이나 룸살롱 등에서 2차를 요구할 경우 내지 여관이나 모텔 등으로 나갈 경우 성매매를 함. 여성들은 업주와 수입을 5:5로 배분함(2차도 포함됨).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때 숙박비와 식비는 여성들이 부담함. 중간관리자는 없으며, 노래방 등 거래처에서 대금을 수금하는 이들이 고용되어 있음. 특정한 출퇴근시간이 없음.
	여관 바리	 특정한 영업장소 없이 여성들을 찾는 전화가 오면 여성들을 보냄. 인근 여관으로 나감(성매매가 목적). 업주는 여성들을 보내주는 명목으로 여관에게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줌 (이 금액은 여성들과 공동부담). 시간당 대략 4만원. 수입은 여관주인과 업주가 5:5, 여성과 업주가 5:5로 배분하여, 여성은 시간당 1만원의 수입을 가지게 됨.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때 숙박비와 식비는 여성들이 부담함. 특정한 출퇴근시간이 없음. 옷, 화장품 등 필요한 물품과 교통비, 여관 가까운 인근 PC방에서 대기하면서 드는 비용 전부는 여성이 부담.

2) 2종의 특성

		_		
업종 분류	업소	업소의 특성		
2종	룸살롱	 주로 테이블에서 서비스를 하며, 2차를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한 테이블당 구매자가 내야하는 금액은 기본인 경우 70-110만원선(술 값 및 마담, 웨이터팁 등이 포함). 여성의 경우 테이블당 7-10만원을 받으며, 이 중 출근비 명목으로 업 주에게 수입 중 10%의 금액을 내야함. 중간관리자로 부장과 마담들이 있음. 마담들이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함. 저녁 7-8시 출근, 아침 6시 퇴근. 숙식은 개인이 해결함. 		
	단란 주점	주로 테이블에서 서비스를 하며, 2차를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테이블당 구매자가 내야하는 가격은 룸살롱보다는 훨씬 저렴함.나머지는 룸살롱과 유사하다.		
	노래방 주점	 노래방에 온 손님들이 술을 시키고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들을 부르는 형태. 한 시간당 2만원 내지 2만 5천원(저렴한 비용으로 아가씨와 술 마시고 놀기를 원하는 손님들이 주로 이용). 여성은 2만-2만5천원 수입을 전부 가지며, 업주와 분배하지 않음. 2차가 없음. 주로 공동생활. 숙박비 등을 업주에게 지불함. 특정한 출퇴근시간없음. 		

3) 3종의 특성

업종 분류	업소	업소의 특성			
3종	대규모 집결지	 -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 여성들이 홀에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으면 구매자가 여성을 찍어 쪽방(일명 '연애방')에서 성매매를 함. 술상을 제공하는 일명 '술 3종'도 있음.(서울 미아리, 부산완월동 등이 대표적) - 시간당 5만원 정도이나 실제 마담의 수완에 따라 술상과 성매매의 값이 달라짐. - 기본적으로 업주와 여성이 5:5로 수입을 배분하나, 업주마다 손님당 1만5천원~2만원정도 주는 경우가 있고 비율로 주는 경우가 있음. 술상에 들어갔을 때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공동생활(감시와 규제가 심한 편). - 중간관리자로 현관이모(삐끼이모)가 있음. 			
	방석집	 구매자에게 팁 1~2만원을 받는 것이 수입. 저녁 7시 출근, 아침 7시 퇴근. 한달에 한 번 휴일. 			
	마사지 업소 (장안동 남성 휴게텔)	 일종의 성매매제공 목적의 안마시술소. 구매자는 이용료 8만원을 내고 안마+면도 및 손톱손질+몸타기+전신에 무+성관계 등을 제공받음. 특정한 출퇴근시간없음. 공동생활. 업주와 여성이 55로 수입을 배분. 여성은 한사람당 4만원의 수입을 얻음. 중간관리자가 있으나, 여성들의 관리는 소개업자가 함. 휴일은 없으며 3개월 일하고 쉬는 형태(그 때 업소를 이동함). 			

5. 성매매피해여성의 피해실태

가. 허위의 노동조건 제공

허위의 노동조건 제공이라 함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 전 거짓의 노동조 건을 제공한 것뿐 아니라 제시된 노동조건과 실제 노동조건이 불일치하는 경 우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법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사람에 대한 억압과 더불어 일방적인 근무조 건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와 다른 누군가에게 종속당함으로써 개인의 기록, 서류 등을 몰수당하는 위치에 처한 경우 등과 같이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으로서 업소에서 일을 시작할 때 근무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여부, 즉 2차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 계약시 차용증의 작성 여부, 지각 및 결근시의 일방적인 벌칙규정, 일의 대가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 불합리한 분배구조 및 일의 시작과 종료에 있어서 자신이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통해 노동조건에서의 위계 남용 여부를 보고자하였다.

1) 근무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허위의 노동조건 제공은 우선적으로 근무조건에 대한 정보 확인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을 시작할 때, 업주에게 어떤 일을 하게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는가, 혹은 성매매를 하게될 것인가 아니면 성매매는 안하고 단순히 술접대 등만 하게될 것이라고 들었는가, 그리고 일할 때의조건들(예를 들어, 월수입, 숙식, 기타 등)에 대해 명확히 들었는가, 들었다면처음 말했던 조건이 실제 일했을 때와 같았는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이것이노동조건에 대한 위계의 남용과 관련된다고 보겠다.

면접결과 티켓다방(1종), 룸살롱, 노래방 주점(2종)의 경우 2차는 없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2차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결지(3종)의 경우는 성매매를 하는 곳인지 알고 들어간다.

"글고 2차가, 2차가 없다고 하는데, 얘들한테 물어도 '가게에 2차 있냐?'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일하다 보면, 그냥 오는 손님이라도 거의~ 대부분이 남자친구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손님 한 번 더 부를까.' 그래서 남자친구 사귀는 것처럼 가장을 해야 되고, 항상 애인인 것처럼통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거의 몰래몰래 자줘야 되고, 자줘서라도 오게끔 만들어야 되요. "(①. 룸살롱)

"(그 때 정확한 정보를 듣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분위기로 그렇게 되는 거죠?) 몰랐죠. (자기가 할 일이 뭐라는 거, 술 따라주고 마시면 된다는 것을 업주한테 들었습니까? 듣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처음에는 친구한테 들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땐 내가 모르니까 그 주인하고 그 주위에 일하는 언니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다른 건 없다. 그냥 술 주면 마시고 그냥 따라주고. 말은 안 해도 상관없다. 그냥 옆에만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성매매 하는지] 몰랐죠." (⑥, 룸살롱)

티켓다방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막연히 알고는 갔지만, 자신은 2차를 나가지 않고, 단순히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놀아주면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

"일 시작 당시엔 몰랐죠. 그냥 나가서 술 마시고, 막 노래방으로도 가잖아요. 노래방 몇 시간 나가고… 그런 것도 있고 2차 나가는 아가씨들도 있다고 생각했죠. 나는 안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한거죠. 근데 주인이 일부러 보내는 것도 많이 봤고, 나 안나간다고 알아서 하라고… 노래방만 나가고. 대신 자살봉을 많이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빚을 못 까죠." (它, 티켓다방)

"2차를 하지 않는다고 듣고 노래방 주점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노래방 주점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자 룸살롱을 함께 운영하는 업주가 2차가 있는 룸살롱 아가씨가 부족할 때 노래방 주점 아가씨들을 대신 부르기도 한다. 결국 강요로 2차를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②, 노래방 주점)

아래의 사례(⑪)는 모친이 소개업자의 역할을 한 경우로, 소개를 한 모친이

당시 13살이었던 이 여성에게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채 룸 살롱에서 일하도록 강요하였다.

"엄마가 그냥 거기 노래방이니까 노래만 불러주고, 술만 먹어주면 된다 그 랬는데.. 제가.. 노래방.. 가족들이 노래방 가는 거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가족처럼 노래방 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거기다 놓고.. 엄마가 400만원을 선불(금)로 당겨 간 거예요. 엄마가 거의 소개하러 다니면서 나를 갖다 팔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엄마랑 공판 중에 있거든요."(卿, 노래방 주점)

월수입에 대해 들었으나 그 월수입이 선불금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 된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원칙도 없이 그대로 당하게 된다. 또한 수입이 있어도 지출이 더 많은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2차를 하게 된다는 것이며, 2차를 하지 않으면,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업주가) 소개소에 아가씨를 보러 와요. 아가씨를 보러 와서 우리 집은 장사가 잘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방값은 얼만데 그 나머지는 다 네돈이다. 그런 식으로 좋은 말만 해주니까. 실제랑 너무 다르죠.. 얻는 것도 없고.."(③, 집결지, 완월동)

2) 근로계약으로서 차용증 작성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문서로 혹은 구두로 계약을 했는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하기로 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계약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선불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쓰는데, 이 안에는 계약사항과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요즘은 성매매 단속이 심하니까, 성매매를 하는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처음 가게에 갔을 때, 차용증을 썼어요. 이런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 같은 것 차용증에 다 있죠. 선불금보다 많은 금액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있었어요.."(⑤, 집결지)

"옛날에는 무슨 계약서 있잖아요. 일하는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나는 다방에

서 한 달 동안 이걸 한다. 안 할 때는 벌금 낸다. 이런 계약서 있었는데 요즘 엔 그런 건 없고 들어갈 때 차용증이나 하나 적고..

요즘은 이런 각서를 쓰라고 해요. 요즘 성매매 이런 게 하도 심하니까. 자기 가 불러 주는 대로 쓰라고 해요. 내 손으로. 성매매 하거나 이럴 경우에 업 주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고 나한테만 책임이 있다. 적으라고. 그렇게 적고." (⑥, 티켓다방)

이러한 차용증은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강요를 참지 못하고 도망쳤을 때 업 주가 여성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심지어 계약 당시 작 성한 차용증은, 이후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업주에 의해 그에게 유리한 방 향으로 조작되기도 한다. 선불금사기로 업주에 의해 고소된 사례 ①은 경찰 에서 대질조사하면서 자신이 쓴 차용증에 일한 날짜와 금액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대질하면서 차용증을 본 게 뭐냐면요. 형사가 이 차용증 네께[네 것 이] 맞냐고. 내 필체는 맞는데 밑에 있는 종이를 같이 갖다 붙인 것 같기도 하고. 차용증에 날짜가 없는 거예요. 날짜 없는 차용증이 어디 있어요. 일할 때 다 날짜 적게 하는데~ 근데, 내가 그랬어요. '형사님, 죄송하지만요. 제가 원본을 좀 보면 안 될까요? 필체는 제 께 맞는데, 분명 날짜 적은 것 같다. 그리고 가게 일할 때 무조건 날짜 적는다. 아니 막말로 얘네들이 법적으로 항의 할 때도 날짜 없는 차용증이 효력이 있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 더니 그 형사가 [업주에게] 원본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필체는 맞는데 날짜가 없었어요. 근데 내 기억으로는 가게 옮길 때마다 분명히 날 짜를. '여기 날짜 적고, 너 가명 적고, 금액 적고, 지장 찍고, 주민등록번호 적 고, 본적 적고, 호주'다~ 적거든요."(③, 룸살롱)

3) 지각, 결근에 대한 일방적 벌칙 규정

휴가, 병가, 근무 중 휴식시간을 본인이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 이용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위반할 시 벌칙이나 벌금규정이 있는가, 있 다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종, 2종 모두 일주일에 하루(일요 일)는 휴일, 그 외에 휴식시간은 없으며 빠질 경우 결근비를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근비는 10만워. 무단 결근비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략 30만워

정도 하였다. 때로는 업주 마음대로 50만원을 정해도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애들이 못 버티니까. 술 먹고 아침 7시, 6시까지 있다보면 거의하루 이틀은 거의 다 빠져요. '너 이거, 뭐 결근비하고 얼마 제했고 뭐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것만 받아가.' 이런 식으로 계산 할 때도 있고, 결근을많이 했으면 오히려 돈 낼 때도 있고."(⑦, 룸살롱)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여타의 벌칙 조치로 인해 업주에게 지고 있는 빚이 늘어나며 성매매여성들은 이 빚으로 인해 업주의 제재를 받는다.

"업주가 계산해주는데……. 한 달에 벌었다하면 500은 벌었어요. 500이나 벌었는데, 일 년 동안 700밖에 못 깠어요. 그러니까 업주가 옷 같은 거 막 사들이고 나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그리고 엄마가 돈은 돈대로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까도 한이 없는 거예요." (웃으며)(倒, *룸싸롱*)

결근비는 30만원이다 (무단결근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결근비를 내야한다). 그리고 실제 자기가 자신의 티켓을 끊는 자살봉[자봉] 등으로 빚이 많이 늘 어나게 된다.

"수입은 나한테 온전히 떨어지는 게 250에서 200, 180 이래요. 현금으로 주지만 받아 가면 돈이 얼마 안 되죠. 까이고… 한달에 자살봉으로 나가버리니까… 하루 안 나가면 30만원,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은 쉬어라 그러고는 올려버려요. '너 안 나왔잖아.' 너무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넌 업주 생각도 해줘야지. 너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래요."(⑥, 티켓다방)

"티켓다방에서는 주인 눈치 보느라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해서 시간 끊잖아요. 안 나가면 주인이 뭐라 하니까 돈 내고 나가요. 손님하고 쪼인[조인트]시켜주면서 이 사람하고 나가라고 막 그래요. 싫으면 이제 내가 싫으면 내 돈끊고 내가 나가면 되지. 내 돈으로 내가 끊으면 되지. 자봉, 자봉이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시간을 끊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살봉, 막 이래요. 자기돈 쓴다고. 거의 다 자봉을 해요."(它, 티켓다방)

3종인 집결지 역시 지각비와 결근비가 있으며, 업주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 다는 점에서 1. 2종과 유사하다. 그러나 최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특히 집결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집결지 내에서는 이러한 벌금규정이 없어진 곳도 있다고 한다.

"(벌칙이나 벌금 규정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각하면 2만원. 원래는 벌금규 정에 있었는데, (나중에 법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고) 네."(②, 집결지)

4) 일방적인 수입의 분배구조

수입의 분배구조는 어떠한가, 수입을 업주와 어떻게 나누는가, 수입을 나 누는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본인이 월수입 전체를 다 갖는가, 중 간에서 이익을 가로채는 사람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업주 와 수입을 분배할 때 5대 5. 혹은 6대 4 등으로 정하는 등 공평하게 나누는 것처럼 여성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수입 분배 비율은 그 렇지 않다. 예를 들어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보도의 경우 숙소는 공짜로 제공한다지만,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해결한다는 것이 식대를 지불하거나, 다 른 업소의 경우 옷값, 화장품 값 등으로 시중보다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므로 실제 나누는 비율은 2:8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집결지, 룸살롱 등 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인다.

"시간제로 들어가서, 받아 온 돈을 업주랑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반 으로 나눠 가서 생활에 쓸 꺼는 자기가 알아서 써야 되요. 숙소에서 생활해 숙박비는 없는데 밥 먹는 건 각자에요. 선불이 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일했 던 그 업소는 선불 같은 것 안하고 그냥 아예, 버는 것 만큼이에요. 버는 거 에 반이에요 남는 돈은 한 시간에 2만 5천원 받고 2차를 하고 해도 많이 나 와 봤자 하루에 삼 만원, 이만 원?, 그냥 20만원씩 해서 정확히 들어왔다면 하루에 백만 원? 그렇게 들어와야 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남는 건 그렇게 해도 한 10만원?"(⊘, 보도)

"수입을 본인이 갖는 형태이나, 빚 공제 등의 이유로 실제 월수입을 본인이 관리할 수 없다. 결국 매주 2, 3만원 정도를 용돈으로 받는 형태이다. 업주와 계산 방법을 맞춰보기 위해 초반에 본인도 장부를 적었으나, 그 업소에서 빚을 지고 도망간 아가씨가 그 장부를 빌미로 고소한 일이 있은 이후 업주가 장부를 적지 못하도록 했다."(*②*, *노래방 주점*)

"월 얼마가 아니라, (50 대 50?) 네. (얼마 정도 벌었어요, 그래서?) 한달에 한 250정도? (그러니까 250? 자기에게 온전히 떨어지는 게?) 나한테 온전히 떨어지는 게 250에서 200, 180 이래요. (그거 다 현금으로 줍디까?) 받아 가면 돈이 얼마 안 되죠. 옷값, 화장품값, 식대 까이고[깍이고]… 180 받는 걸로 치면 한달에 쓰는 돈이 150정도, [본인은] 30만원정도 받아요."(ⓒ, 티켓 다방)

보통 업주가 손님에게 받은 돈을 처음에 합의한 비율로 매일, 매주 내지 매달 정산하여 성매매여성들이게 돈을 분배하는데, 그 기간 동안 여성이 생활비 내지 물품비로 사용한 비용이 받을 돈을 초과했다고 업주가 계산을 한다면 빚만 늘게 되는 경우도 있다.

3종인 집결지의 경우, 아예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러면 방석집에서 일하시면서 일당이라던가. 생활비라던가 그런 건 어떻게 받으셨어요?) "거의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아예 안 주거든요. 안 줘갔고 그 집에 일하면서 방값도 거의 일년 넘어 밀릴 정도였고 거의 생활이 안 되요. [돈을] 안 주거든요. 아예 돈이란 자체를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뭐 딴 방법 없죠. 그 때 같이 일하던 사람 둘이가 더 있었는데, 우리끼리 머리를 짜는 거예요. 뭐 현금 들어오면 빼돌리고, 그렇게 밖에 못 살았어요. 아예 주지를 않으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 욕부터 나오니까." (그래도 결국은돈을 안 주는 거잖아. 그럼 성매매 하는 수입 들어온 거는 어떻게 나눕니까? 그것도 안 줘요?) "수입이요? 근데 이게 거의, 아까 정차장님도 얘기했지만은, 매상을 많이 올려 주면은 몸이 그냥 따라 가요. 그냥 손님이 만일에 만원짜리 하나 주면은 그냥 받는 게 낫지, 그게 누구처럼 밖에 나가면서 적립된 금액이 아니고, 나가지도 않고 안에서 다 해결을 하면서 주면은 받고 안주면 못 받는 거예요. 팁씩으로 만원씩, 2만원씩 받는 거 말고는 월급으로받는 건 없어요."(③. 방석집)

"(월급 안 준적은 없어요?) 많죠. (어떻게 안줘요? 한 달 더 됐는데 안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미뤄요."(②, 집결지)

2종 룸살롱의 경우 선불제 가불형식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역시 빚을 부담시키는 한 가지 방식일 뿐이고, 결국 다시 차용증을 쓰고 새로 빚이 늘어나는 방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선불제 가불 형식이라고 얼굴 보면서 '아, 얘는 한 24일 그렇게 해가지고 한 1300[만원] 줘도 되겠나?' 한 번 1300만원 24일 계약 해가지고 받았는데, 또 자기네 마음대로 갑자기 받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아~ 자기네들이 마이너스가 난대요. 그래갔고 애들 더 이상 월 급 못 주겠대요. 그래서 애들 다~ 다~ 빠킹했어요. 월급을. 다 그냥 그대로 그 월급을 다해가지고 빚을 다 올려버렸어요. 차용증 다시 적고. 그래서 그 때 애들이 지금 다~ 만약에 묻는다면 그 때 애들이 처음 1300, 1000만원 자 기 월급 받았던 대로 빚이 다 늘었어요, 갑자기. 어이가, 예. 그 때 저도 한 일주일 울었을 거에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⑤, 룸 살롱)

5) 일의 시작과 종료 결정의 어려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 문에 대부분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처음 일반다방에 서 일했을 때는 열심히 모아서 빚을 갚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일을 하면서, 빚이 늘어나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점점 빚을 많이 받는 업소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집을 나와 가지고 처음에 선불금으로 받은 빚이 300[만원]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2달 만에 다 갚았어요. 다방월급 한달에 150[만원]이거든요. 다방 같 은 경우는 화장도 안 해도 되고요. 머리도 안 해도 되요……. 그러니까 집에 서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2달 동안 돈 10원도 안 쓰고 다 갚았었어요. 그래서 깠는데, 다시 친구가 일하자고. 나 이제 이 생활 안해야지~ 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같이 일하자고. 다시 또 다방에 가게 되 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두 번째는 못 갚았어요."(*⑤, 티켓다방*)

일을 하다보면 다른 업종으로 옮기게 되는 데, 옮기게 된 이유는 빚 때문이 다. 빚이 늘어나게 되면 소개삼촌이 빚을 더 빨리 갚을 수 있는 곳으로 다른 업종을 추천하고 본인은 이를 믿고 업종을 옮기게 된다. 그러나 실제 빚은 더 늘었고,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이다.

"21[살]때 다방 다니다가 [빚이] 500[만원]이 되어가지고 친구가 룸 생활을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한대요, 다방보다 훨씬 더. 빚도 빨리 깔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21때 갔었어요. 근데 가도 막 사치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마담이나 업주가 권유하잖아요. 너한테 투자를 해야 그만큼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옷이나 신발이나 하다못해 화장품 이런 것도다 최고급. 여기서 마이킹 1300[만원]되면서요, 빚이. 300되면서 소개소에서 차라리 (잠시 침묵) 3종[집결지] 가가지고 빨리 까자, 이래요. 난 3종 가면진짜 빨리 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던데…"(戶, 티켓다방)

소개소와 협의되면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으나 이러한 합의 자체가 어렵다. 빚이 있기 때문에 업주와 소개소 매니저의 담합으로 그만둘 수 없다. 즉자신의 의지보다는 소개소에 의해서 업소를 이동하게 되며, 도망치지 않는이상 그만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 두는 거는 내 마음이거든요. 소개소에서 다녔다고 했잖아요. 내 앞전에 매니저가 빠져나가면서 아는 동생한테 나를 넘긴 거예요. 이 사람(소개소)하고 주인하고는 내통하는 그게 참 많아요. 주인하고도 엄청 친해요. 내가 '그만 둘게'이러면 주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만둔다고하기 전에 주인은 먼저 알고 있어요.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걸 벌써 알고 있어요. 일단 매니저한테 통화가 되서그 사람이 날 데리고 온다고 하면 내가 그만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못 데리러 온다고 하면 나는 계속 이거해야 하는 거야 [빚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망안치는 이상."(河. 집결지)

이상과 같이 근무조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는가에 대한 여부에서 대부분의 경우 업주에게 어떠한 형태의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듣지는 않고, 미리 알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티켓다방 혹은 노래방주점, 룸살롱에서는 2차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막상 2차를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다. 차용증의 작성 여부도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쓰는 방식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하고, 최근에는 빚은 많이 늘리지 않는 상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하는 것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변하고 있다. 휴가, 병가 시에도 본인이

결근비를 물어내야 하고, 결근비의 액수도 업주 마음대로 정하지만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있다. 수입의 분배구조 역시 계약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업주 의 마음에 따라, 혹은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과정에서 빚은 늘어나고, 선불금 혹은 차용증의 이름으로 마음대 로 업소에서 나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업종(1종, 2종, 혹은 3종)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어떠한 유형이라도 일단 업소에 들어가게 되 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억압적인 위계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나. 빚의 굴레(경제적 속박)

그렇다면 경제적 속박으로서 속박당하는 상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속박의 상태를 빚의 유무로 보 고 ILO의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서비스 혹은 노동을 담보로 하는 빚에 의해 폭력의 위협에 있거나 권력의 지배적 위치로 인한 일 방적인 근무조건을 감내하는 경우로 보고 선불금과 경제적 맞보증에 대한 위 협여부를 분석하였다.

1) 선불금의 구조

선불금을 받고 일을 했는가, 그 구조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일을 처 음 시작할 때는 액수가 많지 않아 갚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벌금, 소비구 조, 그리고 여러 명목으로 제하는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불금의 액수는 늘 어나게 된다.

사례 ¬의 경우, 선불 800만원을 받고 시작했지만, 한 달에 1300만원정도 되는 수입을 올리더라도 생활비 내지 결근비 등으로 인해 오히려 빚이 늘어 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월수입을 자신의 손에 쥐지 못하며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현금은 모두 빚인 상황이 된다.

"빚도 갚으란 소리도 안 해요. 너 얼마씩 갚아,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법둬요. 그냥. 빚이 늘어나면 네 사정이고. 어쨌든 너는 가게 와서 꾸미고 일만 하면 되니까. 그니까 제가 빚이 얼마 늘었는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니까 저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너는 상품관리만 잘 해라. 네가 빚이 늘든말든 네 사정이고 나는 너를 상품으로 팔아가지고 장사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인 것 같아요."(⑦, *룸살롱*)

대부분 성매매여성들은 선불금이나 초기 자본투자비의 명목으로 업주에게 빚을 지게 되고, 이후 버는 수입은 모두 이 빚을 탕감하기 위해 쓰이게 된다. 그러나 업주가 성매매여성들에게 빚을 늘리는 명목은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한 물품비(화장품, 옷값, 손님에게 제공되는 각종 물품 등)의 부담과 결근비 등이기 때문에, 업주가 빚을 여성들에게 많이 준다고 해도 업주에게 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선불금을 받고 여성을 고용하는 업소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고용당시 선불금이 없더라도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 에게 부담되는 각종 물품비와 지각, 결근 등의 벌금으로 인해 결국 성매매여 성은 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다.

"처음 한 5년 정도 벌어 모았고요, 그 다음 2년 정도는 갑자기 [빚이] 불었어요. (왜?) 결근비… 그까, 그 때 당시 제가 일했던 그 업소가, 그 가게 자체내에서 옷가게랑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서 쪼끔 비싸다하는 그런 shop이었어요. 그 쪽에 옷을 의무적으로 한 달에 세 번 씩 입어 줬어야 했거든요. 그 때 당시 제가 한참 어릴 때인데 기본 옷값이 한 벌에 7, 80[만원]이 었거든요. 그거를 3번씩 감당을 하다보니까… 안 입으면 테이블에 못 들어가요, 안 넣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입어야 하니까 어쩔 수없이 그 때부터 쪼끔씩 쪼끔씩 불기 시작했죠."

"(처음에 선불금은 얼마였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1800[만원], (그 방석집에서는 지금 몇 년 일하셨어요?) 5년. 5년, 6년. (1800에서 5년 일하니까그 빚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3000 넘었죠."(③, 룸살롱)

성매매여성들의 월수입이 3, 400만원 내지 700만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언론의 보도는, 여성이 받게 되는 돈이 아니라 벌게 되는 돈이라는 단 서가 붙는다면 사실이다. 그러나 성매매과정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각종 물품 등 기본적인 투자비의 부담은 업주가 아니라 성매매여성이 하게 된다. 게다 가 휴일 없이 거의 매일 밤새도록 일해야 하는 성매매여성의 상황상 결근이 나 지각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각종 벌금이 부과되 는 것 역시 성매매여성의 부담을 크게 늘려. 실제 여성들은 자신이 한달 벌게 되는 돈을 모두 물품비 내지 벌금으로 쓰게 되거나 오히려 더 빚을 지게 되 는 상황에 놓인다. 반면에 초기에 투자만 한다면 중간에 비용을 쓸 필요가 거의 없는 업주가 벌게 되는 수입은 막대할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성매매여 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통해 업주는 성매매여성들의 자유를 구 속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얻게 되는 것이다.

2) 경제적 맞보증

같은 업소 내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동료들 사이에 맞보증이 이루 어지는가, 원치 않는데도 맞보증을 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부분 은 업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불금 등 빚이 많으면 맞보증을 서라고 하지도 않는데 3종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룸살롱 등 2종 에서는 아는 사이에 서로 서기도 하는데, 그것은 선불금으로 인한 빚에 대한 보증이다.

"보통 마담 따라 가면 마담이 보증을 해주는데, 친구들이 갈 경우에는 서로 보증 하라고 하죠. 그래서 마담들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애들 보증 을 안 해줄라 하는 게, 서른 살, 마흔 살짜리 마담 언니들도 많은데, 아가씨 도망 가가지고 빚을 떠안으면, 업주는 어차피 손해 볼 게 없어요. 아가씨가 도망을 가든 말든 업주는, 보증 선 사람이 책임을 지니까 민사적으로 나가 면. 술값 같은 경우도 100만원 나오면 마담이 30% 갖고 가고 업주가 70% 갖고 가요."*(つ, 룸살롱)*

"맞보증 많이 섰죠.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는 친구끼리 맞보증 세우고. 맞보 증 섰는데 한 애가 도망가 버리면 다 내가 뒤집어쓰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 이 다 빚이 되는 거죠. 걔 빚이 100만원인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빚이 많 은 사람도 있어요. 뒤집어쓰면 한 1000만원 2000만원."(ⓒ, *티켓다방*)

결국은 선불금에 의해 업주와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되고, 어떠한 발언 권도 없이 당하게 된다. 그리고 업주는 종업원의 빚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맞보증을 서도록 요구하기도 함으로써 빚의 속박에서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드 는 것이다.

다. 직무상 신체적/ 심리적 폭력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은 이것은 이동 혹은 이주의 자유, 개인적 선택의 자유의 박탈을 포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업무상 강압적 분위기로 인한 성매매의 강요, 업주, 혹은 손님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및 위협, 심리적 폭력, 생리중 성매매의 강요, 그리고 도망 시도시 실패에 따른 폭력을 보고자 한다.

1) 강압적 분위기로 인한 성매매 강요

"2차가 없다고 말했었는데 2차가 거의 있었어요. 일단 2차를 제가 거절해도 노래방에서 업주한테 전화해서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허락을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업주는 다 오케이 했는데 노래방에서 그래도 죽어도 꼭 2차 보내야겠다. 하면 업주한테 전화하는데, 노래방에서 [내가] 거절하면 안 보냈어요."(②, 보도방)

사례 ②의 이야기처럼, 보도방에서 노래방주점으로 나간 경우에도 업주의 강요 및 노래방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성매매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 ② 역시 업주가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2차를 강요당했으며, 끝까지 거부하는 바람에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3종 집결지에서 일어나는 업주의 폭행에 비해 성매매(2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2종의 노래방 주점이나 룸살롱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2차의 강요와 폭행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이후 3종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오히려 줄었으나 2종에서 폭행 및 협박에 의한 성매매 강요는 여전히 심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맨 처음 노래방주점에 가서, 엄마가 400(만원)을 땡겨가지고 갔는데, 그 다 음에……. 얘기 전혀 못 듣고, 2차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2차 나가게 했어요?) 예. 사장이, '너네 엄마가 내보내도 된다고 그랬는데, 너 그 딴 식 으로 하면은, 진짜 너네 엄마한테 돈 다시 내놓고 가라 한다. 너네 엄마가 돈 얼마나 땡겨 간줄 아냐'고. 거의 협박이죠. 그래서 한 번 나갔어요. 나간 날 손님한테 되게 두들겨 맞고 왔고요. 그때부터는 거의 협박에 의해서 나 갔다 온 거 같아요."((i), 노래방주점)

"억지로 나가 면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서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하기 싫을 때 뿌리치잖아요. 그럼 그 날은 엄청 두들겨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손님한테?) 네 손님한테. 그리고 업주도, 업주한테 가기 싫다 그러면 "씨발 년아 네가 돈 벌러 나왔지 그거 아끼려고 나왔냐. 고 그러면서 손찌검을 당 해요. 몇 대 맞지만. 그러고 나가요."(⑪, 룸살롱)

2) 신체적 폭력

가) 손님으로부터의 폭력

손님에 의해 폭언, 폭행 내지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럴 경우 업 소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일단 룸 혹은 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업주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다. 일단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약점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룸, 방안에서 있는 일은 터치를 안 해요. 그, 그까 저도 화장실 들어가서 성폭행 당한 적도 많고요. 남자 화장실 방방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한 번 은 제가 혼자 있었는데 세 명의 남자가… 돌아가면서 저한테 별짓을 다 하 는 거예요. 섹스 강제로 막, 막 하고. 그래도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내가 나중에 나와서 울면서 얘기를 해도, '지나간 건데 어쩌겠냐?' 뭐 이 런 식으로 그냥 넘겨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고. 그 방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손님한테 잘 못 보이면 내가 팁이 안 나오니까. 그리 고 더구나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자주 오는 손님들 같은 경우는 가 게에서는 이만큼이라도 실수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뭐 할말이 없죠."(①, 룸살롱)

"경찰에 신고도 못하는 거죠. 일단은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했

기 때문에. 그게 개인이. 간섭을 하는데 만약에 손님하고 싸움이 났으면 돈을 줘가지고 다시 보내요. 그럼 고생을 한두 시간 했던 거 그게 다 허사가되는 거잖아요."(⑤, 집결지)

"업주가. 그 노래방 주인이 업주한테 2차 되냐고, 그 업주는 '아. 하라고', 근데 정말 싫었는데도 끌려나오잖아요, 남자 손님들한테. [그러면] 얼굴 찡그리고 인상 쓰고 욕하고 그러니까 차에서 맞았어요. 차에서. (웃으며) 자기네들이 꼴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지가 돈 내는 건데."(②, 보도)

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부위의 상해

여성은 생리구조상 임신과 출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등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와 모성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의 경우 여성의 생식기에 대한 이상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치료의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혹사시킨다. 성매매 과정에서 생긴 약한 부위의 상해는 이후 치료를 한다 해도 여전히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제가 물혹이 있었거든요, 왼쪽 난소에. 물혹이 있었는데, 크지는 않은 거였는데, 빼지 않아도 될 정돈데, 이제 갑자기 성관계를 많이 하니까 물혹이 터졌어요. 그래갔고 배가 너무 아파갔고 막 붙잡고 다니면서 나 일 못하겠다고 계속 실장님 쫓아다니면서 나 일 못해요, 못해요, 하고 있는데, 계속 안된대요. '하나만, 하나만 더해. 하나만 더해.' 해갖고 그날 [성매매] 일곱 개를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너무 아파갖고 나중에는 약을 먹고 쉬라 그래서, 일곱 개하고 약 먹고 쉬다가 병원에 갔어요, 다음날. 그랬더니 물혹이 터졌다는 거예요. 딱 보더니 물혹이 터진 것 같다고. 자궁에 물이 꽉 차고 왼쪽 난소 찌그러진 게 물혹이 터진 것 같다고. 그래갖고성관계를 갖지 말래요. 이거 물을 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빠지게 둬야 된다고. 근데도 일을 했어요."(②, 마사지업소)

"술도 장난 아니게 마셔가지고 심장이 약하대요. 심장이 안 좋아서 주사도 맞고 그래야 된대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영양제 맞아야 한대여. 엄마(이 사례에서는 친엄마가 업주로서 딸의 선불금을 가로 채기도 하였음)가 아~무슨 이런 돌팔이 같은 의사가 다 있냐고 애가열 몇 살인데 무슨 심장이 약하냐고. 그냥 감기기운이니까 주사나 한대 놔주고 가라고.

자궁은 괜찮대요. 염증 쪼금 있는데 괜찮다 그래서 치료해서 나왔거든요. 이 제 …….엄마한테 하도 맞아 아직 후유증은 좀 있어요. 엄마한테 코를 잘못 맞아 가꾸요. 코가 툭하면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요. 그거 빼고는 다른 건 없고 그니까 엄마가 손으로 때리면은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는데 거의 재떨 이 집어 던지고……. 자기 힘으로는 못 때리겠으니까 막 옆에 있는 물건 던 지고 그런 것 땜에 더."(②, 티켓다방)

다) 업주에 의한 신체적 폭력

업주 등의 폭언, 폭행 내지 업주에 의한 성폭력의 경험에 대해서 언어적 폭 력은 다반사이며, 성폭력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 역시 빈번하다. 그러나 역시 빚 때문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날은 되게 늦게,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동생이랑 저랑 같이 나오게 됐어요. 사장님도 그 때 나왔어요. 집이 어디냐고. 그래서 그냥 여기 근처라고, 타고 가겠다고 그냥 그랬더니, 타래요. 자기가 태워 줄 테니 까. 사장님 술 드신 것 같은데 우리 그냥 갈게요. 그랬더니, 타래요. 그래가 지고 탔어요. 그까 성격이 보통 성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타면 한 번 맞겠 더라고요. 그래서 탔는데 우리 집이 더 가까운데 동생 먼저 태워주는 거예 요. 그리고 동생 내린 다음에 날 성폭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 세요.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따귀를 한 대 때리더라고요. 빚도 많은 년이 말 이 많냐고, 너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어? 야. 뭐 돈이 필요 해? 50만원."(*③*, *룸살롱*)

집결지에서는 구타나 폭언, 폭행은 다반사이다. 그러나 꼼짝을 할 수 없다. 술에서 이윤이 많이 남으므로 매상을 강요한다.

"술은 맥주 박스가 기본으로 들어간다. 업주에게는 이러한 술 판매가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아가씨들에게 술을 많이 팔도록 강요한다. 한 시간 노래 하는 동안 한 박스만 소비되면 욕설을 듣게 된다."(②, 노래방 주점)

"3종 같은 경우는 구타가 있잖아요. 구타도 있고, 욕도 장난 아닌… 완전 기 계에요, 기계. 사람이 아니고……. 도망 나오려고 하는 게 마담 구타 때문에 도 있었죠. 이제, 이렇게 박스 떼기로 들어가요. 맥주 슈퍼[마켓]에 박스 있 는 거 알죠. 만약 2명이서 들어가잖아요, 아가씨 2명이서. 2대 2로 딱 들어가 면 20분 안에 끝내야 되요. 그거를, 술을 다 마셔야 되요. (컵을 버리는 흉내 를 내며)버리던가 아니면 작업을 하던가. 만약에 20분 지났는데 박스가 안나오잖아요, 밖으로. 술이 더 추가가 안되면 마담이 이제 문 앞에서 헛기침해요. 으흠, 으흠, 이래요. 그럼 나오란 말이야. 그러면서 막쳐요. 싸대기 치고, 재떨이로. 그리고 거긴 재떨이가 우동그릇 같은 거거든요. 재떨이로 막머리 치고, 빨리 추가하라고. 술 빨리 안 끝내고 뭐하냐고 막이래요. 무서워서… 손님이 안마시면 내가 다마셔야죠. 아니면 버리던가… 오바이트 해가면서 마셔야 되는데요. "(⑥, 집결지)

"업주들은 지네들은, 손찌검 아니면 던지는 거 아니면 옆에 빳다 같은 것으로, 얼굴에는 상처 안 나게 때려요. 다 이런 데 가릴 수 있는 부분만 때려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거]그런 거 못 해요. 어떤 언니가나 말고 나는 손찌검으로 몇 대 맞은 거 밖에 없는데 그 언니는 진짜 빳다로 맞고 가는[죽는] 줄 알았어요... 손님하고 싸움이 났는데 손님한테 막 욕했나 봐요. 그 언니가 "이 개새끼야. 나 오늘은 못나가겠다고." 그런 말 한마다한 거뿐인데 사장이 와 갖고.막. 손님이 보는데, 손님이 때리지 못하게 일부러 때린 거 같은데 그렇게 죽을 만치 때릴 필요까진 없었는데 그렇게 때려 갖고 손님이 겁에 질려갔고 나갔어요. 그 언니는 집에서 며칠 쉬다가 다시 딴데로 갔나 봐요. 안 보이더라구요.."(②, 룸살롱)

3) 생리중 성매매 강요

휴가, 병가, 근무 중 휴식시간을 본인이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가? 실제이용한 적이 있는가? 생리 중이나 임신 중에도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당한적이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면접 대상여성은 생리 중에도 성매매는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2차 요청을 대비하기 위해항상 피임약을 복용해야 하며, 생리 등을 핑계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한편 낙태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업주에게 강요당하지는 않으나 본인 스스로가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기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아니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뭐 좀 심해야 돼요.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업주가 딱 생각했을 때 쟤는 손님을 못 받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 쉬고요. 그리고 좀 아파서 쉬어도 마음이 불편한 게, 거기는 손님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딱, 아파서 쉬고 있는데도, 깨워서 안마를 치라고 그래요. 뒷손 봐달라고, 안마 좀 해달라고. 아파서 쉬는 사람한테."(②, 마사지업소)

"생리 중엔 당연히 하구요. 피임약을 먹었어요. 꾸준히 먹어서 계속 먹으면 생리가 계속 밀려요. 안 나와요, 계속 먹으면. 생리약, 피임약을 끊으면 생리 가 나오는데,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솜을 끼는 거예요. 솜을 밑에다 넣 고 연애를 하고 빼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쳐줘요."(⑥, 집결지)

"16살 때 임신해가지고 바로 병원 가서 애 지운다음날 바로 일했어요. 그러 니까 애 지우고 나서, 이제 지웠으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일 들어 가가지구 하구 그랬어요. 수술비는 제 월급에서 까고."(), *노래방* 주점)

4) 업주에 의한 심리적 폭력

심리적 폭력이라 함은 외출 및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제한, 외모에 대한 압 박으로 매출 강요, 무리한 다이어트 요구, 매상강요, 그리고 외출에 대한 감 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업소 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외박은 자유롭게 허용되었는가? 에 대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가능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서 불가능하다는 것 이다.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낮에 나갔다 오면 쉬지 못하므로 밤에 일을 못하기 때문이다.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술 같은 거 못 먹게 하구요. 시간대가 보면 아침에 일 이 끝나서, 낮에도 거기는 손님이 들어와요. 순번이 되면 낮에도 옷을 입고 일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아가씨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 못 나가니까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나가도 한 두 시간 있다가 들어와야 되 요. 빚이 없는 아가씨는 그나마 좀 편하게 나가는데, 빚이 있는 애들은 나가 지 말라고 터치를 하니까, 웬만큼 아프지 않는 이상은 처음에는 내보내지도 않고요. 처음 가게 들어왔을 때는 웬만큼 아프지 않는 이상은 안 내보내거 든요."(*⑤, 마사자*)

일단은 치장을 해야 하므로 외모에 대해, 그리고 꾸밈에 대한 간섭이 심하 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업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용하기도 어렵다.

"꾸미면 꾸밀수록 돈이 잘 벌리는 건 있어요. 전화로 잘 불려 나가기 위해서

꾸미는 게 아니라 업주 언니가 시켰어요. 머리 쪽은 별로 안 그랬던 거 같았는데 옷 쪽이나 구두 이런 거. 너는 이런 스타일이 맞으니까 이렇게 입어라. 머리는 이렇게 해라. 근데 옷값이 굉장히 비쌌었어요. [본인이 사가지고] 갖고 와서 입었는데 [업주] 맘에 안 들면 자기가 같이 나가야 돼요. 나가서 같이 고르고."(②, 보도)

비싼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며, 옷, 화장품 같은 물품은 모두 업주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해야만 한다.

"그런 거 안 쓰면 뭐라 그래요. 머리 스타일 하나도 개입하고 발찌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싸 보이는 액세서리를 가리키며)이런 거 하면 안 된다그러고. 악세사리 다 그런 거. 그리고 몽땅 금으로 치장해야 되고 화장품도다 최고급 써야 되고 머리도 제일 잘 하는 데 가서 해야 되고. 하루에 머리값만 해도 만 오천 원이에요. 방판. 방문판매하는 사람들. ○○, △△, □□, 이런 이모들이 오잖아요. 그런 거 써야 되요. 대따 비싸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싸고 좋은 것도 많은데. 자기 친척이고 막 이러니까는 자기 있는 아는사람들 막 하나씩 사라고 막, 안 사면요? 좀 그렇죠. 좀 곤란해지죠."(ⓒ, 티켓다방)

"3종에서는 단체복을 입잖아요. 유니폼 입잖아요. 한 달에 다섯, 여섯 개씩 맞춰요. 여름 건 쫌 싸요. 한 7, 8만원 이라는데, 겨울 건 2, 30만원 막 이래요. 그걸 한 달에 몇 번씩 맞춘다고 생각하면 얼만데, 돈이…"(ⓒ, 집결지)

무리한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식의 언어적 폭력, 강압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살이 많이 찐 건데, 화장. 제가 화장을 잘 안 해요. 그래갖고 화장 표 나게 해라는 소리 많이 듣고, 그리고 전 조금 옷을 수수하게 입는 편인데, 옷을 좀 더 야하게 입히려고 하고. 그리고 평택에 있을 때는 다이어트도 시켰어요. 제가 마른 편인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먹는 것 갖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②마사지업소)

"저는 3종에서 하루 한 끼 먹고 살았어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리고 그, 맥주도 아닌 맥주, 쓰레기. 맥주 찌꺼기인 거 알죠. 아이비라이트 막이런 거. 3종 술. 업소 술. 그거 마셔요. 안주 같은 것도 못 집어 먹어요. 집어 먹으면 혼나요. 술 먹으면 술이 살찌잖아요, 그러니까요. 안주까지 먹으

면 더 살찐다고. 술만 먹어야 되요. 아침마다 줄넘기 2천개씩 하고 자야 되 요. (웃음) 영업이 6시에 끝나잖아요. 아침 6시에 끝날 때도 있고, 7시에 끝 날 때도 있어요. 술이 떡 되도 줄넘기 하고 자야 되요. 살찐다고."(*它*, *집결 X*/)

노래방 주점은 노래방에 온 손님들이 술을 시키고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들 을 부르는 형태이다. 한 시간에 아가씨를 부르는 비용은 2만원 내지 2만 5천 원(아주 저렴한 편) 인데, 저렴한 비용으로 아가씨와 술 마시고 놀기를 원하 는 손님들이 주로 이용한다. 술에서 이윤이 많이 남으므로 업주는 폭력을 사 용하면서까지 매상을 강요한다. 사례 리의 경우, 노래방주점에서 술은 맥주 박스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업주에게는 이러한 술 판매가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아가씨들에게 술을 많이 팔도록 강요한다고 한다. 한 시간 노래하는 동안 한 박스만 팔게 되면 바로 욕설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집결지에서는 외출에 대한 감시가 심한데, 외출을 하더라도 함께 하고, 업 주에 의해 혹은 동료가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차타고 가는 것은 거의 안 되었어요. 혼자 나 어디 좀 나갔다 오면 안 되나 그러면 "가자" 이러고. 같이 가고. 언니들은요 빚이 없다면서. 너만 빚 있다 고. 거의. 그래갖고 저 쫄았었어요."(🕗, 노래방 주점)

"3종은 단체생활이에요. 못 나가게, 목욕탕 가면 하다못해 목욕탕 키도 다 뺐는데. 갈까봐. 다 같이 가죠. 다 같이 가고 이제 업주가 키 다 뺐고…"(©. 집결지)

"보도에는 여자가 다섯 명인데 업주 언니 하나……. 업주언니는 못나가게 감시를 해요. 그 언니는 새벽에 한 타임만 뛰어요. 자기 지정손님한테만. 그 렇게 하고. 그 언니가 잠깐 나간사이에 남자애들이 감시해요. 빚도 없고 아 무것도 없는데 저희 없으면 일이 안되잖아요. 일단 나가려고 하면 어디 가 냐고 그런 식으로 다 물어보고, 핸드폰 저희한테 쥐어줘요. 자기네들꺼. 자 기 핸드폰 하나씩 쥐어준 다음에 전화 안받으면 안 된다고. 자기네는 장사 해야 되니까 30분에 한번씩 꼬박꼬박 전화가 와요. 딴말은 안하구요. 뭐하는 데 안 받냐 어디냐."(②, 보도)

"시도는. 나오려고 큰 맘 먹고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성매매방지법이 없었잖아요. 요번에 해가지고 개선된 거잖아요. 시도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용기는 많이 안 났어요. 요번에도 주위자체가 감금이 너무 심한 거에 좀 저기도 하고. 요번에 주인이랑 치과 갔다 오면서 이리로 온 거거든요. 자체가 감금이 심했는데 더 감금이 심한 거예요. 사람이 몰라도 그 느낌으론 알잖아요. 그 감금상태가 더 심한 거예요. 이빨 아프다 해도 치과도 안보내주고 그걸 약을 또 사다 주대요. 또 6만원을 줬어요. 약값으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검진 갔다 와가지고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치과를 갔다 오면서 그대로 튄 거예요. 제가 진짜 어렵게 탈출했어요."(⑤, 집결지)

"거기서요? 거기서는 나는 외출도 꿈도 못 꿨어요. 월요일 날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날이거든요. 검진하는 날 외에는 내가 나갈 일이 없었어요. 외출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꿈도 못 꿨어요. 감금 자체는요. 별다른 게 감금이 아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아가씨가 네 명이었잖아요. 세 명 같은 경우는 참자유로워요. 외출이. 나는 그다지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감금자체가 심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10달 넘으면 외출 자체가 엄청 자유롭거든요. 근데 그 집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항상 내가 병원 같은 데 다닐 때는 남자 업주가 따라다녔어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오래 있고 믿을 만한 사람 이었나봐요. 나는 못 믿겠다하는 식으로 남자 업주가 거의따라다녔어요."(③,집결지)

이 일을 그만두려고 시도하려고 결심했거나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집결지에 있을 때 도망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는 소위 '삼촌'들이 깔려 있어, 도망치는 기미만 보이면, 그대로 잡혀 들어간다는 것이다.

"도망도 몇 번 했어요. 진짜 막. 한번은. 설마 또 보낼까 이랬는데, 엄마가 주위사람들한테 얘 잡으면 얼마 줄 테니까, 얘가 빚 당겨서 도망간 년이라고,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 때문에 잡히고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살았었어요."(ⓒ, 집결지)

라. 신분증 압류

ILO협약에서의 '강요된 노동'의 기준 중 하나인 신분증 압류는 업주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개인 신분증명서를 압수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매매여성들의 신분을 업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업주들은 여성들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빚에 대한 담보의 형태로 맡아 둔다. 집결지 등 3종에서 여성들, 특히 외국인 여성의 신체 및 이동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빼앗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왔다.

"주민등록증을 업주가 가지고 있는 일은 너무 많죠. 대부분 처음 여성들이 업소로 들어오면 도망가지 못하게 주민등록증을 압수해요. 미아리 화재사건때 경찰에서 여성들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니까 업주가한꺼번에 들고 와서 경찰에게 주더라구요. 심지어 단속할 때도 (경찰에) 업주에게 신분증을 받는 건 다반사에요."(새움터 간사)

본 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1종, 2종, 3종 모두에서 선불금이 있는 성매 매여성들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업주에게 맡겨놔야 하는 등의 일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불금에 대한 차용증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압수된 신분증은 심지어 업주에 의해 탈세 등의 용도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업주는 압수된 신분증으로 **주식회사 등 거짓상호로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거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일을 하기도 한다.

마. 기타: 공권력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

그렇다면 경찰한테 신고를 할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에서 안타 깝게도 도망을 시도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이나 다른 사람을 근본적으 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이후 경찰에 대한 신뢰 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망을 시도한 시점에서 경찰 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성매매방지법상에 보면 일단 성매매는 불법이므로 처벌을 받는다는 판단도 하게 된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못하는 것은 나보다는 엄마 말을 더 믿는 편이었어 요.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건 '이년이 미쳐서 거짓말하는 거다' 이러면은 '어린애가 참 젊은 나이에 미쳤다'이러지 사람들이 엄마 말을 믿지 절대. 나 이 어리다는 걸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또 업주들이요. 업주들이 웃긴 게 경찰들이랑 엄청 친하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와서 술 먹구요, 똑같이 놀아요. 일반인들이랑 똑같이 놀고. 그러고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단 듯이 나와요. 2차도 받고, 그러구서는 업주들이 내가 이래저래 해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단속 뜬다고 이 러면 경찰들이 미리미리 다 업주들한테 전화하구 알려줘요. 도망 몇 번 치 다가 잡혀서 포기."(⑪, 티켓다방, 룸살롱)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요. 그 사람들이 주인이랑한통속인거 같아요. 괜히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경찰한테신고할 생각은 꿈도 못 꿨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가지고. 믿지 못 하겠더라고."(⑤, 집결지)

6. 소결

앞에서 살펴본 성매매에서의 강제적 요소는 업종을 불문하고 전업종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 업종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IV-3>.

우선 허위의 노동조건 제공에서, 첫째, 근로조건, 특히 성매매(2차)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1, 2종의 경우 2차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들으나 어쩔 수 없이 2차를 하게 되며, 3종의 경우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고 들어 가나 여타의 다른 정보(임금이나 비용 등)를 알지 못하고 들어가게 된다. 둘 째, 근로계약으로서 차용증의 작성에 관해서는 1, 2, 3종 모두 선불금이 없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나, 선불금이 있는 경우 차용증으로 근로계약문 서가 대체된다. 셋째, 지각, 결근에 대한 일방적 벌칙 규정에 관해서는 1, 2종 의 경우 매주 1일의 휴가만 허용되며 그 외의 지각과 결근에 대해서는 일정 한 벌금규칙이 있고, 3종의 경우 매월 1-2일 내지 3개월마다 1일의 휴가 이 외에 지각과 결근에 대해서 벌금이 있다. 넷째, 1, 2, 3종 모두 일방적인 수입 의 분배구조가 존재하는데, 표면상으로는 업주와 여성 사이에 수입의 분배비 율이 5대 5이나, 기본적인 숙식비, 성매매를 위한 일체의 물품비는 여성이 부 담하기 때문에 실제 분배 비율은 8대 2 정도이다. 1종의 경우 월급제, 2종의 경우 선불제 가불형식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실제 비율은 큰 변화가 없으며, 3종의 경우 월급체불이 빈번하다. 다섯째, 일의 시작과 종료 결정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1, 2, 3종 모두 불합리한 수입의 분배로 시일이 오래될수록 빚이 늘 어나게 되어 일을 그만두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빚의 굴레 속으로 옭아매는 경제적 속박에서, 첫째 선불금의 구조에 관해서는, 1, 2, 3 종 모두 선불금이 있는 경우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수입을 받기 어려우며 전혀 수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선불금이 없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수입의 분배로 빚이 늘어나게 되어 선불금 있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둘째, 경제적 맞보증의 경우 1종에서는 찾기 어려웠으나 2, 3종의 경우 선불금이 있는 여성들인 경우 맞보증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직무상 신체적·심리적 폭력에서, 첫째 강압에 의한 성매매강요에 관해서는, 1종의 경우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할 때 본인이 자신의 시간을 구매하는 일명 '자살봉' 등으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나, 그러할 경우 과중한 금액이 부과되어 빚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속박되는 모순적인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성매매 강요를 피하기 어렵다. 2종의 경우, 업주의 욕설 등 심리적인 폭력과 폭행 내지 협박 등 신체적인 폭력 등에 의한 2차의 강요가 존재한다. 3종의 경우 전통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한 신체적 폭력이 있어 왔으나, 성매매방지법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둘째, 신체적 폭력에 관해서, 2, 3종의 경우 업주와 손님에 의한 신체적 폭력이 존재하고 1종의 경우 손님과 업주에 의한 폭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셋째, 생리중 성매매 강요는 1, 2종의 경우 거의 없으나, 3종의 경우 솜을 이용해 자궁을 틀어막고 하도록 강요하는 식으로 존재한다. 넷째, 심리적 폭력에 관해서는, 1종의 경우 외양에 대한 강요가 있어 자살봉을 끊게끔 한다. 2, 3종의 경우 다이어트 등 외양에 대한 강요, 매출에 대한 강요가 있으며 선불금이 있는 경우 외출에 대한 감시가 존재한다.

신분증 압류에 관해서는 1, 2, 3 종 모두 주민등록증을 맡기는 등의 업주에 의한 신분증 압수가 있었으며, 선불금이 있는 경우 더욱 그러했다.

마지막으로 공권력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이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컸으며, 특히 성매매방지법상 탈성매매하지 않는 이상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어떠한 유형의 업소라 할지라도 성매매 피해여성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적 요소에 대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피해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허위로 노동조건이 제공되었는가, 빚의 굴레 속박된 상태는 어떠한가, 직무상 신체적, 심리적 폭력은 어떠한가, 신분증을 압류당했는가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고, 이중에서 어느 형태라도 강제적 요소가 있다면 이는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정도를가능하는 조사지침은 VI장의 정책제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표 IV-3> 업종에 따른 강제적 요소의 분류

		1종	2종	3종	
	근무조건정보 제공여부	2차가 필수적이지 수 없이 2차를 하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됨.		
	근로계약(차용증) 선불금이 있는 경우 차용증으로 근로계약문서가 대			약문서가 대체됨.	
허위 노동조건	지각, 결근에 대한 일방적 벌칙 규정	매주 1일 휴가 이외에 지각비와 결근비 있음. 3개 ⁴ 의 국 지각		매월 1-2일 내지 3개월마다 1일 의 휴가 이외에 지각비와 결근비 있음.	
제공	일방적인 수입의 분배구조	표면상으로는 5:5이나 실제 비율은 2:8정도. 기본적인 숙식비, 성매매를 위한 일체의 물품비는 여성이 부담.			
		월급제를 시행하 기도 함.	선불제 가불 형식의 월급제 시행으로 빚 을 더 늘리기도 함.	월급체불이 빈번 함.	
	일의 시작과 종료 결정의 어려움	불합리한 수입의 분배로 시일이 오래될수록 빚이 늘어나게 되어 일을 그만두기 어려움.			
빚의 굴레 (경제적	선불금의 구조	- 선불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입을 받기 어려움. - 선불금이 없더라도 불합리한 수입의 분배로 빚이 늘어나게 되어 선불금 있는 효과 발생.			
속박)	경제적 맞보증	거의 없음. 선불금이 있는 경우		맞보증을 강요함.	
직무상	강압에 의한 성매매강요	성매매를 강요할 때 자살봉 등 피 할 수 있는 여지 가 있으나, 그러 할 경우 빚이 늘 게 됨.	심리적 내지 신체 적 폭력(폭행 및 협 박)에 의한 2차 강 요 존재.	성매매를 강요하 기 위한 신체적 폭력이 있었으나, 성매매방지법 이 후 감소추세.	
신체적/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손님과 업주에 의 한 폭력이 상대적 으로 덜함.	업주와 손님에 의한 신체적 폭력이 존 재.	업주와 손님에 의한 신체적 폭 력이 존재.	
	생리중 성매매 강요	거의 없음.		있음.	
	심리적 폭력	매출에 대한 강요 있음(자살봉). 다이어트 등 외양에 대한 강요, 매출 매상 강요, 선불금있는 경우 외출 7 있음.			
신분증 압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맡김	있음(선불금이 있는 경우 특히 그러함).			
기타	공권력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	-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큼. - 성매매방지법 상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큼.			



스웨덴의 성매매여성 비범죄화가 주는 함의*

1. 스웨덴의 성매매 규제의 역사와 현재 126

2. '스웨덴 모델'의 효과와 문제점 133

3. 스웨덴 모델이 한국에 주는 함의 140

^{*} 본 장은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1일까지 스웨덴 현지 조사기간 중 수집된 자료와 인터 뷰 내용, 그리고 웹 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인터뷰에 응해 주 신 Agneta Borg (Prositution Center Stockholm), Mildred Hedberg (ROKS), Viveca Lang, Gunilla Berglund (Ministry of Justice), Claes Lundquist (Kvinoforum), Cajsa Ojakangas (Citypolice Department in Stockholm), Don Kulick (Professor of Anthropology, New York University), Gunilla Ekberg (Ministry of Industry) 에게 감사드린다.

본 장은 이른바 '스웨덴 모델' 즉, 성매매는 금지하지 않고 성적 서비스 구 매만을 금지하는 스웨덴 형법 제6장 제11절의 내용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스웨덴 모델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성매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각국에서 실시된 성매매 정책을 유형별로 정리 하면, 금지주의, 비범죄주의, 합법주의로 나눌 수 있다.27) 금지주의는 성매매 자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판매자,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거나 구매자만을 처벌한다. 비범죄주의는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하여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 는다. 합법적 규제주의는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통제하 는 정책을 말한다.28)

이처럼 각 나라의 성매매 정책은 그 통제의 방법과 입법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성매매여성의 인권 보호와 성산업의 억제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성매매 정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웨덴 모델을 검토 대상으로 한 것은 스웨덴 모델, 즉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전략이 우리사회의 성매매 정책의 지향점으로 인식 되고 있고. 성매매방지법상의 '피해자' 개념도 스웨덴 모델이 아이디어를 제 공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성매매 정책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성매매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구매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 성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²⁷⁾ 국가마다 성매매 정책에는 차이가 있으나 알선 및 착취행위, 인신매매 등 강제와 기 망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²⁸⁾ 금지주의 국가로는 스웨덴,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 태국,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한국 등을 들 수 있다. 비범죄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영국, 노르 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 주 등을 들 수 있다. 합법적 규제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로는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호주 빅토리아 주, 멕 시코, 캐나다, 미국 네바다 주 등을 들 수 있다. 원미혜, 「성매매 감소와 성판매자의 인권을 위한 모색: 해외의 경우, 『황해문학』 2005년 봄호, 99쪽.

이런 전략에는 성매매 감소를 위해서는 성을 파는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 등의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스웨덴의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에 관한 법률 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이하 '성구매자처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성구매자처벌법'이 스웨덴 사회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모색한다.

1. 스웨덴의 성매매 규제의 역사와 현재

가. 성매매 관련 법적 규제의 역사: '성구매자처벌법' 제정 과정29)

스웨덴의 성매매 정책은 1847년부터 1918년까지 성판매자인 여성에게 건 강진단을 받을 것과 건강을 증명해 주는 카드를 소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 매매를 인정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를 취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성매매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8년에 '성구매자처벌법'이 제정되기까지 스웨덴에서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은 범죄로서 처벌되었지만 성매매 행위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1) 1977년 성매매위원회

성매매 규제에 대한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77년부터

²⁹⁾ 스웨덴의 성매매 규제정책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Gunilla Ekberg, The Swedish Law That Prohibits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http://action.web.ca/home/catw/attach/Ekberg.pdf2005.4.8; Norwegian Minister of Justice and Police Affairs, "Purchasing Sexual Services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2004, http://odin.dep.no/jd/engelsk/012101-990578/dok-bn.html

이다. 1977년 성매매위원회에 성매매에 반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구매자, 성판매자 또는 그들 양자를 처벌하자는 주장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성적 서비스의 판매 또는 구매를 형사범으로 처벌할 것을 제안하 지 않았다.

성매매 금지에 대한 당시의 주장은 성매매를 금지할 경우 성매매는 지하로 들어갈 것이고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에게 위험을 증가 시킬뿐만 아니라, 성매매 증거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법률의 제정은 정의에 대한 감각을 해칠 것이고 다른 규칙과 법 률에 대한 존경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1977년 성매매 위원회는 정부에 마약 중독의 성판매자로부터 성적 서비스 를 구매하는 행위는 성적 학대로 처벌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2) 1993년 성매매위원회

1993년 성매매 위원회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센터의 설립과 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적 규제를 제안하였다. 성매매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위원회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를 법으로 금 지하는 것은 '규범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경찰과 사회복지부 에서 성판매자와 일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성매매를 형사범으로 하는 것이 성적 서비스의 구매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셋째, 성적 서비 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에 의한 적발과 조사, 법적 처리의 위험은 강 한 방해물이 된다. 넷째, 성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여성들 중 일부는 그것이 불법화된다면 그 일을 포기할 것이다. 다섯째,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은 성 매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많은 여성들이 성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포기할 것이다. 여섯째, 법률로서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등이다.

1993년 성매매 위원회는 "어떠한 성매매도 자발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이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한 이념적 배경이 된다.

위와 같이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를 처벌하자는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자문을 요구 받은 사람 중 많은 이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원의 3/8은 구매자만을 처벌하기를 원했고, 5/8는 성구매자만의 처벌에 반대했다.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했던 자문위원들은 사회보건부, 경찰청, 법무부, 대법관, 검찰총장 등 법적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이다.

3) 여성의 보호를 위한 제안 1997/98:55

1998년에 "여성의 보호"라고 불리는 법률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여성에 대한 학대, 강간, 성희롱, 성적 서비스의 구매와 구매하려는 시도" 등, 명백하게 처벌 가능한 범죄를 좀 더 엄하게 만들었고 범죄로서 구성했다.

자문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구매자만을 처벌하자는 것이 제안되었다.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부터 기인한다.

"성매매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해롭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약 공급, 포주, 학대 등과 같은 범죄는 많은 경우 성매매와 연관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 성판매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다. 따라서 사회를 위해 성매 매에 반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성적 서비스의 구매를 처벌하자 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시적인 성관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은 이유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성을 구매하는 것 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 성매매와 그것의 불법적인 결과들은 효과적으로 제 거될 것이다."

성구매자의 범죄화, 성판매자의 비범죄화, 사회적 대책의 확정 등의 세 개의 요구가 1997년 성매매위원회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로 인해 1998년 이른 바 '스웨덴 모델'로 불리우는 스웨덴 특유의 성매매방지법인 '성구매자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성립된 '성구매자처벌법'의 정치·사회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전 통은 종교적 또는 도덕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해 섹슈얼리티 를 통제하고 규제한다.

둘째, 섹슈얼리티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태도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의 진전이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개인의 성적 행동은 사회의 위계구조의 작 동의 결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는 모든 여성의 지위를 하 락시키고 성매매의 존재는 모든 여성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강화시킨다고 본다. 이와 함께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진전, 즉 국회의 약 50% 를 여성이 차지했다는 현실적인 조건은 별다른 저항없이 '성구매자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했다.

셋째, EU통합에 따른 위기감이다. EU통합은 국경없는 이동의 자유를 허용 한다. 따라서 스웨덴은 유럽에 만연해 있는 인신매매/마약 문제가 스웨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장벽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성구매자처벌 법' 제정은 자국 여성에 의한 성매매 보다 주변국가로부터 인신매매된 여성 들에 의한 성매매 증가에 대한 위기감에 대한 대응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나. '성구매자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성구매자처벌법'(1998:408)의 제정과 개정

1998년에 제정되어 1999년부터 시행된 '성구매자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서 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매하려고 하는 행위는 벌금형이나 6월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30)

'성구매자처벌법'에 의해 스웨덴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성관계는 처벌 가 능한 범죄가 되었다. 처벌되는 범위는 거리, 집결지, 마사지 숍 등에서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모든 형태의 성적 서비스가 포함된다.

'성구매자처벌법'의 일차적 목적은 처벌보다 방지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의 시행과 함께, 경찰에 7백만 스웨덴 크로나(미화 100만 달러)를 , 2003년 에는 성매매,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해 경찰청(The National Board of Police) 에 3년동안 3천만 스웨덴 크로나(미화 4백1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 재원은

³⁰⁾ 스웨덴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양형은 10년이 최고형이다.

성매매에 관한 경찰의 능력과 지식을 강화시키는 교육에 사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강화와 사회적 규범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 등이 진행되었다.

'성구매자처벌법'은 1999년 시행 당시에는 형법의 특별법으로 존재했으나, 2005년 4월부터 형법 제6장 제11절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성구매자로 벌금이나 최고 6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대가의 지불이 약속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지불된 것이라 할지라도 처벌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³¹⁾

2) 법의 주요 개념

성구매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개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보수를 받고 (For compensation)

돈, 마약, 고급스러운 저녁, 선물 또는 다른 형태의 보수가 사전에 합의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아직 지불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지불하기로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 성을 사다 (Obtains Sex)

성을 사는 사람은 처벌된다. 예를 들어 친구나 직장 상사를 위해 위반자를 대신하여 접촉하고 지불하였다면, 1999년 '성구매자처벌법'에 의해서는 처벌되지 않았지만 2005년 개정법에 의해서는 처벌된다.

³¹⁾ Swedish Pental code, chapter 6, section 11. "A person who, in other cases than previously stated in this chapter, obtains o casual sexual relation in exchange for payment shall be sentenced for the purchase of a sexual service to a fine or imprisonment for at most six months. That which is stated in the first section also applies if the payment has been promised or made by someone else."

부정기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 증거가 가지는 하나의 문제는 '확립된' 고객이 성판매자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은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17년 동안 같은 성판매자와 성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것 은 일시적 관계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 관계와 확립된 관계 사이의 경계는 항상 분명하지는 않다.

라) 성적 관계(Sexual Relations)

성적 관계란 일반적으로 성교로 정의된다. 그러나 다른 성적 행위(유사 성교행위)도 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성적 행위 없이 알몸으로 벗고 있거나 포즈를 취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처벌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이나 6월의 징역형이다. 법 시행부터 2004년 까지 성구매자에 대한 벌금은 $150\sim1,200$ 달러였다. 이것은 경미한 절도죄의 벌금과 같은 수준이다.

4) 선고

이 법은 벌금이나 6개월까지의 징역이라는 처벌규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건하에서의 처벌은 벌금형이 된다.

죄를 범한 사람의 재정적 지위와 무관하게 벌금액이 같은 처벌효과를 갖는 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스웨덴에서의 벌금은 일일 벌금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일일 벌금의 크기는 고정된 공식에 의해 그 사람의 재정적 상태에 기초하여 산출된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조건에서 벌금의 총 수는 안정적이다.

스웨덴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인 벌금'은 $50 \sim 75$ 일분의 벌금이고 '연속적인 구매'에 대해서는 150일분의 벌금이 과해진다.

5) 증거의 문제

성구매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은 법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만약 피고가 무죄를 주장한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강력한 증거가 그의 유죄를 주장하기 위해 제출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증거에 대한 요청은 엄격하다. 증거의 어려움은 기소를 취하하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성적 관계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데 합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또한 성적 서비스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경찰이 성적 관계가 있었을 때 개입했다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성행위에 대한 대가가 있었음을 부인하면 승소하기 어렵다.

스웨덴 형사소송법(제36장 제6조)은 성판매자인 그녀가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성구매자가 성구매를 인정하지 않고 성판매자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 거나 관계를 확인하기를 거절하면 검찰이 형사상 유죄라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경찰이 성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개입을 기다린다면 형사상 유죄를 입증하기는 쉬워진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 행위의 예방이라는 경찰의 주된 임무와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성구매를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1999년에 91건이 기소되었고, 이 중 37건이 취하되었다. 기소가 취하된 이유는 <표 V-1>과 같다.

<표 V-1> 1999년에 기소가 취하된 경우에 대한 통계

기소가 취하된 이유	건수	%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	13	35%
증거제출의 어려움	19	51%
의심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음	4	11%
기타	1	3%
1999년의 기소 취하	37	100%

"증거제출의 어려움"은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이다. 전체 취하 건수의 51%가 증거제출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법 시행 이후 5년 동안 120건이 조사되었고, 150~ 1,200달러에 벌금에 처해졌다32).

2. '스웨덴 모델'의 효과와 문제점

가. 성판매자에게 미친 영향

1) 거리 성매매(Street Prostitution)

'성구매자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웨덴의 성매매 종사자는 약 2,500명 으로 그 중 650(26%)명이 거리 성매매 종사자였다. 스웨덴의 보건복지부(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조사에 의하면 1998년부터 1999년 사이, 다시 말해서 법이 시행되기 전후에 성판매자의 수에 변화가 있었다. 1998년 스톡홀름에 약 280명이 거리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999년에 그 수는 170명이 되었다. 고텐버그에서는 1998년에 약 286명의 여 성이 거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1999년에는 90명이었다. 말뫼에 서는 1998년에 약 160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었지만 1999년에는 80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거리에서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수는 법이 시행된 이후 약 절반이 되었다.

스웨덴 주요도시의 거리 성매매 현황은 다음과 같다. 스톡홀름의 경우, 거 리 성매매는 스톡홀름 중앙의 외진 거리인 말므스킬나드가든(Malmskillnadsgaden)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의 성매매 관련 통계는 <표 V-2>와 같다.

^{32) 1}년에 86-110명이 체포되는데 이들 중 3/4는 조사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사되는 경우 에도 65%가 기각된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 체포된 사람의 15%가 자백하고 벌금을 낸 다.

<표 V-2> 스톡홀름 말므스킬나드가든 거리 성매매 실태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 성판매자 수	101	112	112	77	104
전체 외국인 성판매자 수	13	5	5	1	7
조사된 성구매자의 전체수	31	23	18	0	3

자료: Norwegian Minister of Justice and Police Affairs, "Purchasing Sexual Services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2004)

말므스킬나드가든에서 조사된 숫자는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거리에서 성판매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2002년에 보고 된 고객의 수가 제로인 이유는 이 기간동안 경찰의 성매매그룹은 인신매매 프로젝트로 방향이 변화되어 이 기간동안 거리 성매매에 대한 관찰이나 보고서가 없기 때문이다. 관찰자의 수는 적었고(2명) 관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통계는 매우 불확실하다.

말므스킬나드가든에서 성판매자의 숫자는 성매매가 형사범으로 된 이후 감소해왔으며 고객의 숫자 또한 감소하였다.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은 거리에 서 자동차와 남성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한다.

고텐버그의 경우, 알려진 성판매자의 수는 '성구매자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연간 300명에서 현재 연간 100명으로 감소되었다.

마지막으로 말뫼의 경우, 거리 성매매에 관계된 여성은 약 135명으로 추정된다. 하루에 약 30-35명의 여성이 거리에 있다. 말뫼에서는 거리 성매매가넓게 퍼진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서 그 수는 불확실하다.

가) 1998년부터 2003년 사이 스웨덴 거리 성매매 종사자 수의 변화 현재, 고덴버그와 스톡홀름에서는 1999년과 거의 같은 수의 거리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뫼에서는 80명에서 135명으로 증가하였 다. 대도시에서 보여지는 것은 성판매자의 수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비해 눈 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41%). 그리고 거리에서의 성 구매자의 수도 법 시 행 이후 더 줄었다.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후 경찰에 65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경찰들이 성매 매여성들이 있는 거리를 감시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집중단속 결과 거 리의 성매매는 감소하였다.

스웨덴 정부의 보고서인 SoS Report-03은 거리에서의 성매매 감소를 설명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즉 거리에서 성매매가 감소한 것이 '성구매자 처벌법' 때문인지 이동전화와 인터넷의 보급이 성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33)

그러나 아래의 숫자는 단지 거리성매매에 관한 것이다. 다른 형태의 성매 매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통계는 없다.

도시	1998	1999	2003	1998–2003
스톡홀롬(Stockholm)	280	170	190	-32%
고텐버그(Gothenburg)	286	160	100	-65%
말뫼(Malmö)	160	80	135	-15%
합계	726	410	425	-41%

<표 V-3> 거리 성매매 변화 현황

자료: SoS-rapporten 2003.

2) 실내 시장(indoor market)에서의 성매매

거리 성매매와는 달리 실내에 형성된 성매매 시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 는 신뢰할 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 따라서 실내 시장의 모습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스웨덴에서는 2,500명의 성판매자가 존재하고 그 중 1850명은 거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³³⁾ 구닐라 에그버그는 앞의 글에서 인터넷 성매매 증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때문이 지 '성구매자처벌법'의 영향은 아니라고 한다.

여성의 74%가 실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내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의 규모는 더 많을 수 있다.

실내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999년의 법이 거리 성매매여성을 실내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동전화와 인터넷의 보급은 새로운 판매자 집단과 새로운 구매자 집단에 대해 시장이 개방되었다고 한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의 보급은 시간, 장소와 관련되는 한 익명성, 효율성,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성의 판매 기회를 전국으로 개방시켰다. 그러나 성매매가 실내 시장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성구매자 처벌법'의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지, 아니면 전자통신혁명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경찰이 실내성매매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내 성매매 단속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성판매자의 특징 및 법의 효과

스톡홀름에서 거리 성판매자의 나이는 대략 30세로 추정되지만 말므스킬 나드가든에는 이 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도 있다. 크라라가든(Klaragarden) 은 주로 35-45세 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고텐버그에서는 22세에서 25세 사이의 마약 중독자를 제외하면, 25세 이하의 성판매자를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40세 또한 적다.

말뫼의 경찰들은 스톡홀름이나 고텐버그와 비교해서 여성들이 더 젊다고 한다. 평균 나이가 최근에 떨어졌고, 지금은 20세에서 25세 사이가 많다. 이 들 중 많은 수는 마약 중독자이다.

18세 이하의 어린 소녀들은 거의 볼 수가 없다. 고텐버그에서는 2003년 18세 이하의 5명의 성판매자가 있었다. 가장 어린 나이는 14세였다.

아그네타 보그(Agneta Borg, 스톡홀룸 성매매 센타)는 스웨덴의 장점은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아도 다른 것을 할 수 있고, 가난해서 생계를 위해 성매 매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스웨덴의 성매매여성은 마약 중독과 폭 력의 희생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페트라 오스터그랜 (Petra Ostergren, 자유기고가)은 성매매여성을 마약 중독과 폭력의 희생자로 일반화시키는 것이야 말로 성판매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비판한다. 성산업에 오랫동안 남아 있으려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여성이어야 하고, 많은 기술 (위험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예측등)이 요구된다. 정신적, 감정적으로 그리고 마약에 의해 판단이 방해 받는다면 이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성매매여성들은 그것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판매를 시작할 때 마약의 영향 하에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성판매 여성들은 고객뿐만 아니라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한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성구매자처벌법' 시행 전후에 체계적인 기록이나 조사는 없다. 성판매자에 대한 폭력으로 야기된 부상자에 대해 병원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스톡홀름 경찰은 폭력의 사례에 대한 증가 혹은 감소를확신할 수가 없다고 한다.

페트라 오스터그렌은 그녀가 인터뷰했던 성판매 여성들은 '성구매자처벌법' 시행 이후 그들 스스로 폭력에 좀 더 노출되었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들이 폭력에 좀 더 노출되었다는 기록이나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녀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명백하게 가장약자인 그룹(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에성매매는 고착화된다.34)

³⁴⁾ 돈 큐릭(Don Kulick, 뉴욕대학 교수)은 스웨덴의 '성구매자처벌법'은 거리성매매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거리성매매에 대한 법의 결과로는 ① 위험한 성구매자의 증가, ②성병이나 HIV 감염 위험의 증가 (콘돔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됨에 따라), ③사회복지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의 증가, ④ 경찰의 성희롱 증가, ⑤ 인터넷 성광고의 증가, ⑥ 성구매자 자신이 범죄 자이기 때문에 인신매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음 등을 들고 있다.

나. 성구매자에게 미친 영향

1) 성구매자의 특징

1998년 스웨덴의 "Sex in Sweden"이라는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돈이나다른 보상을 하고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2,810명중 187명(12.7%)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스웨덴 남성의 1/8이 성적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18세 이상의 400,000명 이상의 남성이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숫자는 스웨덴에 널리 알려졌고, 2002년 정부 재정지원하에 성구매가 범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이끌게 했다.

스웨덴에서 성구매자는 성판매자와 같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규정된다. 4명의 사회복지사에 의해 쓰여 진 "The Sex Buyer"(1996년)에는 성을 구매한 적이 있는 40명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성구매자는 인격이 정상으로부터 벗어났거나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한다 (Don Kulick, 2004).

그러나, 스톡홀롬 경찰청의 오자칸가스(Ojakangas)은 스웨덴에서 최근 화제가 된 대법원 판사가 성구매를 이유로 체포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성구매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직장이 있는 그런 남성이 성구매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견해로는 아네타 보그는 "성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성을 사는 남자들은 무능한 남성"이라고 했다.

2) 성구매자에게 미친 영향

돈 큐릭은 '성구매자처벌법'은 성구매자 사이의 계급화를 가속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주변국가로 가서 그 나라 여성 또는 스웨덴 여성을 구매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³⁵⁾ 그러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는 성구매자들은 가장 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 신매매 여성들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이다.

³⁵⁾ 구릴라 에그버그는 앞의 글에서 섹스관광을 위해 다른 나라로 여행가는 스웨덴 남자 의 수에는 주목할 만한 증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사들은 '성구매자처벌법'으로 인해 성구매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 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경찰은 포주와 인신매매 조직을 발 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성구매 행위가 범죄이기 때문에 성구매자들 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페트라 오스터그렌에 의하면 성매매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성구매남성들이 친절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들은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 또는 포주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을 목격했을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 한다. 그러나 '성구매자처벌법' 시행 이후 성구매가 불법화됨으로써 남성들은 자신을 신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신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사회적 규범화의 효과

스웨덴의 '성구매자처벌법'은 규범을 만들고, 성을 구매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규범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성구매자처벌법'제정에 깊이 관여한 산업국 성평등국의 구닐라 에크버그 (Gunilla Ekberg)는 법제정의 목적을 '사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하 였다. 스웨덴 국민의 81%가 성구매자 만을 처벌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결과는 사회적 규범화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화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입장도 있다. 돈 큐릭은 앞의 조사는 신문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결과로서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성구매처벌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No'라는 입 장을 분명히 했다. 그가 주장하는 법의 부정적인 측면은 성매매가 범죄화 될 때 성판매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충 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한다. 문제는 '성구매처벌법'이 거리 성매매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무시하면서 스웨덴 모델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것에 있다고 한다.

페트라 오스트그렌은 돈 큐릭과는 다른 의미에서 규범을 만드는 작업에 비판적이다. 그녀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규범 만들기는 위험하다고 했다. 특권이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으면서 성매매 근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야말로 규범 만들기에 올바른 방법이라고 했다.

3. 스웨덴 모델이 한국에 주는 함의

이상을 통해 스웨덴의 성매매 실태와 '성구매자처벌법'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웨덴의 '성구매자처벌법'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로서 주목받았다. 이런 성매매 방지정책은 성매매 정책의 '제3의 길'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경우에도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성매매방지법상의 피해자 개념이 도입되었다. 또한 성판매자에 대한 비범죄화 주장은 스웨덴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성매매가 존재하는 한 양성평 등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이념적 배경으로 하는 스웨덴 모델은 매력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스웨덴과 우리는 성매매를 둘러싼 지형뿐만 아니라 젠더와 섹슈얼 리티의 구조에도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스웨덴의 성매매 규모와 유형은 우리와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스웨덴의 성매매 규모는 2,000~2,500명 정도로 매우 적을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달리 성산업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성판매자에 대한 착취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발전된 사회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는 앞서의 아그네타 보그의 견해처럼 빈곤 때문에 생계를 위해 성판매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성판매 이외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정부가 기본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성매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다음으로는 스웨덴 사회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구조로부터 기인하는 성매 매의 성격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 할 수있다. 스웨덴은 여성정책 (gender policy)이 발전된 나라로 노동시장의 구조, 정치적 대표성 등에서 양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고용상의 차별 해소 정책이 양성평등채 용목표제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의 45%가 여성이다.

이와 같은 스웨덴 사회의 젠더 구조는 성이 거래되는 행위 그 자체는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후의 영역'이 된다.

또한,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구조 역시,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스웨덴은 동 성결혼이 합법화 되어있는 나라로 친밀성 형성과 이에 대한 법적 지원 등에 있어서 진보적인 국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식 자유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 미국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장을 중시한다면 스웨덴은 '가치'와 '공공의 선'을 중 시한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회민주주의 전통으로부터 기인한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친밀성을 이성 혹은 동성과 형성하는 것 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시적 인 관계인 경우에는 배타적인 사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족에 대한 지 워이 강화되어 있고. 성구매를 일탈적인 행위로 여기는 사회의식은 이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스웨덴 사회의 특징은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것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책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 정책 의 '제3의 길'이었던 스웨덴 모델로 역시, 성공적이라고 장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성매매 정책이 성판매자인 여성에 대한 통제정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웨덴 모델은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남성성구매자에 대한 규 제와 처벌, 상담과 교육으로 정책의 초점이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크다.

법이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함의수준을 반영하

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시행 의지와 시행 방법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스웨덴 모델은 낙관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스웨덴만의 문제는 아니다. 합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의 경우 역시, 불법 성매매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매매 정책의 모범답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져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근절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기 간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스웨덴 정부관계자의 발언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리고 이것이 '스웨덴 사회에서 성매매 문제는 더 이상 관심 대상이 아니고, 성매매 정책에는 일관성이 없다'는 어느 사회복지사의 고뇌어린 발언에 대한 대답으로, 현실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동되길 바란다.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제고방안

1.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의 추정규정' 도입	145
2.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46
3.	성매매피해자 판단을 위한 지침 마련	150
4.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라는 성매매방지법	
	제저무저에 <u>과하 사항이바이</u> 고가데 청서	154

1. 성매매처벌법상'성매매피해자의 추정규정'도입

성매매피해자 입증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성매매피해자의 추정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피해사실을 주장하면 되고, 수사기관 은 그 사람이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실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신고, 고소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이며, 단 속된 성매매여성 중 성매매피해여성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 이다.

당초 성매매처벌법 초안에서 '성매매된 자의 추정'이라는 규정을 도입하였 으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다.

이 규정이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입증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이 유는 성매매피해여성의 상황이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취약할 뿐 아니라 단속된 성매매여성 중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 것이 성매매피 해여성 자신들의 입증의 어려움도 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성매매피해자 입증을 위해 업주의 성매매강요행위에 대한 고소를 유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이 업주의 강요행위를 진술하지 않아 피해 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성매매피해여성 자신은 업주 의 강요행위를 진술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입증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 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규정의 도입을 통해 수사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추정하는 경우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 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해서 성매매피해자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 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가. 성매매피해자 신고관련 개선방안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117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가 성매매피해자들의 신고를 위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다더 많은 성매매여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고를 했을 경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고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성매매단속관련 개선방안

첫째, 성매매단속은 성판매자, 성구매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성매매여성을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시행되던 때 윤락이라고 하여 성을 파는 사람에게 낙인을 찍고 책임을 전가하며 처벌의 대상으로 하려 했던 관행이 있었던 바, 이제 새로운 법에서 성매매라는 용어를 쓰면서 성을 파는 행위, 사는 행위를 동질적인불법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인식이나 관행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때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구매자에 대해서 허용적인 사회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고, 수사기관의 단속도 성판매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부여와 일반인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성매매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기법의 개발과 성매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수사기관과 업주와의 유착관계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기관과 업주의 유착관계는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나 지역으로 갈수록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느낌이다. 유착관계로 인한불공정한 사건처리가 있다면, 적극적인 사법처리와 함께 인사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도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성매매피해자 조사관련 개선방안

첫째, 성매매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조항이 모든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동조항의 실시현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개발한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잘 실시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포상 등을 통하여 동조항 활용의 분위기를 조성할필요가 있다.

둘째, 수사기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상황을 경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매매피해자의 상황은 성매매업소의 유입에서 계속되는 업소이전의 과정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성매매피해자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매매피해자의 말을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매매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조사실의 설치와 함께 수사담당자와 피조사자 상호간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성매매피해자 판단관련 개선방안

성매매피해자 판단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한번 성매매피해자로 인정 되었던 사람이 또 다시 단속이나 검거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성매매피해자로 계속 인정한다면 계속 단속되어 올 경우 계속 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여기서 다음에서 제시하게 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자활서비스로의 연계방 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성매매피해자로 인 정하기만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복지서비스로의 연계가 없을 경우 성매매피 해여성이 업소로 다시 돌아가고 결국 성매매전과자를 양산함으로써 성매매피 해자 개념을 도입한 성매매방지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 성매매피해자 처리관련 개선방안

첫째,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자활서비스로의 연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에서 성매매피해자지원상담소나 지원시설에 대한정보제공이 전부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매매피해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위 실무자들과의 면담에서 보듯이, 성매매피해자들이시설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는 2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통계로 나온 것은 없지만 업소로 가는 경우도 상당수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에 관한 주무부서로서의 기

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특별히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한 만큼 성매매피해자의 진정한 탈성매매를 통해 재차 성산업에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여성가족부가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과 연계해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서비스 유도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연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의자로서의 성매매여성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처리는 불구속입건에 기소유예처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 사법실무관계자 면접조사에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선처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실제 벌금마련을 위한 성매매조장의 위험성 때문에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도 벌금이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는 통계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성매매여성의 유입동기,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한 보호처분을 통해 상담이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소유예의 경우도성구매남성의 교육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것처럼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의 선처만이 능사가 아니며, 법에 따른 처분과 이를 통한 탈성매매로 이어질 때만이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피조사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앞의 사법실무자 면접조사에서 성매매여성들은 피해자로 인정될거라는 수 사담당자의 말을 믿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의자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성매매여성을 속였다기 보다는 피조 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 생각된다.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이나 전문용어 등에 대해서는 피조사자들에게 성실하 게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성매매피해자 판단을 위한 지침 마련

성매매피해자 판단과 관련하여 특히 애매하다고 지적되는 경우는 한 개인에게 성매매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 성매매피해자가업주의 성매매강요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선불금 무효 등 자신의 채무에 대한 민사적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경우, 성매매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업주와합의한 경우로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이 어려운 사례들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개별적,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통일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방지법이 정한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판단함에 있어 법에 포섭될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된 성매매피해자 유형을 수사지침 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자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여기서는 폭행, 협박 등 성매매강요행위의 유형들을 제 시하고 있는 바, 성매매피해자 판단을 위한 수사지침 작성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Ⅵ-1> 수사지침 작성을 위한 성매매피해자 인식항목

중분류	소분류	강제적 요소의 특성
	유입당시 이후 하게 될 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들었는 가? 성판매/단순 접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가?	허위의 노동조 건 제공
유입과정	유입당시 앞으로 하게 될 일의 조건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들었는가?	허위의 노동조 건 제공
	유입당시 이탈이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는가?	허위의 노동조 건 제공

중분류	소분류	강제적 요소의 특성
성매매시	업소 이동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된 경험이 있는가?	빚의굴레
업소 내 이동	자유의사에 반한 업소 이동 과정에서 소개비가 본인에게 부담된 적이 있는가?	허위의 노동조 건 제공
	월급/수입은? 업주와 수입의 분배가 합리적인가?	허위의 노동조 건 제공
	휴가, 병가, 근무 중 휴식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이용가 능한가?	허위의 노동조 건 제공
	본인의 이익을 가로채는 중간인이 있는가?	허위의 노동조 건 제공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 하는 계약 ³⁶⁾ 을 체결하였는가?	허위의 노동조 건 제공
	선불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가?	빚의굴레
	성매매와 관련없는 다른 채권과 임금을 상쇄하고 있지는 않은가?	허위의 노동조 건 제공
	업주와 강제저축이나 저축금관리 관련 계약을 하였는가?	빚의굴레
l 성매매시	생리 중이나 임신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가?	신체적 폭력
근무 환경	낙태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가?	심리적 폭력
	근무 관련 벌칙이나 벌금규정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 인가?	허위의 노동조 건 제공
	성매매 중 발생한 질병 내지 부상에 대해 요양에 관련된 여타의 조치를 업주가 거부한 적이 있는가?	심리적 폭력
	유입당시 들었던 일의 성격과 수입이 근무환경과 일치했는가? 달랐다면 어떻게 달랐는가?	허위의 노동조 건 제공
	유입 이후 업주 등의 폭언, 폭행 내지 업주에 의한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신체적.심리적 폭력
	월급이 체불된 적 있는가?	허위의 노동조 건 제공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자유의사에 반하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적 있는가?	신체적폭력

(계속)

³⁶⁾ 이 때의 계약은 채용당시 이루어졌던 구두 계약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중분류	소분류	강제적 요소의 특성
	같은 업소 내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동료들 사이에 맞보증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자발적인가?	빚의굴레
	업소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요구하는 등 신체적인 제한을 한 적이 있는가?	심리적폭력
성매매시 근무 환경	성매매로 인해 건강이 상한 적이 있는가? (성병 감염 내지 과로)	직무상폭력
	손님에 의해 폭언, 폭행 내지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가? 그럴 경우 업소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가?	신체적폭력
	손님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럴 경우 업 소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가?	심리적폭력
	일상적인 지출의 항목이나 내용 등을 본인이 자유롭게 결 정할 수 있는가? 업주가 소개시켜주는 가게로 한정되는 등 업주의 개입이 있지 않은가?	허위의 노동조 건 제공
	업소 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유롭게 허용되었는가?	심리적폭력
성매매시 생활 환경	외견상으로 업소 외 사람과의 만남이 가능했다하더라도 본인이 업소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가? 있다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없었다면 왜 그러한가?	심리적 폭력
	자유로운 외출 혹은 외박이 가능했는가?	심리적 폭력
	자유로운 외출 혹은 외박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었는가? 있다면 주로 어떻게 보내 는가? 없었다면 왜 그러한가?	심리적 폭력
	일상적인 지출의 항목이나 내용 등을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가? 업주가 소개시켜주는 가게로 한정되는 등 업주의 개입이 있지 않은가?	허위의 노동 조건 제공
	업소 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유롭게 허용되었는가?	심리적폭력
성매매시 생활 환경	외견상으로 업소 외 사람과의 만남이 가능했다하더라도 본인이 업소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가? 있다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없었다면 왜 그러한가?	심리적 폭력
	자유로운 외출 혹은 외박이 가능했는가?	심리적 폭력
	자유로운 외출 혹은 외박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었는가? 있다면 주로 어떻게 보내 는가? 없었다면 왜 그러한가?	심리적 폭력

중분류	소분류	강제적 요소의 특성
	탈성매매를 시도하려고 결심했거나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탈성매매 의지
	탈성매매를 시도하게 된 이유 내지 계기는 무엇인가?	탈성매매 의지
탈성매매 시도	탈성매매 시도시 어떤 방법으로? 시도했던 방법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	탈성매매 의지
	탈성매매하기 위해 경찰 등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려고 시 도한 적이 있었나? 시도했다면 그 결과는? 시도하지 않았 다면 그 이유는?	탈성매매 의지
타서메메이	탈성매매 시도가 실패한 적이 있었나?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가?	탈성매매 의지
탈성매매의 좌절	탈성매매에 실패한 이유는 빚이나 생계 문제 등의 경제적 이유때문인가? 물리적 강제 때문인가? 다른 이유가 있다 면 무엇인가?	탈성매매 의지
탈성매매의	탈성매매 시도가 좌절된 이후 또 다른 시도를 하려 결심하 거나 실행에 옮긴 적이 있는가? 있다면 몇 번?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탈성매매 의지
반복 	탈성매매 재시도가 성공적이었는가? 성공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탈성매매 의지
탈성매매의 체념	탈성매매를 체념하였는가? 시도를 해보고 체념하였는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체념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탈성매매 의지
신분증 압류	업주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맡기도록 강요하는가?	신분증 압류

4.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라는 성매매방지법 제정목적에 관한 사회일반의 공감대 형성

형사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 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갖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목 적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성매매방지법의 목적은,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를 성풍속과 성도 덕의 문제가 아니라 성이라는 인격을 매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과 착취 의 문제인 동시에 성매매여성의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법의 보호법익은 일차적으로 성매매여성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존엄성이자 인권이다.

이러한 성매매여성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존엄성, 인권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방지법의 입법의도를 사회일반인들이 인식한다면, 성매매피해자를 포함한 성매매여성은 더 이상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선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격과 신체에 대한 존엄성 및 인권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확연히 구분되는 입법의도를 성매매여성, 성 구매자, 성매매알선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인식함으로써 성매매여성의 권리찾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성매매여성들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또는 자활지원과정에서도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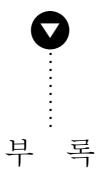
이러한 사회일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라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목적을 널리 교육시키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2004), 「성매매피해여성구조 및 업주검거 사례집」.
- 고정갑희(2005),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 「여/성이론」통권12호 (2005년 여름).
- 국가인권위원회(2003),「사법제도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토론회 자료, 2003년 12월 17일.
- 김은경(2002),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한국형사정책 학회, 「형사정책연구」제14권 제2호.
- 김은경 외(2002),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여성부.
- 다시함께센터(2005), 「다시함께센터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본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의 성과와 과제」, 다시함께센터 개소 2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2005년 9월 14일.
- 다시함께센터(2005), 「"다시함께"와 함께걷기2 "다시함께센터"가 이루어낸 판결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막달레나의 집(2004), 「성매매 관련 법률안내서」.
- 변화순 · 윤덕경 · 박현미 · 황정임(2001),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여성부.
- 변화순(2004), "여성주의 시각으로 읽는 성매매", 「2004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 배금자(2002), "대명동 손해배상 판결로 본 성매매에 대한 국가책임 및 과제", 「한국 정부의 성매매방지대책 어디까지 왔나」토론회 자료, 2002년 7월 15일, pp.9-45.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2003), 「성매매방지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성매매 방지대 책 심포지움, 2003년 6월 3일.
- 성매매근절을 위한 소리회·한국여성의 전화연합(2005),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그 성과와 과제」,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공동포럼, 2005년 9월 22일.
- 손승영·김현미·김영옥(2004),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 방안 연구」, 국회여성위 원회.
- 양현아(2004), "성매매방지법의 의의와 과제", 한국여성학회, 특별 심포지움 「성매매 방지법과 성담론」, 미간행.
- 여성부 (2001),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연구」.
- (200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관련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____ (2004), 「2004 국제 인신매매방지 전문가 회의」.
- 여성부(200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체계 국외사례 연구 미국·캐나다-,

- 오영근(2001), "성매매방지법률안 토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01년 10월), 미간행.
- 원미혜(1997),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미간행.
- 원미혜 (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외국의 전략들",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제17집.
- 이경재(1999), "매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그에 대한 형사정책적 입장", 한국형사정 책학회, 「형사정책연구」제10권 제4호(통권 제40호, 1999·겨울호).
- 이용식(2001), "형법의 임무: 법익보호인가, 사회윤리보호인가?", 한국피해자학회, 「 피해자학연구」제9권 제2호.
- 이호중(2004),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국 편,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사람생각.
- 임웅(1999),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 장필화·정현미·원미혜·백재희·이효희(2001),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대안사 례 연구』, 여성부.
- 조국(2004),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조국 편,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 의 모색」, 사람생각.
- 진수희(2004),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국회여성정책포럼 정책토론회, 2004년 11월 15일.
- 천진호(2002), "여성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성적 착취행위와 성적 착취형 인신매매를 중심으로-",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자료, 2002년 11월 21일, pp.101-174.
- 최병각(2004), "성매매 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조국 편,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사람생각.
- 캐슬린 배리(2004),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정금나·김은경 역, 삼인.
- 하주영(2002), "성매매는 범죄인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제13권 제 2호.
- 하태영(2002),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매춘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제4권 2호.
- 허경미(2003), "성매매규제 관련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5권.
- 한국여성개발원(2005), 「성매매처벌법 시행 6개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제25 차 여성정책포럼, 2005년 3월 22일.
- 한국여성단체연합(2004), 「성매매 수사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 2004 년 5월 27일.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 근절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유럽의 경험과 교훈」,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05년 9월 21.
- 한국여성학회(2004),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 특별심포지움자료, 2004년 11월 17일.
- 若尾典子(2003), "買賣春と 自己決定 ジェンダに 敏感な 視點から", ジュリスト, No.1237, 2003.1.1-15, pp.184-193.
- Barry, Kathleen(1995),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University Press; 정금.
- 김은정 역(2002),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 Don Kulick (2004), "Four Hundred Thousand Swedish Perverts"
- _____ (2004), "Talk delivered at Beijing Plus Ten meetings on the "Swedish model"
- Overall, Christine(1992), "What's wrong with prostitution?", in SIGN(1992, Summer).
- Karin Grundberg, "Sweden's prostitutes ply their trade on the Internet" at http://www.bayswan.org/swed/swed_index.html
- Liv Jessen, "Prostitution seen as Violence Against Women a supportive or oppressive view?", at http://www.bayswan.org/swed/swed_index.html
- Ministry of Industry, Employment and Communication (2004)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women"
- Ministry of Justice(2005), "New legislation on sexual crimes"
- Maria-Pia Boëthius,"The end of prostitution in Sweden?", at
- http://www.sweden.se/templates/cs/Article____2295.aspx
- Norwegian Minister of Justice and Police Affairs (2004), "Purchasing Sexual Services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at
- http://odin.dep.no/jd/engelsk/012101-990578/dok-bn.html
- Petra Ostergren, "Sexworkers Critique of Swedish Prostitution Policy", at http://www.bayswan.org/swed/swed_index.html



1. 성매매여성 조사 및 인권보호지침(경찰청) 161

2. 성폭력·성매매피해자 설문조사

166

〈부록 1〉

성매매여성 조사 및 인권보호지침(경찰청)

여성 청소년과-3072(2004.9.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 피해자 보호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성매매 관련 범죄의 체계적인 수사와 수사과 정에서의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피해자의 개념)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성매매피해자는 형사처벌 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위계·위력 또는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2.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3. 청소년보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중 알선ㆍ유인된 자
- 4.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 된 자
- 제3조(인권보호의 기본원칙) 경찰관은 단속현장이나 조사과정에서 성매매여성 발견시 성매매피해자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사기관의 동행·협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경찰관동행을 요청할 경우 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담당경찰관의 지정) 조사 및 참여경찰관중 1인 이상을 여자경찰관으로 지정하여 수치심 유발방지 등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다만 여 자경찰관의 교육, 휴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참여경 찰관을 모두 남자경찰관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인권보호 환경조성) ① 성매매여성 소환 또는 조사 전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소환방지 등 성매매여성의 인권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 ② 조사장소가 경찰관서인 경우 진술녹화실 등 경찰관서내 평온하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조사실로 하여야 한다.
- 제7조(소환절차상 인권보호) ① 성매매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화 등으로 성매매여성에게 직접 연락하고, 부득이하게 우편으로 소환할 경우 봉합편지를 이용하는 등 성매매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② 성매매 신고자(고소·고발자 포함) 또는 피해여성을 소환할 경우 성매매 신고자 또는 피해여성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조사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 출장조사의 경우에도 제5조(담당경찰관의 지정), 제10조(신뢰관계자 동석)규정을 적용한다.
- 제8조(선불금무효 등 고지) ① 담당경찰관은 성매매여성 조사시 성매매관련 채 권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불법원인으로 의한 계약으 로 무효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성매매여성 조사시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가 규정한 지원시설)을 이용(동행, 상담, 치료, 숙 식 등)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고지사실을 조서에 기재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제9조(법정대리인 등 통지) ① 담당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친족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수 있다.
 - ② 전항의 통지사실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제10조(신뢰관계자 동석) ① 담당경찰관은 성매매범죄의 신고자(고소·고발자 포함) 또는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 청에 의하여 보호자 또는 관련여성상담소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다.
 - ②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담당경찰관은 동석자에게 신고자(고소·고발자 포함) 또는 성매매피해 자와의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장소와 시간제공 등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담당경찰관은 동석자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한 후 퇴석조치를 하고 이유와 사실을 조서에 기록 또는 서면으로 작 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⑤ 동석자가 참여하였을 때는 조서에 동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 제11조(질문과 진술청취) ① 담당경찰관이 성매매여성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성매매여성이 불안, 흥분 또는 경미한 언어장애 등으로 진술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라도 조사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진술을 기다리는 등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담당경찰관이 성매매여성에게 질문하는 경우 가출의 동기, 가정형편 등

사생활에 관한 사항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은 사건수사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제12조(대질신문) 성매매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성매매업소주인 등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정신적 압박감을 고려, 시간 또는 장소를 달리하여 조사하는 등 성매매업주 등과 대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대질신문은 수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성매매여성의 의사를 물어 실시한다.
- 제13조(성매매강요 및 이탈방지여부 조사) ① 담당경찰관은 성매매여성 조사시 선불금 등 성매매관련 채무 또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각종 계약서, 여권 또 는 이에 갈음하는 각종 증명서가 성매매의 유인·강요수단 또는 성매매업 소로부터의 이탈방지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이 제기하는 범죄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담당경찰관은 이를 관련사건으로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친족·지원시설·상담소 등 인계) 담당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에는 성매매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에의 인계(관련시설 등의 소개, 연락, 통지 포함) 등 성매매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증인보호법상 신변보호) 담당경찰관은 성매매관련 범죄를 신고(고소·고발 포함)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 법제8조(인적사항의 공개금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범죄신고자 등 (동법 제2조3호)이나 친족등(동법 제2조4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동법 제2조5호)에는 인적사항의 기재생략(동법 제7조)과 신변안전조치(동법 제13조)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여성의 출입국 관리상 특례) 담당경찰관은 외국인여성이 성매매

관련범죄를 신고(고소·고발 포함)한 경우 또는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 자로 수사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에 의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명령), 제51조(보호의 집행)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인계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여성에 대한 배상신청의 고지) 담당경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 매피해자로 조사할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에 따른 배상신청 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수사기밀의 공개금지)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 도록 한다.

* 출처 : 경찰청(2004), 「성매매피해여성 구조 및 업주검거 사례집」.

〈부록 2〉

성폭력·성매매피해자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는 법무부에서 성폭력·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검찰의 수사 실 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래 설문에 대하여 □안에 ∨표시를 하거나 () 안에 기재한 후 반송용 봉투에 넣고 봉하여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은 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피해자 연령 : 만 ()세 또는 출생년월 : ()년 ()월 피해자의 장애여부 □ 등록장애인 □ 비등록장애인 □ 비장애인 설문작성자 □ 피해자 본인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상담원 □ 기타 피해자의 ()
2. 조사장소는 편안하였나요?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3. 조사 장소는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된 공간이었나요? □ 그렇다 □ 아니다 < 조사방법 >
4. 조사를 시작하면서 조사자가 자신을 소개하였나요? □ 그렇다 □ 아니다 5. 조사자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는지 물었나요? □ 그렇다 □ 아니다 6. 조사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였나요? □ 동석했다 □ 동석하지 않았다 6-1. 동석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피해자가 동석을 원치 않아서 □ 조사자가 동석을 허락하지 않아서 □ 기타 ()
7. 검찰에서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았나요? □ 그렇다 □ 아니다 7-1. <u>대질조사를 받았다면</u> 사전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나요? □ 그렇다 □ 아니다 7-2. <u>대질조사를 받았다면</u> 귀가시 가해자 측으로부터 위협받은 사실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8.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하였나요? □ 그렇다 □ 아니다 □ 모른다 9. 조사자로부터 불필요하게 같은 질문을 여러번 받은 사실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10. 조사자로부터 사건과 상관없는 불쾌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10-1. <u>사건과 상관없는 질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u> 그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 있다 □ 없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없다 □ 없다 □ 없다
13. 조사자가 반말, 비속어(막말)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나요? □있다 □ 없다 14. 일부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피
해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검찰에서 확인을 넘어서, 부당하게 고소취소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15. 전체적인 조사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적절 □보통 □ 부적절 15-1. <u>조사방법이 부적절했다면</u> 어떤 점에서 부적절했나요?
(
< 조사 회수 및 시간>
16. 이번 사건으로 검찰청(*경찰은 제외)에 출석한 것은 몇 번째 인가요? ()번째 17.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한 시간, 실제로 조사가 시작된 시간, 조사를 마친 시간은 언제인가요?
출석하기로 한 시간 : (시 분) / 실제 조사 시작 시간 : (시 분) 18. 조사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약 ()시간 ()분
19. 조사 회수나 조사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적절 □ 보통 □ 부적절 19-1. 조사 회수나 시간이 부적절했다면 어떤 점에서 부적절했나요?
()
` < 조사종료 >
20.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나요? □ 그렇다 □ 아니다
21. 조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앞으로의 사건 처리 절차나 계획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나요? □ 들었다 □ 듣지 못했다
22. 그 외 조사과정에서 불편했던 일, 도움을 받은 일 등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결과에 따라 미진한 부분은 고치고, 잘한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 연구보고서-14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2005년 12월 29 일 인쇄 2005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서 명 선

발행처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89-8491-140-2 93330

<정가 6,000원>